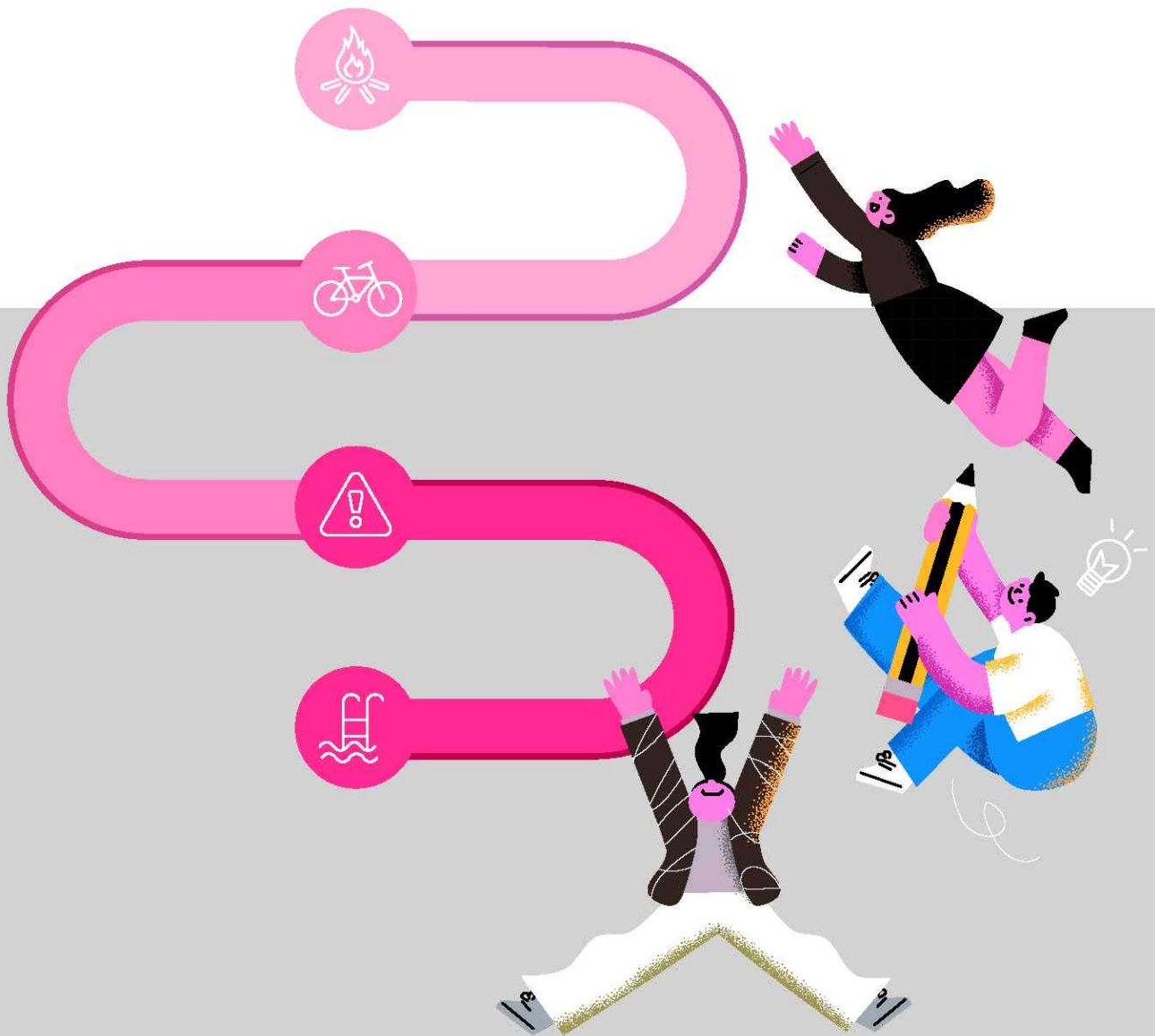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KYWA-2023-125-11

청소년활동 종합 안전 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여성가족부

KYWA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의 권리

1. 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의 책임

1. 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1. 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1. 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1. 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 청소년은 통일 시대의 주역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
1. 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1. 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1. 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1. 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1998년 10월 25일

안전관리현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1.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1.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1.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1.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활동안전관리편

개요

- 01. 청소년활동과 안전 2
- 02. 매뉴얼의 활용 4



I. 활동 안전 매뉴얼의 개요

- 01. 매뉴얼의 목적 8
- 02. 매뉴얼의 적용범위 8
- 03. 매뉴얼의 구성 8
- 04. 매뉴얼 활용 9



II.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및 안전 목표

- 01.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12
- 02. 청소년활동 안전의 목표 13
- 03. 청소년안전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 14

III

상시적 안전관리

01. 종사자 관리	19
0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22
03. 신고제도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	32
04. 그 밖의 청소년활동 안전관련 법령 이해	36

IV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안전관리

01 활동 계획 시 안전관리	42
02 활동 준비 시 안전관리	44
03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47
04 활동 종료 시 안전관리	48

V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01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53
02 사고발생 시 단계별 조치내용	54

활동안전관리편

VI

청소년활동 장소 및 유형별 안전관리

01실내활동	58
02실외활동	72
03위험도가 높은 활동	95

VII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등 활동 시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의 안전관리

01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지진 발생 시 조치 사항	160
02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낙뢰 발생 시 조치 사항	162
참고문헌	164
부록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166
부록 2.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167

표목차

표 3-1 수련시설 유형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17
표 3-2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점검	20
표 3-3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기록사항	25
표 3-4 종사자 안전교육의 주요내용	25
표 3-5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26
표 4-1 계획단계의 체크리스트	35
표 4-2 준비단계의 체크리스트	37
표 4-3 운영단계의 체크리스트	40
표 4-4 종료단계의 체크리스트	41
표 6-1 실내활동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45
표 6-2 강당(공연장) 안전 확인 사항	47
표 6-3 체육관 안전 확인 사항	49
표 6-4 강의실 안전 확인 사항	50
표 6-5 댄스연습실 안전 확인 사항	51
표 6-6 음악(보컬밴드)연습실 안전 확인 사항	52
표 6-7 요리연습실/제과제빵실 안전 확인 사항	54
표 6-8 자율적 문화공간에서의 안전관리	55
표 6-9 자율적 문화공간 안전 확인 사항	57
표 6-10 자전거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59
표 6-11 모의올림픽 운영 시 안전관리	66
표 6-12 청소년참여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67
표 6-13 오리엔티어링 운영 시 안전관리	69
표 6-14 야영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71
표 6-15 박람회/축제 운영 시 안전관리	73
표 6-16 박람회/축제 운영 시 안전 확인 사항	74
표 6-17 모닥불 놀이(캠프파이어) 운영 시 안전관리	75
표 6-18 공동체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77
표 6-19 진로체험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78
표 6-20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법	79
표 6-21 진로체험활동 운영 시 안전 확인 사항	81
표 6-22 ATV 탑승 활동의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141
표 7-1 지진의 개념, 특징, 행동 요령	145
표 7-2 지진 발생시 활동유형별 조치사항	146

활동안전관리편

표 7-3 낙뢰의 개념, 특징, 행동 요령	147
표 7-4 낙뢰 발생 시 활동 유형별 조치 사항	148

그림목차

그림 2-1 래프팅 활동의 보고 및 이송체계	89
그림 2-2 고무보트 활동의 보고 및 이송체계	97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개요

01. 청소년활동과 안전

02. 매뉴얼의 활용



개요

01

청소년활동과 안전

1) 청소년활동의 정의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청소년과 안전의 정의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안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인체에 유해한 조건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려는 여러 가지 활동’ 또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이 편안하고 온전한 상태’이다.

3) 청소년 안전의 필요성

청소년의 안전은 청소년이 정서적·신체적 상해없이 건강하게 보호되는 수준을 의미한다(한혜경, 1997).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성장·발달과정에 있기 때문에 안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안전사고는 아동(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영한, 최은실, 김윤정, 2009). 병원에 오는 15세 이하 환자 5명 중 1명은 사고로 인한 것이며, 교통사고, 추락사고, 익사 등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김신정, 2001).

청소년이 안전하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청소년에게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에게도 심리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교육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시설 등 활동시설에서는 청소년

안전에 관한 지식과 상황별 대처 방법 등을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에게 교육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청소년 안전의 목적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 시에 스스로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지도자가 청소년이 안전하게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현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지대 확보 및 보장이 청소년 안전의 목적이며, 청소년 안전에 관한 지식과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5) 청소년 안전의 기본방향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사고는 사전의 예방교육과 사고발생 시, 초기 응급조치가 중요하므로 평소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청소년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준하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활동 전체에 대한 보험의 내용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별 시설 및 활동의 특성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자동차종합보험 등 각 안전관리 법률에 보험 가입을 준비하며,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도 관리자의 책임에 따라 보험보장 등으로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청소년활동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여부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건축·토목, 기계, 소방, 전기, 가스, 위생 등 개별법령) 결과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체 안전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월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별법령에 따라 시설관리자 및 활동 지도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근거하여 직원의 성범죄경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안전시설(장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시설 내 위험성이 있는 실내·외 장소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점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사전에 제거하고 지도자 및 시설 이용자 등에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예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수련시설의 개별 특성·상황별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안전매뉴얼 마련 및 전체 직원의 사전 숙지, 정기적인 반복연습을 통해 안전사고의 최소화 및 적절한 대응으로 안전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02 매뉴얼의 활용

1) 매뉴얼의 목적

청소년수련시설 등 활동시설에 청소년활동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매뉴얼을 보급하여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안전사항을 확인·적용하고 안전한 청소년활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2) 매뉴얼의 적용범위

- 다양한 청소년활동 운영 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사전에 교육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 청소년활동 및 시설물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본 매뉴얼을 적용한다.
- 본 매뉴얼은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본 매뉴얼에 준하여 각 수련시설별로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매뉴얼의 구성

구분	세부내용
활동 안전	I. 활동 안전 매뉴얼의 개요 - 매뉴얼의 목적, 매뉴얼의 적용범위,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의 활용 II.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및 안전목표 -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청소년활동 안전의 목표, 청소년 안전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 III. 상시적 안전관리 - 종사자 관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신고제도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청소년 활동 안전관련 법령 이해 IV.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안전관리 - 활동 계획 시 안전관리, 활동 준비 시 안전관리,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활동 종료 시 안전관리 V.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사고발생 시 단계별 조치 내용 VI. 청소년활동 장소 및 유형별 안전관리 - 실내활동, 실외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 VII.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등 활동 시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의 안전관리 -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지진 발생 시 조치 사항,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낙뢰 발생 시 조치 사항 [부록]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운영기준

구분	세부내용
<p>시설 안전</p>	<p>I. 시설 안전 매뉴얼의 개요 - 매뉴얼의 목적, 매뉴얼의 적용범위, 매뉴얼의 구성, 기본 용어, 수련시설 안전관련 기준, 수련시설 안전관리 일반, 시설물 관리 일반, 관련도서의 관리</p> <p>II. 분야별 안전관리 매뉴얼 - 일반 공통사항, 건축시설, 토목시설, 기계설비,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승강기시설, 청소년 야영장, 급식시설, 모험시설</p> <p>III.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요령 - 점검표, 항목별 점검방법</p> <p>IV. 유지관리 방안 -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절차</p> <p>[부록]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건축법 시행령 관련 수련시설 안전점검 기준, 시설물안전법의 주요 내용</p>
<p>재난 안전</p>	<p>I. 재난관리 매뉴얼의 개요 - 매뉴얼의 목적, 재난의 정의, 매뉴얼의 적용범위,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 활용,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 및 관리</p> <p>II. 시설물 재난안전관리 - 시설물의 안전관리, 안전점검 시기, 재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주요내용</p> <p>III. 자연재난 - 태풍·강풍·호우, 낙뢰, 대설·한파, 황사, 폭염, 지진·지진해일, 산사태</p> <p>IV. 사회재난 - 화재, 화학물질 및 유독가스 누출, 건축물 붕괴, 감염병 예방, 미세먼지</p> <p>[부록] 태풍·호우·폭설 긴급점검 체크리스트</p>
<p>생활 안전</p>	<p><다중밀집 행사 안전></p> <p>I. 다중밀집 행사 안전 매뉴얼의 개요 - 매뉴얼의 목적, 매뉴얼의 적용범위, 매뉴얼의 구성, 매뉴얼의 활용</p> <p>II. 다중밀집 행사 진행 단계별 안전점검 - 다중밀집 행사 시작 계획 단계, 다중밀집행사 시작 전, 다중밀집행사 진행 중, 다중밀집행사 종료 단계, 다중밀집행사 중 사고발생시 대응</p> <p>III. 위험요소별 안전관리 - 시간적 위험요소, 장소적 위험요소, 재료적 위험요소</p> <p>IV. 다중밀집 행사 안전점검을 위한 확인 및 점검사항 - 계획(Plan), 인력(People), 장소(Place), 물자(Product)</p> <p>V. 다중밀집 행사 군중안전관리 - 군중심리와 군중관리의 이해, 단계별 군중관리, 군중 대피유도, 상황별 군중관리를 위한 대피방송</p> <p>[부록] 안전관리계획 표준안,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밀집 인파사고 예방 체크리스트</p> <p><응급처치></p> <p>I. 응급처치와 응급상황 - 응급처치의 개념 및 필요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행동</p> <p>II. 상황별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의 사용,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상처, 드레싱과 붕대, 근육 골격계와 골절처치, 중독, 고온과 저온에 의한 신체 손상, 이송 방법</p>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I

활동 안전 매뉴얼의 개요

01. 매뉴얼의 목적
02. 매뉴얼의 적용범위
03. 매뉴얼의 구성
04. 매뉴얼 활용

활동 안전 매뉴얼의 개요

01

매뉴얼의 목적

본 매뉴얼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운영자(청소년지도자) 및 참가자(청소년)들이 지켜야 할 임무 및 역할, 조치사항 등을 인지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02

매뉴얼의 적용범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이 외에 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신고 대상 수련활동, 제36조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등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본 매뉴얼을 적용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내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내활동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외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 등을 운영할 경우 본 매뉴얼을 준용한다.

03

매뉴얼의 구성

-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 청소년 관련법에서의 청소년활동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제시한다.
- 청소년활동의 안전 기본원칙에 따른 일반사항과 청소년활동의 운영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 장소별로 이루어지는 실내활동과 활동별로 이루어지는 실외활동을 구분하여 청소년활동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다양한 활동에 대한 안전수칙, 체크리스트 등을 제시한다.

04 매뉴얼 활용

- 청소년수련시설과 신고 대상 수련활동 및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계획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나 관리자, 신고 대상 수련활동 및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자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와 신고 대상 수련활동 및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자에게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를 위한 행동지침으로 활용한다.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II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및 안전 목표

01.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02. 청소년활동 안전의 목표
03. 청소년안전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및 안전 목표

01 청소년활동 안전사고의 원인

청소년활동 시의 안전사고는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소년활동 시 주위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은 청소년기의 신체·정서·인지발달 과정과 관련이 있어 발달 특성에 따른 주의가 필요하며, 청소년활동 시 주위 환경은 청소년활동 환경 및 시설 등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어 상시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지도사의 사전교육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구분	내용
신체적 변화	급속한 성장,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인지적 변화	즉각적인 결과 선호
심리적 변화	순종적인 아동기에서 반항 및 충동적인 청소년기로의 변화
독립성 선호	기본 규칙에의 저항, 영웅숭배성향, 의사결정 미흡
동료 중심의 사회성	친구관계 중요, 호기심 증가, 모험적 행위 증가
낮은 정체성	낮은 자아상, 또래동조 행동 및 무모한 행동 증가
위험적인 사고	오토바이 사고, 폭력사고, 익수사고, 무모한 경쟁적으로 인한 사고

〈청소년활동 시 주위 환경〉

구분	내용
활동 환경의 문제	환경이 활동에 부적합함에도 무리한 추진 시 발생 (위험요인 제거 또는 환경개선 등의 조치 필요)
활동 시설의 문제	예산 등의 문제로 위험발생 기능요인 방치 (시설 개보수 또는 위험표지 부착과 사용중지 등의 조치)
활동 자체의 문제	고위험 활동 또는 고난이도의 활동 (지도자의 충분한 단계별 시연 및 철저한 사전교육 실시)
활동 장비의 문제	낡은 장비, 고장난 장비 등의 보수 미비, 비용절감을 위한 부실한 장비사용 등
지도자의 문제	활동과 무관한 지도력, 활동 전·중·후 청소년에 대한 시선분산, 안전귀가교육 미실시, 과도한 실적 집착 등
활동 참가 청소년의 문제	들뜬 기분, 산만한 시선, 영웅심리, 무모한 도전 등

청소년수련활동 사고발생의 중대 요인은?

- 활동장의 지리적 조건 : 지형, 자연환경, 시설, 넓이 등
- 프로그램의 제조건 : 일정, 내용, 용구, 종류, 기술 등
- 참가자의 정신적, 신체적 조건 : 건강상태, 연령, 성별, 체질, 경험 등
- 기상조건 : 기상, 계절적 변동, 급변하는 기온차 등
- 지도력의 제조건 : 기능, 성격, 자질, 리더십 등

02 청소년활동 안전의 목표

첫째,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청소년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지대 확보 및 보장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법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보강하고, 이를 근거로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제도가 강화되도록 한다.

둘째,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책임자와 청소년지도자의 정기적인 안전교육으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에게도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하여 주지해야 할 점

- 안전은 주어진 여건에 대하여 단 한 번 밖에 기회가 없다는 점, 즉 일회성(一回性)이라는 사실이다.
- 안전은 모든 여건에 대처하는 태도가 자기통제의 능력을 갖추어야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
- 안전은 지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면서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다.
-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안전대책이 다를 수밖에 없다.

03 청소년안전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

청소년의 안전에 대해 지도자는 위험을 예견해야 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어야 하며, 참가자 과실을 방지해야 하고, 시설과 용구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청소년안전에 대한 지도자의 역할〉

구분	내용
위험 예견	그 당시 그 장소의 상황을 항상 냉정히 파악하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며 프로그램이 사고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지켜보아야 한다.
위험 회피	위험한 상황을 직감하였을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이 때에 올바른 상황판단과 정확한 지시가 중요하다.
참가자 과실 방지	참가자들이 자기 과실을 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참가자의 연령, 체력, 판단력의 정도를 잘 파악하고 지켜보며 대상 특성에 적합하도록 모든 활동을 지도하도록 한다.
시설과 용구의 안전 사용	시설 및 용구를 사용요령대로 이용하게 하고 위험하다고 직감되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도록 한다. 사용 후의 뒷정리도 잘해야 한다.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III

상시적 안전관리

01. 종사자 관리
0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03. 신고제도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
04. 그 밖의 청소년활동 안전관련 법령
이해

Ⅲ

상시적 안전관리

□ 안전관리 관련법률

시설관리	시설기준 준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7조
	안전기준 준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제18조의3, 특별안전점검 각 개별법상(전기안전관리법, 수도법, 소방법 등) 안전점검
	종합평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시설 환경관리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인사관리	운영대표자 자격 준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준수	「청소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취업제한 관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종사자 안전교육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
	시설담당자 등 전문안전교육	각 개별법에 의한 교육 이수
운영관리	운영기준 준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신고·인증프로그램 준비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35조
	사고 보장 등 관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01 종사자 관리

1) 운영대표자의 요건

- 관련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 운영대표자의 자격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포함)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 경우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

- ①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관련 참고사항

- 운영대표자는 상근이므로 동일인이 2개소 이상 수련시설에 선임 불가
- 지자체장 및 중앙부처장은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음(설치·운영자와 구분 필요)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에 운영대표자 등록 시 시설장이 아닌 시설종사자를 운영대표자로 등록할 수 없음(운영대표자 = 시설장)
- 운영대표자로 선임된 자가 해당 수련시설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권한 부여

2)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 관련 근거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별표 5]
- 법에서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최소 인력기준임

표 3-1 | 수련시설 유형 및 수용정원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표

시설종류	수용정원 500명 이하				수용정원 250명 당 배치기준(추가)			
	소계	1급	2급	3급	소계	1급	2급	3급
수련관	4명	1명	1명	2명	1명	1명		
	4명	1명	2명	1명				
	4명	1명	3명	-				
	4명	2명	2명	-				
	4명	3명	1명	-				
수련원	2명	-	1명	1명	1명	1명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배치*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유스호스텔	1명		1명		1명	1명*(1급 또는 2급)		
야영장	1명		1명		-	-		
문화의집	1명		1명		-	-		
특화시설	2명	-	1명	1명	-	-		
	2명	-	2명	-				
	2명	1명	1명	-				
	2명	1명	-	1명				
	2명	2명	-	-				

* 1. 청소년수련원 : 수용정원 최초 500명 초과시 1급 추가 배치 및 초과하는 250명마다 1~3급 중 1명 추가 배치
2. 유스호스텔 : 숙박정원 500명 초과시 1급 또는 2급 추가배치

참고사항

-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수 이상의 청소년지도사 확보
- 운영대표자(시설장)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경우 법적 배치기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
- 배치 청소년지도사, 방과후아카데미의 팀장과 담임은 법적 배치기준 미포함
- 상위 등급 인원 확보 시 하위 등급의 인원을 확보하지 않아도 됨

3) 성범죄자 취업제한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른 성범죄 경력 확인
- 관련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므로 취업자(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을 운영자가 확인
 - ※ 전체 직원 대상 성범죄 경력확인 공문 및 회신공문(확인가능한 공적 문서 모두 인정) 관리여부 필수

편리한 범죄경력 조회 방법

-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사용(사이트 주소: <http://crims.police.go.kr>)
 - ① 사이트에서 시설(기관) 정보 사전등록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등록 가능
 - ② 취업예정자 동의 및 본인 범죄경력 조회(기관정보 확인 및 동의서 작성)
 - ③ 기관(시설)장 신청, 발급(동의목록 확인 및 신청)

02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안전관리

1) 수련시설 운영 시 고려사항

여성가족부(2023)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통해 아래와 같이 수련시설 운영에 따른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 및 상근(필수)
- 법적 인력배치 기준 준수 및 수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활성화 추진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의 독립적인 운영체계 확립(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전용 금지)(권고)
- 독립적인 운영규정 및 회계 등 독립기관으로 운영(권고)
(단, 수련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단체의 운영규정 및 회계 적용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 직원의 수련시설 직원 겸직 금지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소속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 사용 금지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상에 등록된 명칭 사용)
- 홍보 및 공문서 등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명칭 사용금지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조직을 수탁단체의 xx팀 등으로 변경하고 시설장을 팀장 등으로 명칭 사용 불가
- 수련시설 종사자는 시설관리운영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수탁단체(대행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단체(대행기관)의 변경시 고용승계 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관련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권고)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 및 영리추구,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가능
- 수탁단체(대행기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관련 조례·규정·지침·약정서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단체(대행기관)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 불가(단, 시설 경영의 효율화를 위해 청소, 시설보수 관리 등 단순 용역이나 휴게실 등 편의시설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자체 규정에 따라 허용할 수 있음)

2) 수련시설 안전기준

- 근거법률 : 「청소년활동 진흥법」시행령 제10조 제12항 [별표 1]‘수련시설의 안전 기준’
 - 시설관리 : 안전점검실시, 위험장소·요인 제거 조치대응, 대피경로 등 시설안전물 게시, 건축 자재(유독가스 발생 유무 등)유의 등
 - 교 육 : 종사자 안전교육, 이용자 안전교육, 인솔자 안전교육
 - 안전체계 : 구호설비, 비상연락망, 후송대책마련, 비상시 대피

3) 수련시설 안전점검

- 관련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 및 제18조의3
- 안전점검의 개요
 - 자체점검 : 자체 안전점검 실시(월 1회) 및 지자체 제출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
 - 종합 안전·위생점검 : 여성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종합 안전·위생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함.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종합 안전·위생점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운영대표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스템(수련시설 안전·운영 종합시스템)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점검 주기 : 시설유형별 2년
 - 짝수년도: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법정점검 : 시설물 개별법에 따라 주기별 실시
 - 특별(수시)점검 : 필요시 시행

4) 주요개별법에 의한 법정안전점검

-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은 점검대상 및 주체에 따라 점검주기가 월 1회 이상 ~ 연 1회 이상으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아래에 제시된 세부사항을 꼼꼼히 인지하여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표 3-2 |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점검

구분	관계법령	점검대상	점검주체(기관)	점검주기																	
소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 소방대상물	자체점검 (소방대상시설물의 관계인, 소방안전 관리자 등) 특별점검 : 소방서	연 1회 이상																	
전기	전기사업법	전기설비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	시설 사용 전 점검 및 1년 1회 이상																	
가스	「액화석유 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 가스 설비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연 1회																	
	「도시가스 사업법」	도시가스 사용시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연 1회																	
수질	「수도법」	저수조	지방자치단체	반기별 1회 이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장 수질	수련시설	반기 1회																	
시설물 전반	「청소년 활동진흥법」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대표자	월 1회 이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연면적 1,000㎡이상 시설물 (2, 3종 시설물)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안전 등급</th> <th rowspan="2">정기 안전 점검</th> <th colspan="2">정밀안전점검</th> </tr> <tr> <th>건축물</th> <th>건축물 외 시설물</th> </tr> </thead> <tbody> <tr> <td>A 등급</td> <td>반기 1회 이상</td> <td>4년에 1회 이상</td> <td>3년에 1회 이상</td> </tr> <tr> <td>B,C 등급</td> <td>1년 3회 이상</td> <td>3년에 1회 이상</td> <td>2년에 1회 이상</td> </tr> <tr> <td>D,E 등급</td> <td>1년 3회 이상</td> <td>2년에 1회 이상</td> <td>1년에 1회 이상</td> </tr> </tbody> </table>	안전 등급	정기 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1년 3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안전 등급	정기 안전 점검	정밀안전점검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 등급	반기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1년 3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1년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특별 안전점검
 - 여성가족부
 - :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가스 분야 종합안전점검 실시 (시설 유형별 2년 주기)
 - : 하절기, 동절기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 실시(지자체협조)
 - 행정안전부 : 여름철 대비 등 특별안전점검(표본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름철 대비 식중독 등 위생분야 안전점검(매년)
 - 지역소방서 : 계기별 소방분야 안전점검(수시)

5) 활동장 안전관리 및 각 개별법에 의한 안전사항

- 수련시설의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 관련)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간을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전용시설로서 시설 공간뿐만 아니라 시설부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별도의 흡연구역 설치 가능)

- 위험요소(위험물질, 공사지역 등)에 대한 표지
 - 위험물질 보관 및 공사지역 등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방책·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등을 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안내판 설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 표시내용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

- 교보재(활동장비) 안전관리
 - 활동장비 안전관리
 - ① 활동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실시
 - ② 활동 전 활동장비에 대한 점검 실시
 - 활동장비의 보존 장소 관리
 - ① 활동장비 보존 장소(예: 교보재 창고)는 보관에 적합한 상태여야 함
 - ② 잠금장치, 장비목록 등 활동장비 보존 장소는 관리되어야 함

- 개별난방 숙박실(생활관)에 일산화탄소 경보 설치
 - 개별 숙박실마다 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숙박실 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함

-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 「도로교통법」 제52조 제1항
 - :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통학버스를 운영할 경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등 관련 요건을 갖추고 운행해야 함

-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함

6) 수련시설 운영기준

- 근거법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인증받은 수련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 생활지도: 숙박지도, 음주/흡연 금지, 청소년 탈선방지 및 위해 요소로의 예방 조치 등 관리 체계 구축
 -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록증 부착, 숙박정원 표시 등 등록·표시사항 준수, 위생관리 및 시설 기준 준수 등

<수련시설등록증, 정원, 안전사항 등 관련 정보의 표지>

- 표지대상 : 수련시설등록증, 숙박정원, 안전사항*
- * 안전사항 :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 대피경로 등

- 종사자 교육: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사항 실시(연 1회 이상)
- 기록의 유지관리
 - ① 일일 청소년수련활동 실시 현황부
: 프로그램명, 인원(남·여, 청소년 구분 포함), 결재 포함. 예) 업무일지
 - ②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 포함)
: 프로그램명, 참여자 명단. 예) 활동 참여 명단
 - ③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 명부. 예) 인사기록부
 - ④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
 - ⑤ 현금출납부 및 그 밖에 경리관계 장부·서류
 - ⑥ 등록관계 서류
: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집단급식소신고증, 보험가입증명 서류 등
 - ⑦ 종사자 및 이용자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기록대장

7) 활동운영

-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 관련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9조의2

- 평가대상 :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지기간을 제외한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인 수련시설
- 평가주기 및 횟수 : 시설유형별 2년
 - 짝수년도 : 수련원·유스호스텔·야영장
 - 홀수년도 : 수련관·문화의집·특화시설
- 결과공개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 평가지표

정량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수련시설의 청소년의 이용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 수련시설의 인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수련시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정성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시설의 발전 노력 수준에 관한 사항 ■ 평가위원 의견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8) 안전교육

- 이용자 안전교육
 - 관련법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안전교육 주체 및 주요 내용
 -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 포함)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교육방법
 - 교육 실시자: 수련시설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 교육 대상자: 수련시설의 이용자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
- 안전교육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
 - 수련시설 이용 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 청소년수련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처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
 - * 안전교육 동영상은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배포 중
 - * 안전교육시스템(youth.go.kr/kose)

- 시설별 안전체계를 마련하여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 필요
 - 수련시설 형태 및 안전 상황에 따라 시설별 안전교육 체계 마련
 - 시설별로 마련된 안전교육 내용을 시설 종사자 등이 숙지하고 시설 이용자 및 참가 청소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교육 시 비상 대피로, 소화기 위치, 제세동기 구비 여부 및 위치, 비상 시 안내 요원 위치 등 안전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실시
 - 안전교육 시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및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심폐소생술 프로그램 운영(전문기관 및 전문가) 실시
 - 시설 이용 시 및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을 위해 이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안내하고, 비상상황 시 대처방법 교육 필요. 아울러 안전사인물 등을 통해 다양한 매체 형태로 시설 이용자 및 활동참가자가 수시로 안전 대처 방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실시
 - 시설 상시이용자 대상 등으로 정기적인 안전모의 훈련참여 등으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교육 실시

- 행정사항
 - 교육 계획 및 실시 결과를 각 시설별로 작성·보관(이용자 안전교육 실시기록대장)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5번)
 - (예) 일시, 장소, 참여프로그램명, 안전교육 강사, 안전교육내용, 관리책임자 최종확인 포함

| 표 3-3 |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기록사항

교육	교육실시자	교육대상	실시일시	교육내용
시)	※ 작성 시, 시설에서 교육을 행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개인정보는 배제하고 개인 정보를 부득이 포함하여 작성 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등 조치 필요			
화재교육	김OO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00명	'23.3.00(수) 14:00~15:00	-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 능력 교육
안전교육	이OO 박OO	OO 프로그램참가자 00명	'23.7.00(목) 16:00~16:30	- 시설 내 비상 시 대처방법, 활동 중 성폭력·성희롱 대처방법

- 종사자 안전교육
 - 관련법률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4, 제19조
 - 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 대응능력 교육이 포함된 교육
 - 안전교육 주체 및 주요 내용

【 표 3-4 】 종사자 안전교육의 주요내용

관련법	운영주체	주요내용	비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4	여성가족부	-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 시설의 안전관련 법령 -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안전부에서 지원 ※ 교육내용 제공, 안전교육 운영 등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9조	운영대표자 (활동현장)	- 수련시설 운영 - 수련시설 안전 - 수련시설 위생 등	전 직원 대상 (수련시설 내부 및 용역업체 시설관리 담당직원 등)

-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안전연수본부)에서 주관하여 매년 실시하는 수련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참석하도록 조치
 - * 특히, 종합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가 중간등급 이하(C, D, E, 부적합) 시설의 관련분야 종사자는 필히 참석하도록 조치
- 종사자 교육 실시 대장 관리(「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5번)
 - * 일시, 장소, 안전교육강사, 안전교육내용, 참여자 명단(서명), 관리책임자 최종확인 사항 포함
- 수련시설 대피훈련
 - 주요내용 :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은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대피훈련(교육) 또는 종사자에 대한 대피 유도(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훈련시기 : 민방위훈련 및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 시
 - ※ 자연권 시설은 학교단체 등 청소년수련시설 입소 후 안전교육시 대피로 및 대피방법 등 관련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특히 야간 생활관 화재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참여 대피훈련 반기별 1회 실시해야 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의 대피(유도)훈련 결과를 반기 1회 보고해야 함
-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 청소년수련시설 내에서 필요한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아동학대신고자의무교육 등 주요 개별법에 따른 여러 안전교육은 연간 1~2회, 2년 또는 3년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3-5 | 주요 개별법에 의한 법정 안전교육

교육명	교육대상		관계법령	교육주기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전직원	공공 기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연 2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수련 시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연 1회 (상시근로자 11인 이상의 경우)
집단급식소 위생교육	영양사, 조리사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
의료인 보수교육	간호사		「의료법」 제30조	매년
소방안전관리교육	소방안전관리자 (공공기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최초 선임시 6개월 이내 이후 2년
전기안전관리교육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기술교육-3년 특별교육-최초 선임 시 6개월 이내
위험물 안전관리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교육	고압가스선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3조	3년
성희롱예방교육	전직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아동복지법」 제26조	매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전자/운전자 /동승보호자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신규/정기(2년)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전직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별표 4] 참조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전직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연 1회 1시간 이상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전직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연 1회 1시간 이상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	청소년시설·단체 종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	2년마다 1회

9) 청소년수련시설의 식당 관리

-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은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88조)로 신고·운영(권고)
 -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부수적인 음주행위 허용) 지양
- 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 :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2조 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함(「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 (예외)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전체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수련시설 운영기준)


03 신고제도 및 인증프로그램 운영

- 관련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제35조
- 신고 제도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인증 제도 :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인증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국가인증제도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 개념 :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국민이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
- 신고제 관련 주체 및 적용 요건

구분	적용대상 요건	
신고수리 주체	• 수련활동 주최자 소재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청소년정책 담당부서)	
신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지도·감독을 받는 시설·기관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법률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닌 경우(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이나 영리 단체) 	
신고 기한	- 참가자 모집 14일 전	
신고대상 참가자 연령	- 19세 미만의 청소년(9세~18세) ※ 19세 미만 청소년과 다른 연령대를 포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기획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임	
신고대상 활동범위	숙박형	- 이동숙박형, 고정숙박형 등 숙박하는 수련활동
	비숙박형 중 일부	- 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인 수련활동 -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 관련 [별표 기해당 활동])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 개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 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
- 관련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5조 등
- 인증대상 : 청소년(9세~24세)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
- 인증 유효기간 : 최초 인증 시 1년 ~ 최대 4년
 ※ 인증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인증을 필히 받아야 하는 대상 (의무인증)**

- 청소년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수상, 산악, 장기도보, 위험기구 사용, 사고대비 물질사용, 항공활동 등)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및 의무인증 대상

구분	활동대상 및 내용	신고 대상	의무인증 대상
영리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수련시설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청소년단체 - 6개 단체 :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연맹, 해양소년단연맹, 4-H, 청소년적십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회원대상 실시의 경우)	×	×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비회원대상 실시의 경우)	×	○
종교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보호자와 함께하는 활동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보호자(부모))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타법률의 지도·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단체	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이상 또는 고위험활동	×	○
	비숙박형 150명 미만 또는 저위험활동	×	×

위험도가 높은 활동(「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 관련 [별표 7])

구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 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 및 인증제도〉 관련 문의사항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	연 락 처	지역	연 락 처	지역	연 락 처
서울	02)849-0404	울산	052)227-0606	충남	041)562-9003
부산	051)852-3461	세종	044)864-7935	전북	063)232-0479
대구	053)659-6210	경기	031)232-9383	전남	061)280-9002
인천	032)833-8057	강원	033)731-3704	경북	054)850-1004
광주	062)234-0755	강원 (분소)	033)641-3990	경남	055)711-1355
대전	042)488-0924	충북	043)220-6821	제주	064)751-5041

04 그 밖의 청소년활동 안전관련 법령 이해

1)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의료조치(「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3)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한 자는 청소년활동에 참가하려는 청소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의료조치가 필요하거나 요청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 관련자료 : 건강상태확인서(개인/단체) 혹은 건강진단서 확인

2)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5)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할 경우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여야 한다.
 - ① 법 제18조의3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일자, 실시기관 및 안전점검의 내용 등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5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상품명, 보험금액, 보험가입기간 등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③ 법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인 경우 인증번호 및 인증유효기간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에 관한 사항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표시·고지 방법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의5)
 -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 또는 계획변경의 신고가 수리된 자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모집활동 및 계약을 하는 경우 인쇄물,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참가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가자 등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3) 숙박형 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제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9조의6)

-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은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운영 금지
 - * 단,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4)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9조)

- 청소년수련활동은 법률에 따라 신고·등록·인가·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해서는 안 됨
 - * 중요 프로그램 : 청소년수련활동의 명칭 및 구성 내용 등으로 볼 때 해당 활동을 대표하거나 활동의 주제가 되는 프로그램. 혹은 운영 시간이 전체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그램

5) 수련시설의 운영중지 명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0조의2)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중지명령
 -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 아동의 매매,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구걸 등 행위가 발생

6) 수련시설의 금지행위(「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1조)

-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7) 수련시설과 타용도 시설의 복합설치 금지(「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 청소년문화의집을 제외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전용시설로 설치해야 함
 - 다만,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3호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과 복합으로 설치 가능(수직복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위한 근린생활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에게만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도 복합설치 가능
 - * 복합시설이란 동일 건물에 건축법상 용도가 다른 종류의 시설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수련시설 간 중복설치 금지
 - 동일 건물 및 부지 내에 다른 종류의 수련시설과 중복설치 금지

- 수련시설과 인접시설의 구분
 - 수련시설 인접부지에 타 용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수련시설과 구분할 것

- 청소년수련시설로서 부적절한 사업을 위한 시설 및 공간사용금지
 -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 설치금지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접촉을 받아 위법적인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을 위한 공간의 설치금지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IV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안전관리

01. 활동 계획 시 안전관리
02. 활동 준비 시 안전관리
03.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04. 활동 종료 시 안전관리

프로그램 운영단계별 안전관리

01 활동 계획 시 안전관리

계획단계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단계로, 참여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청소년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안전점검은 물론 본 단계에서부터 안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계획단계에서 안전에 관한 사항 고려
- 참여 청소년의 연령(신체적·심리적)에 맞는 청소년활동 계획 수립
- 청소년활동의 동선을 중심으로 사전안전 점검
- 활동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장소 및 시설, 장비, 기자재 안전점검 이후 계획 수립

표 4-1 | 계획단계의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항목	참고사항
프로그램 · 기자재	① 운영하고자 하는 활동의 목적이 명확한가?	참여 청소년의 특성(연령, 구성의 특징 등)에 따른 프로그램 추진의 적절성, 개인·환경·프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에서의 위험상황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② 참여 청소년 특성과 목적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 내용을 구성하였는가?	상해사고, 긴급환자 발생, 실종, 휴식 간 안전, 성희롱 예방 등 활동 중 발생 가능한 일반적인 안전사고와 참가자, 프로그램, 활동장 특징 및 비상대피로 등 활동 및 활동장소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대처 방안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③ 프로그램 일정상에 충분한 안전교육과 휴식시간을 고려하였는가?	기상상황 등 유사시를 대비한 대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④ 유사시를 대비한 상황별 대응방안이나 대체프로그램을 계획하였는가?	활동기자재, 활동장소 및 이동, 프로그램, 청소년의 특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점검 및 대책을 마련한다.
	⑤ 편성한 프로그램의 위험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하였는가?	여러 기관이 협업하거나 활동장소를 임대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분쟁의 소지를 대비하여 관리주체, 역할, 책임, 보상체계 등을 명확히 사전에 협의한다.
	⑥ 활동의 주최자와 주관자, 위탁자의 책임 범위는 명확한가?	

구분	확인항목	참고사항
지도자	⑦ 지도자의 인원수나 전문성은 활동의 내용에 적합한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최소 2명 이상의 지도자 배치를 권장하며 참가 인원, 활동특성, 안전사고 발생 시를 고려한 지도자 배치 및 역할을 부여하고 운영하려는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⑧ 긴급 상황 시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도자의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응급처치 교육 및 자격을 갖춘 지도자의 현황을 확인하고 청소년 활동 운영 시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참고) 인증프로그램 안전전문인력 요건
	⑨ 지도자가 활동 및 긴급 상황에서 해야 할 역할을 계획하였는가?	사고 당사자 응급처치 및 참여 청소년 관리, 비상연락 체계 가동 및 사고대응, 유사시 역할 등을 교육하여 사전 훈련을 통해 숙지한다.
활동 환경	⑩ 사업의 목적달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활동장소를 선정하였는가?	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설비 확보 여부, 수용규모, 활동장소의 시설 안전 및 위험요소, 허가·등록 여부, 유사시 역할·협조사항, 안전 보험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한다.
	⑪ 현장답사 계획은 치밀하게 수립하였는가?	* 활동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기나 시간대에! * 활동의 전문가 혹은 해당 장소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한다.
	⑫ 보험 가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별도 보험가입 시 예산확보 여부 등)	주최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 및 활동장소, 운영하려는 기간 동안 보장이 가능해야 하며 사고당 보장금액이 참여 청소년 수 대비 개인별 최소 1인당 1억 5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고,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대인 외, 대물·자연재난·음식물배상 등
	⑬ 청소년의 시각과 시점에서 활동장소의 안전이 확인 가능한가?	활동 전 안전교육 등을 통해 위험요소를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02 활동 준비 시 안전관리

준비단계는 원활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참여 청소년의 특성(환자 파악 등)을 파악하고 활동장소, 시설, 설비, 기자재 등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지도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활동의 개요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단계이다.

- 활동하고자 하는 장소 및 프로그램의 시설, 장비, 기자재 사전 안전점검
- 참여 청소년 등 대상자 특성 파악
- 환자 파악
 - 환자 파악 후 상담 및 조치
 - 환자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의무실, 숙소, 관찰 참여 등 기준 마련)
- 활동의 개요 및 안전에 관한 유의사항 전달 및 숙지 여부 확인
- 수립한 계획과의 변경사항 여부 확인 및 대책 수립

| 표 4-2 | 준비단계의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항목	참고사항
참가자 · 프로 그램 · 기자재	① 참여 청소년의 명단, 인원, 건강 상태 등의 주요 정보를 확보하였는가?	질병, 장애, 특이체질 등을 사전에 파악한다.
	② 참여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활동내용과 관련된 정보가 전달되었는가?	-
	③ 계획한 참여 청소년의 조건과 실제로 참여한 청소년의 차이는 없는가?	-
	④ 프로그램별 장비, 안전용품 등 준비물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가?	참여인원에 따른 프로그램 기자재 및 장비 확보 여부 확인 및 사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⑤ 프로그램별 위험요소에 따른 대처방법을 준비하였는가?	프로그램 특성 및 활동 환경을 고려한 안전사고대책과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망(야간진료 병원 등 포함), 비상시 대처를 위한 내부의 임무 및 역할, 통보계획 등에 대한 매뉴얼을 구비한다.
	⑥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이 양성평등 하도록 준비되었는가?	고정된 성적 관념을 제시하거나 한쪽 성별에 치우치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된 바가 없는 지 확인한다.
지도자	⑦ 확보된 지도자의 인원수와 전문성은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가?	유사시를 대비하여 최소 2명 이상의 지도자 배치를 권장하며 참가 인원, 활동특성, 안전사고 발생 시를 고려한 지도자 배치 및 역할을 부여한다.
	⑧ 응급처치가 가능한 지도자가 배치되었는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 안전 전문인력 요건을 참고할 수 있다.
	⑨ 모든 지도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참가 청소년의 특징, 프로그램 운영 시 위험요소, 비상연락망, 안전사고 대처방법, 성희롱 예방, 유사 시 역할, 구급약품 및 장비 보관장소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⑩ 지도자는 활동 및 긴급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 일시, 장소, 교육자, 교육내용, 교육이수자 서명 등을 포함하여

구분	확인항목	참고사항
활동 환경	⑪ 구급약품 및 장비의 보관장소를 참여 지도자가 숙지하고 있는가?	사전안전교육일지를 기록·관리한다.
	⑫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는가?	참여 청소년과 지도자, 지도자와 지도자 간 연락체계, 유관기관 (야간진료 병원 포함) 등을 포함한다.
	⑬ 활동기간 중 일기예보, 특보, 유행성 질병 여부 등을 파악하였는가?	활동장소 및 하고자하는 프로그램이 일기 등의 영향에 의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안전하고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에 대한 대처프로그램 및 대처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⑭ 활동장 주변의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였는가?	활동하고자 하는 장소에서의 응급구호 등 기관의 연락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구호 요청 시 활동장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도착 전 응급상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한다.
	⑮ 현장답사(사전 안전점검)를 통하여 활동 장소의 적합, 안전성을 확인하였는가?	현장답사의 내용과 준비상태를 확인하고, 기존 인지하고 있는 사항과 변경사항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⑯ 모든 활동장소에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였는가?	활동기간 내 모든 활동 및 활동장소에서 보장이 가능해야 하며 사고당 금액이 참여 청소년 수 대비 개인별 1인당 1억 5천만원 이상 보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⑰ 활동현장에서 유사시 외부와 연락이 가능할 수 있는 통신상황은 원활한가?	-

지도자 사전안전교육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상해사고 : 활동특징 및 상해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등
- 긴급환자 발생 : 긴급환자 발생 시 대처(지도자는 후송방법 등 포함) 등
- 활동장 특징 및 비상대피로 : 활동장 특징에 따른 안전교육, 활동 시작 전 실내활동장에서 외부로의 대피로 및 집결지 교육
- 화재발생 대처 : 화재발생 시 역할 및 대처방법 등
- 자연재해 :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역할 및 대처방법 등
- 실종 : (지도자) 비상연락체계, 실종자 탐색 계획 등
- 휴식 간 안전 : (지도자) 휴식 시 지도자 배치 및 안전관리 방법 등
- 성희롱 예방 : 성희롱 정의, 예방, 대처방안 등
- 디지털 성범죄 예방 :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화장실·샤워실·탈의실 등 취약 시설의 사전 안전관리방법 등
- 요보호 청소년 관리 : 허약체질, 음식알레르기, 요주의 청소년에 대해 사전에 지도자 및 식당직원과 공유 등
- (장소)이동 : 이동은 활동장과 활동장을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동수단 등 이동 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

항공, 장거리, 산악, ATV의 경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 수상활동 :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항공활동 : 활동장 안전점검표(활동장 주변에 장애물 여부 등)
- 장거리 걷기활동 : 숙영지(세면, 화장실 이용이 가능, 전기 혹은 불빛 사용 가능)
- 산악활동 : 낙석위험 여부, 안전로프와 나무계단 등의 상태, 이정표나 안내판 여부, 입산 통제구역, 장애물 여부 (산악스키)
- ATV : 주변 및 이동장소에 위험요소, 절벽이나 낙석 등의 위험요소
- 하강레포츠 : 와이어 로프, 기둥, 와이어 설치 적절성, 와이어 교체주기, 플랫폼 점검, 가이, 브레이크 시스템

위험도가 높은 활동의 활동장비 점검항목 예시

- 수상활동(수상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활동) : 수상활동 기구, 구명조끼, 헬멧, 구명줄, 구명환, 자동제세동기, 비상 구조선 등
- 수중활동(스킨스쿠버 등 수중에서 활동) : 수경, 오리발, 잠수복, 장갑, 산소통 장비일체, 자동제세동기 등
- 항공활동 : 기체, 하네스, 헬멧, 보조 낙하산, 비행계기, 마운트, 고글, 장갑 등
- 장거리 걷기활동 : 우비, 물통, 야광복과 랜턴(야간 이동 시) 등
- 산악활동 ① 산악스키 : 헬멧, 장갑, 스키부츠, 산악용 스키, 스틱, 썰, 고글 등
- ② 클라이밍 : 헬멧, 장갑, 확보기, 하네스, 자일, 암벽화 등
- ③ 야간등산 : 장갑, 후레쉬, 스패츠, 아이젠(겨울) 등
- ATV : 헬멧, 보호대
- 하강레포츠 : 트롤리, 안전벨트, 카라비너, 랜야드, 안전모, 응급구조장비 등

※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활동장비 점검표도 필요에 따라 제시 가능하며, 활동 내용 및 특징에 따라 장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03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운영단계는 청소년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유의사항을 재전달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과 그에 따른 능력을 배양하고 연락체계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전 안전 유의사항 재전달 및 숙지 여부 확인
-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주의 지도
- 참가 청소년들의 연령 및 피로도를 관찰하여 쉬는 시간 적절하게 배정
- 활동장을 이탈하는 청소년이 없도록 관찰
-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능력 배양
- 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연락체계 숙지 및 연습
- 청소년지도자는 활동장소에서 이탈 금지

표 4-3 | 운영단계의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항목	
프로그램 / 기자재	① 프로그램의 대상, 일정, 시간 등 변화된 상황이 있는가?	
	②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도구, 장비 등의 상태를 점검하였는가?	
	③ 활동 중 휴식, 수분보충, 개인위생을 위한 시간배정을 고려하였는가?	
지도자	④ 배치된 지도자의 변화된 상황이 있는가? (교체, 건강상태 등)	
	⑤ 모든 지도자는 배정받은 위치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⑥ 참여 청소년 및 프로그램, 활동환경 등 특이사항 발생 보고 및 공유체계, 관련한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활동환경	⑦ 활동장소의 모든 위험한 요소는 제거되거나 위험표지가 이루어졌는가?	
	⑧ 활동장소의 청결 및 위생 상태는 활동에 적합한 수준인가?	
	⑨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비상연락처와 지도자 간 비상연락망에 이상이 없는가?	
	⑩ 지도자는 활동 및 긴급상황에서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실내	⑪ 출입문, 창문, 집기류 등의 상태와 위생수준은 적합한가?
		⑫ 화재, 붕괴는 재난 상황 시 대피방법은 고려하였는가?
	야외	⑬ 날씨, 기온 등 주변 여건의 변화는 없는가?
⑭ 유사시 대피장소를 준비하였는가?		
참여 청소년	⑮ 참여 청소년의 인원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였는가?	
	⑯ 참여 청소년의 복장은 활동에 적합한가? (필요시 환복 조치)	
	⑰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적합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⑱ 활동 내용에 적합한 준비운동을 실시하였는가?	
	⑲ 신체적·정신적 불편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였는가?	

04 활동 종료 시 안전관리

1) 종료단계

종료단계는 청소년활동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정리운동을 실시하고 최종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차기 활동을 안내하도록 한다.

- 활동내용 정리
- 정리운동 실시
 - 심장의 먼 곳에서 심장으로 다가오는 운동 실시
 - 쉬운 운동에서 어려운 운동으로 실시
 - 많이 활동한 신체부위 중심으로 준비운동 실시
 - 정리운동과정에서 환자 파악
 - 환자 파악 시 상담실시 및 조치
- 청소년활동 이후 차기 활동 안내
- 청소년활동 이후 차기 활동 장소 이동 시 사전 동선 안내 및 이동에 관한 안전교육 실시

| 표 4-4 | 종료단계의 체크리스트

구분	확인 항목
프로그램 · 기자재	① 계획된 프로그램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는가?
	② 도구, 장비가 모두 회수되었고, 상태를 점검하여 보관하였는가?
지도자	③ 필요시 도구, 장비를 보수하거나 파손품을 분리하였는가?
	④ 모든 지도자는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활동환경	⑤ 프로그램 운영 시 위태로운 상황에 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였는가?
	⑥ 활동장소는 청결하게 뒷정리를 하였는가?
참여 청소년	⑦ 추후 활동 시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보이는 점이 있는가?
	⑧ 활동 내용에 적합한 정리운동을 실시하였는가?
	⑨ 참여 청소년 모두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인가?
	⑩ 프로그램 및 안전에 관련한 청소년의 의견을 청취하였는가?
	⑪ 참여 청소년의 소지품 중 분실물이나 파손품은 없는가?
후속 조치	⑫ 활동 종료 후 귀가 또는 다음 일정으로 이동, 숙소 복귀 등 해산 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가?
	⑬ 청소년이 안전하게 귀가하여 집에 도착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실시하였는가?
	⑭ 특이사항 발생 시 보호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실시하였는가?
	⑮ 추후 프로그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는가?
	⑯ 인증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7조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한 수련활동에 관하여 개별 청소년의 인적사항, 활동참여 일자·시간, 장소, 주관기관, 수련활동 내용 등에 대한 기록 및 결과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통보하였는가?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V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01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02 사고 발생 시 단계별 조치내용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평상시	사고발생 시 단계별 조치내용
<p>시설물 안전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수시 안전점검 - 시설별 특별 점검 (모험시설물, 식당 등 특별점검) - 위험 요소 제거 - 자재 및 장비 비축 - 시설현황 파악 (층별현황, 안전장비 및 설비현황, 건물구조 등) 		<p style="text-align: center;">사고발생 직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진정시켜 냉정해진다. - 자기 자신과 사고자 이외의 안전을 확보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상황 및 사고자 상태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다. (사고인원, 추가 위험 요소 확인 등) - 구조실시가 가능한지 판단한다. (응급기관 연락) -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후송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자 연락</p>
<p>비상상황 대응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내방송 멘트(외국어 등 포함) 점검 - 비상연락망 구축 - 인근 응급기관 및 병원 등 소재 및 현황 파악 - 상황별 안전매뉴얼 교육·훈련·숙지 - 보험가입 및 보장기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속 기관 및 관계기관에 연락한다. -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사고내용, 부상수준, 보호자의 역할 등 정확한 안내 필요) - 보험회사에 연락한다. (배상을 위해 확보할 자료 등 확인)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사고의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정확히 기록한다. (기록내용 : 육하 원칙에 따라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의료기관은 어디인지 등 최대한 상세히 기록하고 목격자의 연락처 등을 확보한다. (사진, 영상 등 활용) - 사고의 기록은 보고 및 사고사례 전파 등에 활용한다.

01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보고

-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 * 상황별(재해, 안전사고) 안전매뉴얼 수립, 숙지 및 활용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비상망의 작성 및 훈련, 외부기관(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연계를 통한 비상처리체계 구축
- 안전사고 발생 경위 및 조치 경과 등 신속 보고 철저
 - * 수련시설 → 시·군·구 → 시·도 → 여성가족부
 - * 보고체계 상시 유지
- 사고통계의 기록 및 유지
- 보험가입(「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5조)
 -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함
 - * 법상 건축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청소년문화의집은 제외 가능. 다만 수련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가입 필요(권고)
-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은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범위에 대해서만 가입
 - *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범위 외의 지역에서 활동 시 별도 청소년활동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보상 금액은 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과 동일)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보험지급 최소금액 준수

사고대응체계

- ※ 청소년시설 내 어느 장소에서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
- 신속하게 후송 또는 청소년시설 내 치료를 판단 할 수 있는 체계(청소년시설의 차량(도보포함)로 후송 또는 119 신고 판단 포함)
 - 후송할 경우 병원(24시간 운영 응급실 지정 또는 시간대별로 지정) 선정 체계
 - 사고 시 보고 체계 등

02 사고발생 시 단계별 조치내용

- 제1차 구급조치 : 사고발견자 또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도자가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긴다.
- 수련시설 의료담당이나 인근병원 의사, 119 등에 연락하여 구급조치를 취한다.
- 사고의 정도에 따라 비상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동 또는 응급기관의 지시에 따라 사고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자의 불안을 최소한으로 줄여준다.
- 다른 참가자에게 필요 이상의 근심이나 동요를 주지 않도록 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 사고 상황(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등)을 조사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한다. 목격자의 말은 2명 이상으로부터 청취하거나 현장사진을 찍어두어 객관성을 확보한다.
- 병원에 동행한 지도자는 의사에 의한 진단, 치료, 경과, 결과 등을 책임자에게 알린다.
- 책임자는 가족에게 사고의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특별한 처치가 필요할 때에는 가족과 상의한다.
- 가족에게 기록 열람, 사고현장 안내, 목격자 소개 등을 실시한다.
- 치료 이후 환자를 방문할 때에는 성의를 가지고 방문하며 그 후의 상황 내용을 파악하여 처리한다.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VI

청소년활동 장소 및 유형별 안전관리

01. 실내활동
02. 실외활동
03. 위험도가 높은 활동

청소년활동 장소 및 유형별 안전관리

청소년활동 장소 및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는 크게 실내 장소별로 구분되는 '실내활동', 활동별로 구분되는 '실외활동', 그 외 활동 시에 위험이 뒤따르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01 실내활동

실내활동은 수련시설의 내부(실내) 공간(장소)에서 실시하게 되는 활동으로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유형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에는 여러 실내공간들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장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공간 내에서 공통적으로 유념해야 할 위험요소, 안전사고 예방법, 청소년 및 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등의 안전관리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6-1 | 실내활동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장소별 수용기준 적정한 인원 편성 ■ 활동에 적합한 장소 이용 ■ 수용인원에 적합하지 않은 출입문 크기 및 출입문 개폐여부 ■ 난간, 창문 등 안전장치 미흡 ■ 방음/차음의 문제로 밀폐된 공간으로 인한 공기상태 불량 ■ 접지가 되지 않는 콘센트 사용으로 인한 감전사고 ■ 전자악기, 음향기기, 조명기기로 인한 감전사고 ■ 조명과 음향장비 동시 사용 시 전기사용량 초과 ■ 무대 기자재, 강의실 책상·의자 등 기자재 파손 ■ 바닥의 이물질(테이프, 카펫 등 바닥재 들뜸, 전기선 발걸림, 유리조각, 물, 음료수병 등)로 인한 안전사고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장소)의 수용기준에 맞는 적정인원 편성 ■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지도 ■ 지도자의 지도에 따른 활동 실시 ■ 사고발생 시 신고 및 연락 방법 안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용과 안전수칙(위생 포함)에 대해 설명 ■ 활동에 적합한 장소 사용 ■ 출입문 마감처리 점검으로 문에 손·발끼임 사고 방지 ■ 출입문 개폐방향에 대한 안내 부착 ■ 창문 및 난간 위험요소 확인(위험한 장소 및 기자재의 경우 위험 표시) ■ 활동물품 사전점검 ■ 책상, 의자 파손 확인 ■ 환풍기 환풍 상태 점검 ■ 외부와의 환기를 통해 쾌적한 실내 공기 질 유지 ■ 전자악기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교육 및 지도 ■ 악기 사용 시 충분한 활동공간 확보 ■ 음향·조명시스템에 대한 주기별 점검 시행 ■ 공연 중 암전이나 정전에 대비한 비상조명 확보 ■ 접지콘센트를 사용하여 감전위험 대비 ■ 공간의 규모에 맞는 볼륨조정으로 청각기관 보호 ■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 조명과 음향장비의 동시 사용에 대비한 충분한 전기용량 확보 및 확인 ■ 이동 동선 간 위험요소 확인 ■ 비상등 상태 확인 ■ 청소년수련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해당 장소의 유형에 대한 확인 ■ 바닥의 이물질 확인을 통해 사고발생 원인 사전 제거 (예, 바닥이 미끄러울 가능성이 있다면, 마른 걸레 비치 등)
<p>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호 간 안전규칙 설명 (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에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비상대피로 위치 및 안전대피요령, 집결지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 청소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안전교육 실시 - 위험요소에 대한 주의 안내(시설물, 기자재, 물건 등) ■ 지도자 숙지사항 및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자 명단을 사전에 파악하여 2차적인 피해 방지 - 환자 발생시 후송체계 방법 공유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조치방법에 대한 이해 - 장소에 대한 안전대피 요령 및 집결지 숙지 - 청소년 이동 시 이동 동선에 대한 안내 - 인원을 나누어 이동시켜 병목현상 방지 - 프로그램 시작 전 스트레칭 시행 - 프로그램 종료 후 환자 파악 - 프로그램 종료 후 환자 파악
<p>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에 대한 이해 ■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및 조치방법에 대한 이해 ■ 비상구·대피로, 안전한 대피요령, 집결지에 대한 이해 ■ 위험한 기자재 사용법 숙지 여부 ■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준수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 스스로의 몸 상태 체크 후 이상 시 지도자에게 도움 요청 ■ 친구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주위에 도움 요청(지도자)

1) 강당(공연장)

강당(공연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실내집회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1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대규모 공연 및 특강 시에 자주 사용한다.

강당에서는 위의 공통요소 외에도 특히 공연 중 암전으로 인한 시야확보 어려움, 공연장 대관 시 외부 음향장비 반입에 따른 기자재 관리 소홀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사례와 강당(공연장) 사용 시 필요한 안전 확인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당(공연장) 관련 안전사고사례〉

- 공연연습 중 발바닥에 나무 조각이 박힘
- 장기자랑 도중 무대에서 뛰다가 발목이 골절됨
- 강당 입구 문턱에 발이 걸려 넘어짐
- 무대에서 추락함
- 출입 시 많은 인원이 몰려 충돌 및 압사 사고를 당함

| 표 6-2 | 강당(공연장)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창문 및 난간에 안전장치 및 안전경고문구 부착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전자약기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	
활동환경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환기 등을 통해 실내의 공기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오디오 등 실내의 전기기구의 전선 및 전기콘센트 안전 확인	
	전기콘센트 등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음향장비와 조명장비의 전기용량이 허용기준치 이내인지 확인	

구분	점검사항	확인
	공연 중 암전에 대비한 비상조명 확인	
	전기콘센트의 경우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는지 확인	
	바닥에 이물질(테이프, 카페트 등 바닥재 들뜸, 전기선 발 걸림, 유리조각, 물, 음료수병 등)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지 확인	
	활동종료 후 장비와 시설물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활동지도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활동 시 지도자의 임장지도가 필요한 지 확인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2) 체육관

체육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체육활동장’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청소년 수련관은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 청소년수련원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체육시설을 의미한다. 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신체를 단련하는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사용한다. 체육관에서는 특히 운동기구 등의 체육활동 도구 사용 시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사전에 운동기구 등 체육활동 도구의 상태를 확인하고, 지도자 위치와 역할에 대한 사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체육관에서의 안전수칙 안내, 환자, 요보호자에 대한 활동제한 안내, 활동 도구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과 주의사항 전달, 활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 지도, 활동 후 환자발생 파악 및 처리, 프로그램 종료 후 세면 안내 및 질서 정리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활동에 적합한 복장 및 운동화 착용, 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의 실시, 활동 후 마무리 스트레칭 실시, 활동 전 객관적인 몸 상태 확인으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사례와 체육관 사용 시 필요한 안전 확인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체육관 관련 안전사고 사례〉

- 헬스장 벨트 마사지 기구 사용 중 모서리에 무릎을 다칩
- 운동기구 고정 장치가 빠져, 운동하던 청소년이 넘어짐
- 탁구대가 갑자기 접히면서 청소년이 넘어지고 턱이 찢어짐
- 기초체력 향상 수업 중 왕복달리기를 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체육관 벽면에 머리와 무릎을 부딪쳐 머리 찰과상과 우측 무릎 타박상을 입음

표 6-3 | 체육관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준비운동 필수 실시 및 사고 시 대처사항 안내	
	체육활동 장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활동환경	활동 중 상해에 대비한 구급용품(장비) 구비 여부 확인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환기 등을 통해 실내의 공기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체육시설의 낙후 및 파손상태 확인	
	체육시설의 금이 가거나 깨진 부위가 있는지 확인	
	금속재질 체육시설의 녹발생, 페인트칠 벗겨짐 여부 확인	
	체육시설 내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등 위험물질 존재 여부 확인	
	조명기구, 냉난방 등 천정부착물 상태 점검	
	바닥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지 확인	
	활동종료 후 장비의 파손여부 확인	
활동지도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활동 시 지도자의 임장지도가 필요한지 확인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활동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법의 적정여부 확인	
	체육활동 중 넘어짐, 부딪힘 등 상해사고 위험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는지 확인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3) 강의실

강의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면 1실당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칠판·교탁·책상·걸상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lux)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강의실과 유사한 공간인 ‘자치활동실’이 있는데, 이 역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보면 동아리활동·분임토의 등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의자·탁자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의실과 자치활동실은 공간의 명칭을 달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두지 않고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강의실을 자치활동실과 유사한 공간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두 공간은 주로 문화강좌 프로그램, 청소년운영위원회나 동아리

등의 자치활동¹⁾, 그 밖에 청소년들의 소모임 공간으로 사용한다. 강의실에서는 위의 실내활동 장소에서의 안전관리를 준수하여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한다.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와 강의실 사용 시 필요한 안전 확인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강의실 관련 안전사고 사례〉

- 강의실 책상이 갑자기 접히면서 발 위로 떨어짐
- 가위를 사용하다가 손가락 베임

표 6-4 | 강의실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창문 및 난간에 안전장치 및 안전경고문구 부착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책상, 의자 등 활동 시 사용도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설명	
활동환경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	
	바퀴달린 책상 및 의자의 안전장치 설치 여부 확인	
	빔프로젝터 등 전기 사용기기에 대한 사전 점검	
활동지도	바닥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지 확인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 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활동 시 지도자의 입장 지도가 필요한 지 확인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4) 댄스연습실

댄스연습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특성화 수련활동장’의 여러 공간 중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은 문화적 감성을 개발하고 정서를 순화하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미활동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극장·공연장·음악감상실·전시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댄스연습실은 주로 춤, 무용

1)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황에 따라 강의실이나 자치활동실 외에 청소년운영위원회나 동아리방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음.

등의 강좌형 프로그램이나 춤·댄스 동아리의 연습공간으로 사용한다. 이곳은 다른 공간과는 달리 벽에 전면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 바닥은 나무 소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댄스연습실은 갑작스런 운동에 따른 부상 초래, 전면 거울과 충격 및 기자재 파손, 연습 시 땀의 배출이 많아 바닥이 미끄러움 등의 위험요소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작 전 충분한 스트레칭이 가능하도록 지도 및 유도, 거울 설치 시 유리의 강도에 대한 고려 및 설치된 거울에 주의 안내문 부착, 연습 후 공간에 대한 위생관리를 통해 곰팡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활동공간의 바닥은 나무, 매트 등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이 댄스 연습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은 음향시설의 사용방법을 제대로 익혀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사용하기 어렵다면 지도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와 댄스연습실 사용 시 필요한 안전 확인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댄스연습실 관련 안전사고 사례〉

- 발레수업 시 스트레칭 중 파트너가 팔을 과도하게 당기면서 왼팔 어깨탈구가 발생함
- 댄스동아리 회원 연습 시 전면 거울에 충격을 주면서 천정 고정 철제물이 떨어지면서 동아리회원 이마에 열상을 입힘

표 6-5 | 댄스연습실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창문 및 난간에 안전장치 및 안전경고문구 부착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음향기기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	
활동환경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환기 등을 통해 실내의 공기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거울이 파손되었거나 금이 가는 등 파손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바닥이 활동 시 충격을 흡수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확인	
	바닥에 이물질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지 확인	
바닥이 춤을 추거나 활동을 하는데 미끄럽지 않도록 잘 닦여 있는지 확인		

구분	점검사항	확인
	오디오 등 실내의 전기기구의 전선 및 전기콘센트 안전 확인	
	전기콘센트 등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활동에 필요한 적절한 조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전등 불량 상태에 따른 교체 및 수리 여부 확인	
	활동종료 후 장비와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활동지도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활동 시 지도자의 입장지도가 필요한 지 확인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5) 음악(보컬밴드)연습실

음악(보컬밴드)연습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의 ‘특성화 수련활동장’의 여러 공간 중 ‘문화적 감성 함양 활동장’에 해당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보컬밴드)연습실은 주로 기타, 드럼 등 보컬밴드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위한 강좌형 프로그램이나 음악(보컬밴드) 동아리의 연습공간으로 사용한다. 이곳은 방음장치가 되어 있고, 음향장비 등이 구비되어 있다.

음악(보컬밴드)연습실에서는 전자악기 중복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고, 좁은 공간에서의 악기 간 충돌우려가 있으며, 작은 공간에서 볼륨을 지나치게 높이 설정할 경우 고막 등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피드백(하울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큰 소리가 발생하여 청각기관의 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악기 사용 시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고, 공간의 규모에 맞는 볼륨조정으로 청각기관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사례와 음악(보컬밴드)연습실 사용 시 필요한 안전 확인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음악(보컬밴드)연습실 관련 안전사고사례〉

- 음악연습실에서 밴드 연습을 하던 중 드럼스틱으로 옆에 있던 연주자의 눈을 찔러 상해를 입힘

표 6-6 | 음악(보컬밴드)연습실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창문 및 난간에 안전장치 및 안전경고문구 부착	

구분	점검사항	확인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전자악기 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	
활동환경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환기 등을 통해 실내의 공기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오디오 등 실내의 전기기구의 전선 및 전기콘센트 안전 확인	
	전기콘센트 등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전기콘센트는 접지형 콘센트를 사용여부 확인	
	활동종료 후 장비와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확인	
활동지도	악기연주 시 몸이 서로 충돌하거나 악기가 충돌하지 않도록 지도	
	볼륨이 지나치게 높지 않도록 지도	
	피드백(하울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활동 시 지도자의 입장지도가 필요한 지 확인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6) 요리실습실/제과제빵실

요리실습실/제과제빵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의 ‘특성화 수련활동장’의 여러 공간 중 ‘과학 및 정보화 능력 함양활동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학 및 정보화 능력 함양 활동장은 창조적 능력·탐구심·정보화능력·미래과학능력 등을 함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활동장으로서 컴퓨터실, 과학실습·자연관찰·천체관측시설, 요리실습시설, 어류·조수사육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요리실습실/제과제빵실은 주로 셰프, 요리연구가 등의 꿈을 키워가는 진로 프로그램이나 요리·제과제빵 동아리의 연습공간으로 사용한다. 이곳은 다른 공간과는 달리 요리실습을 위한 칼, 가위를 비롯한 조리도구, 오븐, 반죽기 등의 제과제빵 도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다른 공간보다 더욱 안전에 신경 써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요리실습실/제과제빵실에서는 지도자 부재상태에서의 조리도구 및 장비 사용, 앞치마, 두건, 위생장갑 등 위생장비 미착용, 오븐, 반죽기, 발효기 등 장비에 의한 사고, 가스렌지, 버너 등 화기에 의한 사고, 식용유 등 기름 사용에 따른 화재 및 화상 위험, 칼, 빵틀, 가위 등 날카로운 장비 사용에 의한 사고, 사용기간이 지난 식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데 따른 피로, 개인별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 물기 등에 의해 미끄러운 바닥에 의한 안전사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치마, 두건, 위생장갑 등 위생장비에 대한 준비 및 지급, 오븐, 반죽기, 발효기 등 위험이 있는 장비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용, 가스렌지 등 화기 사용에 대한 사전교육 및 조리 시 지도, 조리 시 사용되는 식자재 및 재료에 대한 철저한 관리, 칼, 빵틀, 가위 등 날카로운 장비의 철저한 관리 및 사전교육 실시, 활동 시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신체 피로도 완화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사례와 요리연습실/제과제빵실 사용 시 필요한 안전 확인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요리연습실/제과제빵실 관련 안전사고사례〉

- 전기 주전자의 플러그를 꽂으려고 줄을 당길 때 전기 주전자의 끓는 물이 근처에 있던 사고학생의 등에 쏟아져 오른쪽 귀, 목, 등, 손목에 화상을 입음
- 조리 실습 중 미끄러운 바닥에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뜨거운 기름이 있는 프라이 팬을 팔꿈치로 쳐 얼굴과 목에 기름이 튀어 안면부 2도 화상 진단을 받음

표 6-7 | 요리연습실/제과제빵실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창문 및 난간에 안전장치 및 안전경고문구 부착	
	조리도구 및 설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활동환경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환기 등을 통해 실내의 공기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실습도구 및 재료는 참가인원에 맞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앞치마, 두건, 위생장갑 등 위생장비의 지급여부 확인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도구의 안전장치 여부 확인	
	인화성물질 및 화기는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식자재의 신선도 및 사용가능상태에 대한 확인	
	전기콘센트 등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핫플레이트 등 전기기구의 전선 및 전기콘센트 안전 확인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바닥소재 및 물기 등이 제거되어 있는지 확인	

구분	점검사항	확인
활동지도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활동 시 지도자의 입장지도가 필요한 지 확인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7) 자율적 문화공간

자율적 문화공간은 인터넷부스, 북카페, 노래방, 게임방, 영화방, 포켓볼 등과 같은 공간으로 청소년이 개인적으로 사용을 신청하고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한다²⁾(여성가족부, 2015). 청소년수련시설 중 특히 청소년문화의집 내 정해진 사업 외에 개별 청소년의 자유로운 이용·활동, 자발적인 문화체험과 만남과 소통의 공간 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자율적 문화공간은 해당 시설 이용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의 특성상 다른 공간과는 달리 청소년들의 안전에 대한 민감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세부 공간별로 안전사고 예방이 중요하므로 아래에 표로 제시하였다.

표 6-8 | 자율적 문화공간에서의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미흡 ■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미확인 ■ 신규이용자의 시설물에 대한 이해 부족 ■ 다중이용에 따른 위생 및 전염병 ■ 여가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접촉 및 부상 ■ 이용시설의 모서리와 날카로운 면에 의한 부상 ■ 정수기의 온수 이용에 따른 화상 위험 ■ 먼지와 높은 습도로 인해 컴퓨터 등 내부 누전으로 인한 발생가능성
안전사고 예방법	<p>[신규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사전교육과 이용지도 필요 ■ 시설을 처음 이용하는 청소년이 지도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사전교육을 받는 것에 대한 안내문 부착 <p>[컴퓨터, 게임기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에 의한 접촉을 통해 전염병 등이 옮길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위생상태 점검 ■ 키보드, 조종기에 소독제 등을 분사하여 청결 유지 ■ 정기적으로 전선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 ■ 컴퓨터 이용 시 먼지와 높은 습도에 따른 누전 발생가능성의 높음에 대한 안내 및 주의 지도 ■ 정기적으로 컴퓨터를 본체를 분해하여 먼지 등 제거 ■ 컴퓨터 전원플러그 주변 등 청결하게 유지하고 물에 젖지 않도록 지도

2) 출처: 2015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편람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퀴가 달려있는 의자의 경우 바퀴의 고장이나 이동의 수월성으로 인한 충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자배치에 주의 ■ 의자를 빼는 등 장난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장난에 따른 위험 고지 <p>[당구(포켓볼)/탁구 등 실내 체육이용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이블 설치 시 큐의 사용에 대비해서 충분한 공간 확보 ■ 큐로 장난하다가 다치는 경우가 빈번함을 설명하여 주의하도록 지도 ■ 게임 중 큐를 사용하지 않을 시 큐를 세우도록 지도 ■ 포켓볼의 공이 튀어서 테이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므로 공간 확보 ■ 테이블은 홀의 중앙보다는 구석으로 배치하여 최소한 2개 방향은 벽 쪽이 되도록 배치 권장 <p>[정수기 등의 편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으로 수질이 관리되도록 검사 및 점검 ■ 정수기에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 위생상태 점검 ■ 많이 이용하는 장소의 경우 일회용 컵 등을 제공 ■ 온수 사용 시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안전보조 장치 마련 ■ 바닥에 물이 흘러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매트 마련 ■ 정수기의 플러그나 콘센트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 <p>[비상 시 응급대처요령 및 대피로 이용방법 등 숙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인 시설이용자 실전 안전교육계획 수립 ■ 모의대피훈련 및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실시 ■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지도 ■ 수용정원 및 공간에 맞는 적정인원 편성 ■ 주중에 비해 주말이나 방학에 청소년들의 이용이 급증하므로 공간을 관리하는 지도자의 배치를 인원의 수에 맞게 증원 ■ 문의 개폐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 및 교육 실시 ■ 신규이용자의 이용시작 전 안전에 대한 환기 및 교육 실시 ■ 창문 및 난간 위험요소 확인 (위험한 장소 및 기자재의 경우 위험표시) ■ 이용콘텐츠 및 시설내부의 환기상태 및 위생상태 점검 ■ 전염병 등이 유행할 경우 해당 질병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지하고, 질병에 대한 의심증세가 나타날 경우 출입 제한 ■ 이용시설의 모서리 및 날카로운 면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 ■ 충격 시 위험한 곳에 충격완화 테이프 등 부착 <p>[비나 눈이 올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천 시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바닥 물기 신속 제거 ■ 눈이 내릴 경우 신발의 바닥 등에 묻은 눈이나 얼음 제거 ■ 시설의 바닥의 재질에 맞춰 상황에 맞는 대책 마련 ■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을 경우 출입구나 이동이 잦은 공간에 미리 설치 ■ 우산을 들고 이동 시 뾰족한 부분에 의해 다른 이용자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 지도 ■ 우천이 눈이 내린 후 이용 청소년들의 신체와 의복 등에 물기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콘센트와 전자제품 사용 시 주의 지도

표 6-9 | 자율적 문화공간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공간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신규이용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안내문 부착	
	신규이용자의 이용수칙에 대한 설명자료 비치	
	개인위생에 대한 점검 및 전염성 질병에 대한 대응요령 안내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창문 및 난간에 안전장치 및 안전경고문구 부착	
	이용시설물의 특성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 여부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활동환경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이 있는지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등이 부착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	
	소화기가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 작동이 되는지 확인	
	환기 등을 통해 실내의 공기상태가 적절하게 유지되는지 확인	
	컴퓨터, 게임기 등 위생상태 점검	
	포켓볼 등 체육시설물의 안전 확인	
	정수기 등 편의시설물의 안전 확인	
	이용시설의 모서리 및 날카로운 면에 대한 보호장치 여부	
	바퀴가 달린 의자나 책상에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	
	못이 튀어나오거나, 활동에 위험한 물질이 있는지 확인	
	오디오 등 실내의 전기기구의 전선 및 전기콘센트 안전 확인	
전기콘센트 등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		
활동지도	눈, 비가 내릴 경우 미끄러움 방지를 위한 매트 설치 여부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활동 시 지도자의 입장지도가 필요한 지 확인	
	청소년들은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8) 기타 (통로, 객실)

[통로 및 계단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지침]

- ① 우천시 통로의 바닥과 계단이 미끄러우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 ② 통로나 계단에서는 한쪽으로 통행을 하며, 천천히 걸어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③ 통로에서 뛰거나 친구와 장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치기 쉬우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 ④ 통로나 계단에 휴지나 간식 부스러기를 흘려 걸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소그룹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계단 이동 시 앞뒤 사람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⑥ 계단을 두 칸씩 뛰다가 헛디더 다치는 경우가 있으며, 한눈을 팔면 발을 헛디더 다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 ⑦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 ⑧ 계단 난간을 넘거나 난간을 타고 내려오는 등의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

*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법

- 낙상 사고 예방을 위한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
- 바닥에 물기 확인/ 물이나 음료수 등을 보관하는 별도의 장소 마련
- 마루 들뜸/ 바닥의 나무 가시 등 제거
- 바닥의 웅덩이, 빙판, 하수구 등 주의 표지판 설치

[객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지침]

- ① 입소 전 청소년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청소년들에게 생활지도 교육을 하고 생활 규칙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도록 한다.
- ③ 객실에서는 상호 간 장난(예, 베개 싸움 등)을 삼가며, 단정한 옷차림을 하도록 한다.
- ④ 위험하거나 고가의 물건 등은 휴대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전에 확인한다.
- ⑤ 객실 내 창문을 넘어 다니거나 창가에서 장난치지 않으며 테라스 난간에 기대지 않는다.
- ⑥ 요보호청소년은 지도자 전원이 공유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 ⑦ 야간 지도계획(불침번)을 세우고 야간 안전요원의 배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며 청소년들의 위급상황 발생 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02 실외활동

실외활동은 수련시설의 외부에서 실시하게 되는 활동으로, 활동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실외 활동도 구분하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현장에서 대표적으로 실시 되는 실외활동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의 활동영역에 기준을 두고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사고 예방지침 등을 기술하였다.

‘건강·보건활동’ 영역에는 자전거 활동, 모의올림픽을, ‘교류활동’ 영역에는 청소년참여활동을, ‘모험 개척활동’ 영역에는 오리엔티어링, 야영활동을, ‘문화예술활동’ 영역에는 박람회/축제, 모닥불 놀이 (캠프 파이어)를, ‘봉사활동’ 영역에는 청소년참여활동, 박람회/축제를, ‘자기(인성)계발활동’ 영역에는 공동체 활동을, ‘직업체험활동’ 영역에는 진로체험활동을 제시하였다.

1) 자전거 체험활동

자전거 체험활동은 주로 국토순례나 지역 내에서의 캠페인 활동 시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10 | 자전거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돌로 인한 타박상 및 골절 ■ 급경사 추락 ■ 자전거 마찰에 의한 찰과상 ■ 수분 부족으로 인한 탈수증 ■ 손목 염좌 ■ 참가자 외 대인사고 및 대물 파손 등에 대한 보험 미가입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전 반드시 준비운동 실시, 환자 파악 ■ 안전모, 손목, 팔꿈치, 고글 등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 생수통 휴대 ■ 운행 중 급격한 기어변속 금지 ■ 자전거 안장에 앉았을 때 발이 땅에 닿도록 안장 높이 조절 ■ 커브길, 내리막길에서 감속 ■ 앞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출발 ■ 활동 후 마무리 운동 ■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범위 등을 확인하며 운영진 및 참가자에 의한 다른 사람과의 사고발생 및 대물 파손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등의 보험 추가
활동환경 및 장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전거 이동 코스 기본경로 확인 및 장애요인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에 대비한 환자 수송계획 수립 코스별 위험요소(절벽, 교차로) 확인 - 코스별 가이드라인 확인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상황 발생 시 현 위치를 알 수 있는 지도 및 위치표지판 파악 - 로프, 구급약품 준비, 자동제세동기 배치 - 기상상태 항상 주시 -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이동 - 휴식지, 화장실 및 기타 활동 장소 확인 ■ 이동 코스별 안정성 확인 및 코스별 지도자 배치, 현장상황 파악 ■ 자전거 주요명칭 및 작동법 숙지 ■ 시작 전 장비 이상유무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들, 체인, 브레이크 작동상태, 타이어 공기압 및 기어 상태 사전점검 - 자전거를 정비할 수 있는 펑크처리키트 - 정지 시 뒷 브레이크 먼저 잡도록 사전 전달 - 자전거 표시등 상태 확인(야간운전 대비)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행동 및 이동 코스 이탈 금지 ■ 이동 중 급경사, 급커브, 장애물 발생 시 서행 또는 정지 ■ 밝은색 계열의 옷 착용 ■ 자전거 뒷자리 사람 탑승 금지 ■ 물 또는 과일을 통해 충분한 수분섭취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와 자전거 활동 시 필요한 안전 확인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전거 활동 관련 안전사고 사례〉

- 운동화 끈이 풀린 채로 탑승 중 자전거 체인에 끈이 감겨 넘어짐
- 개방된 장소에서 활동하던 중, 자전거와 지나가던 행인이 부딪힘
- 추월 및 병렬 주행 중 자전거끼리 충돌하여 자전거 파손 및 부상을 당함
 - ※ 자전거의 경우 탑승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사례가 가장 많으므로 활동 시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필요

〈자전거 활동 안전 확인사항-체크리스트3〉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자전거 타이어, 체인, 브레이크, 변속기

	
타이어	체인
	
브레이크	변속기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타이어	트레드마모와 상처확인				
	공기압확인(공기압수치: 평균 70~80) - 타이어에 표기된 적정 공기압 유지				
	튜브점검 - 장거리 여행시 밸브타임 등 필수점검				
	볼트 고정상태 점검				
체인	체인상태(늘어짐, 마모, 부식 등) 확인				
	체인 윤활제 확인				
브레이크	앞/뒤 브레이크 정상작동 확인				
	케이블 상태(이물질, 녹슴) 확인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 확인				
	브레이크 암고정 나사 고정상태 확인				
변속기	변속기 청소 및 윤활상태 확인				
	주행 중 변속 시 체인 이탈여부 확인 ※ 주행 중 이탈 시 전문업체 점검 필수				

3) 자전거 활동은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안전고려활동으로 지정하고 있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였음.

- 핸들, 페달, 안장



핸들

페달

안장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핸들	핸들 상태 확인 - 너트 확인(좌우로 움직여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 핸들과 앞바퀴 수직이 되도록 한다 - 브레이크 및 변속기 레버 그립상태				
페달	페달 청소 및 파손 상태 확인 페달의 회전과 고정여부 확인				
안장	안장 상태(높이조절가능여부, 너트 등)확인 - 안장은 자체와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사용자 신체조건에 적합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자전거 헬멧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머리에 맞는 사이즈 선택 및 조절				
헬멧에 금이 가거나 깨진곳 있는지 확인				
턱끈 조임 확인				
헬멧 청소여부 확인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확인				

- 보호장구(보호대, 장갑, 고글)



보호대	장갑	고글
-----	----	----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보호대 구성(무릎과 팔꿈치) 확인				
보호대 착용 장치(찍찍이, 웨빙 등) 상태 점검				
보호대의 청결 및 파손 상태 점검				
장갑의 찢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				
장갑 착용 후 핸들을 조정했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지 확인				
장갑의 외부 오염 등 청결상태 확인				
참가자 시력에 맞는 고글을 착용				
주간에는 주간용, 야간은 야간용을 착용하는지 확인				
※고글 착용 후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야 확보가 되는지 확인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 주행로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상 상태	일기예보를 통해 눈 또는 비 예보 확인				
자전거 코스	라이딩 출발장소 및 도착장소 확인				
	우천/폭염/폭우 시 대피장소 확인				
	비상 연락망 확인(인근 경찰서, 병원 위치 및 전화번호)				
	자전거 코스의 노면상태 사전점검 및 확인(주의할 지점 체크)				
	자전거 코스 시간 확인				
	자전거표지판 유무 확인				
	차도 이용 유무 확인				
	횡단보도를 건너는 코스 확인				
	지진 대비 비상대피소 확인				
휴식 시 자전거 주차 가능 여부 확인					
편의 시설 및 음료	코스 중 휴식장소 확인				
	자전거 주차 장소 확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물 또는 이온음료, 간단한 간식 준비 여부 확인				
	코스 주변 자전거정비소 위치 확인				
장거리 라이딩	비상상황을 대비한 차량 확보 확인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자 안전수칙 숙지여부 확인
	도로교통법 준수를 위한 숙지여부 확인 (자전거는 차에 포함)
	자전거 이용방법, 주행원칙, 교차로 신호 준수방법 숙지여부 확인
	자전거 운전의 수신호 방법 숙지여부 확인
	자전거를 가지고 기차/차량/지하철 등 이동 시 제한사항 등 확인
	활동장소 점검(코스상태 및 기상예보 등) 확인
	참가 청소년의 기본사항(연령, 경험여부, 숙련도 등) 확인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확인
	참가 청소년의 복장상태 및 불필요한 개인소지품 휴대여부 확인
	신체에 맞는 자전거를 탑승하는지 확인 (안장 높이 조절 등)
	당일 기상(우천, 풍속 등) 및 온도 확인
	선두, 후미 담당자 지정(가장 경험이 많은 지도자 배치)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비상연락망 숙지 확인
기타 자전거 정비에 필요한 장비(자전거 수리 비상공구, 펌프 및 펑크패치 등) 보유여부 확인	
활동 중	자전거 길 상태 및 기상변화 확인
	계획대로 활동 지도 중인지 확인
	참가 청소년의 자전거 상태를 수시로 확인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및 이상 유무 확인
	자전거 속도(최대 시속 20km)를 지키며 인솔하고 있는지 확인
	라이딩 1시간(또는 15km) 내외 주행 후 휴식하고 있는지 확인
	휴식 시 자전거 주차 안전관리 확인
(야간 라이딩 시) 전조등과 후미등 장착여부 확인	
활동 후	라이딩 종료 후 참가 청소년의 인원 확인
	참가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개인 별 활동장비 확인 및 회수
	개인 소지품 확인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지도자와 인솔지도자의 지시사항 준수
	자전거 표지판 및 자전거 수신호 숙지 여부 확인
	준비운동을 통해 충분히 몸을 풀었는지 확인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 확인
	참가 청소년의 복장상태 및 불필요한 개인소지품 휴대 여부 확인
	신체에 맞는 자전거를 탑승하는지 확인
	당일 기상(우천, 풍속 등) 및 온도 확인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확인
	기본주행방법 및 안전수칙 숙지 여부 확인
	도로교통법(자전거 관련) 숙지 여부 확인
활동 중	기타 장비(응급구급약품, 자전거 수리 비상공구 등) 확인
	자전거 길 상태 및 기상변화 확인
	자전거 상태를 수시로 확인
	건강상태 및 이상 유무 확인
	이어폰 사용 금지
	자전거 속도(최대 시속 20km)를 지키며 활동 중인지 확인
활동 후	건강상태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당한 휴식시간이 있는지 확인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개인별 활동장비 확인 및 회수
	개인 소지품 확인

2) 모의올림픽

모의올림픽은 주로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숙박형 수련활동 시에 단위프로그램으로서 팀별로 하는 신체활동이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6-11 | 모의올림픽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중 청소년 충돌로 인한 안전사고 ■ 사전 파악하지 못한 요보호 대상자의 안전사고 ■ 음향 및 전기장비의 부하로 인한 화재 사고 ■ 기자재 및 도구 파손으로 인한 상해 발생 ■ 그룹별 활동으로 지나친 경쟁심리 발생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지도자 사전회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공유 - 지도자별 각자 위치 및 업무 안내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 점검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 자연재해 발생 시 지도자 업무 및 대피장소에 대한 공유 ■ 모의올림픽 진행 시 적정인원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올림픽 진행 시 소·중·대집단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적정인원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 ■ 프로그램 전 활동 장소에 대한 사전 위험요소 확인·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소 사전 제거(바닥 이물질, 돌부리 등) - 음향장비 및 사용 기자재의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계절별, 날씨별 상황에 맞는 공동체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사기·흡한기 등 기온을 파악하여 그늘이나 체육관 등 시설 사용 - 우천 시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소년이 알 수 있도록 게시 ■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지도자가 구급낭을 소지하여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맞게 조치 - 위험요소 확인(위험한 장소 및 기자재의 경우 위험표시)
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대상자 확인 및 공유(우리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중 뛰는 활동이 있으므로 사전에 요보호대상자를 파악하여 편성된 지도자와 공유 필요 ■ 활동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주변 지도자에게 요청 후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및 후송 ■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부분에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진행으로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도록 사전 안내 - 청소년 상호 간 안전 규칙 설명(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청소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안전교육 실시 ■ 준비 시 사전 복장 점검 및 운동화 착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당한 복장 착용 - 슬리퍼, 구두 등 이동이 불편한 복장의 경우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안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시 사용 도구에 대한 위험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의올림픽 진행에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해 정확한 사전 안내 - 모의올림픽 진행 시 기자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 시 찰과상 등 간단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경우 자체 구급낭 이용 - 기본 응급처치 후 후송 및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할 시 보건담당자 연락 - 긴박한 경우 선조치(119 신고 등) 후 응급조치 과정 실시 - 후송 필요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동반하여 병원 후송(병원에 사전 통보)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상호 간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 시 안전한 활동 참여 ■ 모의올림픽 진행 시 개별행동 금지, 팀 대표의 인솔에 적극 참여 ■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받은 내용 숙지 및 정해진 규칙준수 ■ 개인질병 체크 후 이상 시 지도자에게 도움 요청 ■ 친구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주위에 도움 요청(지도자) ■ 활동 시 스스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시 지도자에게 도움 요청 ■ 활동 중 자연재해 발생 시 지도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

〈모의올림픽 관련 안전사고사례〉

- 타이어를 묶은 줄 가운데 2개를 선택하여 가져오면 승리하는 게임에서 타이어에 묶인 줄을 가지러 가던 참가자들끼리 서로 이마를 부딪쳐 타박상을 입음
- 4인 5각 릴레이 게임을 하면서 참가자 간에 발이 엉켜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목에 염좌 발생

3) 청소년참여활동(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봉사단 등)

청소년참여활동은 주로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 봉사단 등 다른 청소년활동에 비해 더욱 청소년들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치활동이다. 특히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경우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시설 내에서의 활동 뿐만아니라 타지역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한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및 안전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12 | 청소년참여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응급대처요령 미흡 ■ 비상시 긴급연락체계 미작동 ■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사전인지 부족 ■ 발달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연령 참가자 ■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미흡 ■ 활동내용과 활동시간에 대한 세부사항 미확인 ■ 활동공간 및 장비의 위험에 대한 사전교육 부족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 ■ 외부 활동 시 상해보험 미가입 ■ 참가자 외 대인사고 및 대물 파손 등에 대한 보험 미가입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응급대처요령 및 비상연락망 구축 ■ 비상시 대피로 이용방법 등 사전에 교육 실시 ■ 참가신청서 등에 활동과 연관되어 주의가 필요한 질병 등 특이사항 기재 ■ 활동내용과 발달단계 특성과의 연관성을 고려 ■ 활동 전 과정·장소·장비 및 내용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점검 ■ 외부활동 시 이동경로 및 활동공간에 대한 사전답사 및 점검 ■ 활동의 시작과 마무리에 대한 명확한 설정 및 안내 ■ 활동장비에 대한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활동 시 지도자의 입장지도가 필요한지 확인 ■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범위 등을 확인하며 운영진 및 참가자에 의한 다른 사람과의 사고발생과 대물 파손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등의 보험 추가
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대상자 확인 및 공유(무리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 대체)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호 간 안전규칙 설명 (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에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청소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안전교육 실시 ■ 활동 시 사용 도구에 대한 위험성 안내(책상, 의자 등) ■ 참가 청소년과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수용정원 설정 및 확인 ■ 활동장소 비상대피로 위치 안내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상호 간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 시 안전한 활동 참여 ■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 준수 ■ 비상연락망 숙지 ■ 활동 전 스스로의 몸 상태 체크 후 이상 시 지도자에게 도움요청 ■ 활동 시 안전에 대하여 항상 인지하고 활동에 참여

4) 오리엔티어링(orientteering)

오리엔티어링은 주로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팀별로 수행하는 활동으로 하나의 순례, 탐험, 관찰, 문제 해결, 조사 등의 내용으로 2개팀 이상 편성하여 일정한 코스로 돌아오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6-13 | 오리엔티어링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티어링의 경우 시설 및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여 진행함에 따라 이동 및 낙상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위험 내재 ■ 참가 청소년이 지도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활동을 하게 되어 지도력의 문제가 아닌 참가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가능 ■ 안전사고로 인해 환자발생 시 지도자가 사고발생 장소로 이동까지 많은 시간이 소모(청소년의 신고로 사고 현장 출동) ■ 정해진 시간 내 오리엔티어링을 진행함에 따라 개별 활동으로 전환 ■ 포스트를 찾기 위해 산길 등을 이동함에 곤충, 방향상실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 발생 ■ 그룹별 이동함이 원칙이나 개인적 체력으로 인해 그룹이 나뉘지는 현상 발생 ■ 그룹별 경쟁심리가 강하게 발생함에 상호 간 필요 이상의 견제심리 발생 ■ 프로그램 진행 시 그룹 내 의견 조율 실패로 인한 의견 충돌 ■ 외부 활동 시 상해보험 미가입 ■ 참가자 외 대인사고 및 대물 파손 등에 대한 보험 미가입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지도자 사전 회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공유 - 지도자별 각자 위치 및 업무 안내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 점검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 자연재해 발생 시 지도자 업무 및 대피장소에 대한 공유 ■ 그룹별 적정인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리엔티어링 진행 시 1개 그룹에 3~5명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그룹의 협동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 그룹 간 대결이 아닌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전달 -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점과 그룹별 활동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상호 간 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 ■ 포스트가 진행되는 장소에 대한 사전 위험요소 확인·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이 긴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야기할 위험요소 사전 제거(돌부리, 위험한 기자재 등) - 오리엔티어링 진행 시 인도로 이동하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부득이도로 이동 할 경우 차량이나 자전거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대해 설명 - 포스트에서 포스트로 이동 시 그룹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며 최종 포스트 도착 후 그룹 인원을 체크하여 낙오된 청소년이 없는지 확인 - 파손된 기자재가 없는지 활동물품 사전 점검 ■ 계절별, 날씨별 상황에 맞는 오리엔티어링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혹서기·혹한기 등 기온을 파악하여 복장 점검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에 대해 정확한 설명 및 참가 청소년 교급에 맞는 코스 또는 포스트 운영으로 안전사고 예방 - 우천 시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소년이 알 수 있도록 게시 ■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포스트 또는 위험지대 포스트에는 지도자가 배치되어 참가 청소년의 안전 확보 - 위험요소 확인(위험한 장소 및 기자재의 경우 위험표시) ■ 외부장소 이용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보장 범위 등을 확인하며 운영진 및 참가자에 의한 다른 사람과의 사고발생 및 대물 파손 등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등의 보험 추가
<p>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대상자 확인 및 공유(활동 참가에 무리가 있을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뛰는 활동이 포함됨에 따라 사전에 요보호대상자를 파악하여 지도자와 공유 ■ 활동 중 부상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응급처치 및 주변 지도자에게 도움 요청 ■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맞는 청소년활동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부분에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진행으로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도록 사전 안내 - 청소년 상호 간 안전 규칙 설명(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에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청소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안전교육 실시 ■ 준비 시 사전 복장 점검 및 운동화 착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활동으로 인해 곤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당한 복장 착용 - 슬리퍼, 구두 등 이동이 불편한 복장의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안내 ■ 활동 시 포스트에 대한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 위치에 대해 정확한 사전 안내 및 다른 곳으로 이동금지 - 포스트 활동 진행 시 기자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 시 찰과상 등 간단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경우 자체 구급낭 이용 - 기본 응급처치 후 후송 및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할 시 보건담당자 연락 - 긴박한 경우 선조치(119 신고 등) 후 응급조치 과정 실시 - 후송 필요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동반하여 병원 후송(병원에 사전 통보)
<p>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저장 ■ 오리엔티어링 진행 시 모든 그룹을 지도자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룹 내 2~3명은 환자 옆에서 심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1~2명은 근처 지도자를 찾아서 도움 요청 ■ 오리엔티어링 과정 중에는 활동장소를 절대 벗어나지 않으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치 파악 ■ 참가자 상호 간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 시 상호 간에 안전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 포스트 진행 시 개별행동을 금하고 팀장의 지시에 적극 참여하며 팀장은 팀원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적극적인 청소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진행 ■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을 준수 ■ 활동 시 스스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시 지도자에게 도움 요청 ■ 친구 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툼 발생 시 주위에 도움 요청(지도자)

〈오리엔티어링 관련 안전사고 사례〉

- 야간에 포스트를 이동하면서 불규칙한 길에 넘어지면서 손바닥이 찢어져 봉합수술을 함
- 포스트 과제 해결 중 주변에 있던 벌에 쏘임
- 야간 오리엔티어링 중 이동코스를 찾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려 활동 코스를 벗어남

5) 야영활동

야영활동은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팀별로 텐트를 치고 1박 2일 이상 청소년들이 직접 취사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및 안전 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6-14 | 야영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트 및 모닥불, 취사 관련 화재 ■ 야외활동 중 찰과상 및 타박상, 저체온증 ■ 야간 활동 중 염좌 및 골절 ■ 조리 시 사용되는 칼, 가위로 인한 찰과상 ■ 식자재 보관 및 조리 등으로 인한 식중독 ■ 개인 질병 및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 - 집중호우, 사태(눈, 산), 강풍, 산불 ■ 독버섯, 산나물 섭취로 인한 중독 ■ 뱀, 해충에 물릴 가능성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 안전, 화재 예방 사전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에 필요한 장비 및 텐트의 구조, 관리방법 지도 - 야영장 시설 및 장비를 파손하거나 훼손하지 않게 지도 - 지정된 야영장 이외 장소는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 - 취사장 이용 시 화기 및 조리도구 사용에 대한 지도 - 소화기 배치 장소 확인 - 식사 시간 후 세면장, 교육장, 주변 청결 유지를 위한 지도 - 텐트 고정줄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안전표지 부착 - 침수, 유실, 고립, 산사태, 낙석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에 숙영지 배치 - 시설배치도, 이용방법, 비상 시 행동요령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임시대피소 장소 확인 및 비상시 야영장지에서 대피시설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비상조명설비 또는 기구 확보 ■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발생, 환자 발생 시 담당 선생님께 즉시 보고 - 이동로, 대피소 파악 - 대피시설까지 이동할 수 있는 비상조명 설비 기구 확보
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장소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지도자 배치 ■ 이용시설의 사전답사를 통한 취약점·문제점 분석 및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석, 강가 등 위험요소 파악 후 조치 마련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수칙에 대한 사전교육 및 안전사고 대비요령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텐트 내에서는 버너, 화기류를 사용하지 않도록 전달 - 이동로, 대피로 전달 - 텐트 고정줄 안전표지판 부착 또는 표식 - 야영장 내 소화기 배치 - 화재나 환자 발생 시 담당 지도자에게 즉시 보고 ■ 참여 인원 및 야영환경에 따른 숙영지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닥은 평평하고, 암벽이나 언덕이 없는 곳에 텐트 설치 ■ 야영 시설 및 장비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영장 주변 시설, 텐트, 고정팩, 고정줄 등 ■ 안전대책 및 응급체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송담당자, 참가자나 보호자 연락처, 비상연락 병원 - 응급환자, 신체 허약자를 파악하여 적절한 사전 조치 마련 - 야영장 내 의료함, 의약품 배치 ■ 기상변화에 따른 상황별 대처법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가 올 것을 대비해 텐트 주변 배수로 확보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 흡연,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 ■ 야영활동 시 시간엄수 및 개인행동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의 허락 없이 숙영지를 이탈하지 않으며, 뛰지 않도록 지도 - 외출 시 담당 지도자에게 보고 - 야간활동 종료 후 돌아다니는 행위 금지 ■ 야영장 주변에서 산나물, 버섯을 채취하여 먹지 않도록 지도 ■ 슬리퍼 또는 맨발로 야영장을 다니지 않으며, 독충과 뱀 등 동물에 대한 주의 지도 ■ 계곡물에 화학성분 세제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 ■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 행하며, 사용한 부탄가스통은 분리하여 배출 ■ 식중독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은 변질하거나 상하지 않도록 보관 - 변질된 음식물은 먹지 않도록 지도

〈야영활동 관련 안전사고사례〉

- 캠핑 중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위를 이기고자 밀폐된 텐트 안에서 갈탄을 이용해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다 가스 중독이 됨
- 야간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텐트 밖으로 나오면서 텐트를 고정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줄(스트링)에 얼굴을 부딪쳐 찰과상을 입음
- 음식을 조리하는 도중 휴대용 가스버너가 과열되면서 폭발사고 화상 입음

6) 박람회/축제 (공연 비포함)

박람회와 축제는 다른 청소년활동에 비해 대규모로 운영되고, 수많은 청소년과 지도자가 함께 오랫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청소년 및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및 안전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6-15 | 박람회/축제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대처요령 미흡 ■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미흡 ■ 요보호 참가자에 대한 대처 미흡 ■ 행사장 정원을 초과하는 참가자 인원수 ■ 지도자, 자원지도자, 보조지도자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 ■ 대규모 인원의 참가에 따른 충돌 및 압사 ■ 비, 눈,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안전사고 ■ 사고 시 보험처리 등에 대한 대책 미흡 ■ 행사장 접근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에 의한 사고 ■ 난간, 통풍구, 하수구 등 취약장소로 추락사고 ■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에 대한 사전 점검 미 실시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 응급대처요령 및 대피로 이용방법, 비상연락망 등 숙지 ■ 행사 시작 전 안전에 대한 환기 및 교육 실시 ■ 요보호 참가자에 대한 사전 인지 및 지도 ■ 안전책임자와 담당자를 선임하여 지정 ■ 행사장의 수용정원을 고려하여 참가자 조절 및 통제 ■ 타 기관이나 학교 연계 시 연계기관 및 학교의 안전관리자 선임 등 역할 분배 ■ 행사 시작 전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 교통통제와 질서유지는 경찰서 협조요청 ■ 의료지원 및 화재방재 등은 보건소, 소방서 등과 협조 ■ 해당 행사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가입 ■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 ■ 동일 장소 혹은 유사한 사업의 모니터링 실시 ■ 안전인력을 취약지점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에 배치 ■ 우천,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 행사진행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
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대상자 확인 및 공유(우리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 대체)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호 간 안전규칙 설명 (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에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청소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안전교육 실시 ■ 활동 시 사용 도구에 대한 위험성 안내 ■ 활동공간에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 참가 청소년과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수용정원 설정 및 확인 ■ 비상대피로 위치 안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상호 간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 시 안전한 활동 참여 ■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 준수 ■ 활동 전 스스로의 몸 상태 체크 후 이상 시 지도자에게 도움요청 ■ 친구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주위에 도움 요청(지도자) ■ 활동 시 안전에 대하여 항상 인지하고 활동에 참여 ■ 비상연락망 및 비상대피로, 집결지 숙지 등

| 표 6-16 | 박람회/축제 운영 시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행사장에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 부착	
	행사 시작 전 안전과 관련된 주의사항 등 교육 실시	
	사전 현장답사 등을 통해 위험요소 확인 및 대응	
	동일 장소 혹은 유사한 사업의 모니터링 실시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부착	
	난간, 통풍구, 하수구 등 안전장치 및 안전경고문구 부착	
	안전책임자와 담당자 지정 여부 확인	
	비상시 대피안내도 제시	
활동환경	비상시 안내유도등 부착 및 작동 여부 확인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	
	행사의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우천, 폭염 등 기상상황에 따른 대처방안 마련	
활동지도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행사장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취약지점 및 유동인구가 많은 자리에 안전인력 배치	
	활동 시 지도자의 임장지도가 필요한 지 확인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7) 모닥불 놀이(캠프파이어)

모닥불 놀이(캠프파이어)는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야간에 전원이 등그렇게 둘러앉고 그 안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다짐의 시간 등을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 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6-17 | 모닥불 놀이(캠프파이어)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화덕 근처 접근으로 인한 열화상 ■ 모닥불 놀이 중 강풍·불장난으로 인한 산불발생 ■ 활동 장소 위험요소(빗물 고임, 화상, 바람, 시설, 바닥 이물질 등)로 인한 안전사고 ■ 지나친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부딪힘, 찰과상, 무대 낙상 등) ■ 모닥불 놀이 후 잔불로 인한 화재 발생 ■ 과도하게 높은 미디어 볼륨으로 인한 청력 이상 ■ 활동 중 타인과 부딪힘, 넘어짐 등 상해사고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지도자 사전회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공유 - 지도자별 각자의 위치 및 업무 안내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 점검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 자연재해 발생 시 지도자 업무 및 대피장소에 대한 공유 ■ 모닥불 놀이 주변 시 강풍으로 인한 산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닥불 놀이 진행 중 산불 발생 시 메인 지도자의 유도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대운동장 등) 대피하고 보조지도자의 경우 초동조치 및 신속한 신고 - 대운동장 등으로 이동 후 청소년 인원 파악 및 후속 조치 시행 ■ 활동 장소 위험요소(빗물 고임, 화상, 바람, 시설, 바닥이물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덕 주변 지도자 배치 및 안전선 연결로 사고 예방 - 사전 세팅 시 활동장 확인으로 위험요소 제거 및 소화기 등 안전용품 비치 확인 - 전선 노출 및 기타 감전사고 요소 파악 ■ 지나친 움직임으로 인한 부상(부딪힘, 찰과상, 무대 낙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전 안전교육 실시 - 안전관리 업무 지도자 청소년 계속 주시 ■ 계절별, 날씨별 상황에 맞는 모닥불 놀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혹서기·혹한기 등 기온을 파악하여 사전 대체 프로그램 진행 전파 - 진행 전 바람의 방향 및 풍속 파악으로 진행 여부 결정 - 산불 주의 기간 중 진행 자제 - 우천 시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소년이 알 수 있도록 게시 ■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향실 또는 모닥불 주변에 구급낭 비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상황에 조치 - 적절한 음향 볼륨 유지를 통해 청소년의 청력이상 예방 - 위험요소 확인(모닥불 주변, 맨홀위치 등) 및 위험표시
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대상자 확인 및 공유(무리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관람대에서 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이용하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요보호대상자를 파악하여 진행 지도자와 공유

구분	내용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지도자 회의를 통한 진행 지도자에 대해 세부 업무분장 실시 ■ 활동 중 부상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주변 지도자에게 요청 후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및 후송 ■ 프로그램 운영 매뉴얼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부분에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진행으로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도록 사전 안내 - 청소년 상호 간 안전 규칙 설명(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에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준비 시 사전 복장 점검 및 운동화 착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당한 복장 착용 - 슬리퍼, 구두 등 이동이 불편한 복장의 경우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안내 ■ 화재 위험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덕 및 모닥불 불씨가 옮겨붙을 위험성이 있어 모닥불 놀이 시작 전 정확한 사전 안내 - 점화식 진행 시 과도한 퍼포먼스 통제로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 - 모닥불 놀이 종료 후 철저한 잔불제거를 통한 화재 예방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 시 초과상 등 간단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경우 자체 구급낭 이용 - 기본 응급처치 후 후송 및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할 시 보건담당자 연락 - 긴박한 경우 선조치(119 신고 등) 후 응급조치 과정 실시 - 후송 필요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동반하여 병원 후송(병원에 사전 통보)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상호 간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 시 안전한 활동 참여 ■ 개별행동을 금하고 팀장의 인솔에 적극 참여 ■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받은 내용 숙지 ■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 준수 ■ 활동 시 스스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시 지도자에게 도움 요청 ■ 친구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주위에 도움 요청(지도자)

〈모닥불 놀이(캠프파이어) 관련 안전사고사례〉

- 친구와 함께하는 짝 게임 진행 중 다른 참가자와 부딪히면서 앞니 1/2 부러짐
- 모닥불 놀이 중 갑작스러운 돌풍으로 화덕의 불티가 수풀에 옮겨붙어 화재 발생
- 폭죽 고정틀이 발사와 함께 충격으로 흔들려 참가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폭죽이 날아옴

8) 공동체 활동

공동체 활동은 청소년활동이 주로 팀별로 이루어지는 집단활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지침을 따르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사례는 다음과 같다.

표 6-18 | 공동체 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집단 활동으로 그룹별 이동이 잦아 안전사고 발생 ■ 대집단 활동 중 도구 사용으로 참가 청소년의 안전사고 발생 ■ 참여인원 대비 적절한 수의 지도자 미배치 ■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부하로 인한 화재 ■ 반별 활동으로 인해 지나친 경쟁심리 발생
안전사고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지도자 사전 회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공유 - 지도자별 각자의 위치 및 업무 안내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 점검 -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사전 공유를 통한 안전관리 - 자연재해 발생 시 지도자 업무 및 대피장소에 대한 공유 ■ 포스트별 적정인원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별 공동체 활동 진행 시 3개 이상의 반이 겹치지 않도록 로테이션으로 운영 - 각 포스트는 반별 대결이 아닌 목표 달성이 목적임을 명확히 전달 - 30~40명의 청소년이 공동으로 진행되므로 안전 규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 ■ 포스트가 진행되는 장소에 대한 사전 위험요소 확인·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선이 긴 활동으로 안전사고를 야기될 수 있는 위험요소 사전 제거(돌부리, 위험한 기자재 등) - 청소년 이동 시 첫 포스트까지는 지도자가 2열로 인솔, 포스트 진행 중 그룹별 이동 시에는 팀장이 인솔하여 도로가 아닌 인도로 이동 - 포스트 이동 시 그룹에서 이탈하지 말고 도착 후 대상 인원을 체크하여 낙오된 청소년이 없는지 확인 - 파손된 기자재가 없는지 활동 물품 사전 점검 ■ 계절별, 날씨별 상황에 맞는 공동체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혹서기·혹한기 등 기온을 파악하여 사전 실내·외 진행 통보 - 우천 시를 대비하여 대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청소년이 알 수 있도록 게시(혹은 사전 안내) ■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트별 구급낭 비치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상황에 맞게 조치 - 위험요소 확인(위험한 장소 및 기자재의 경우 위험표시)
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대상자 확인 및 공유(우리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 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중 뛰는 활동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요보호대상자를 파악하여 편성된 지도자와 공유 필요 ■ 활동 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매뉴얼에 따라 주변 지도자에게 요청 후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및 후송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입 부분에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진행으로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 활동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도록 사전 안내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활동 시작 전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자연스러운 분위기 형성 - 청소년 상호 간 안전 규칙 설명(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청소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안전교육 실시 ■ 준비 시 사전 복장 점검 및 운동화 착용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당한 복장 착용 - 슬리퍼, 구두 등 이동이 불편한 복장의 경우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안내 ■ 활동 시 사용 도구에 대한 위험성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활동 시 운영되는 기자재에 대해 포스트 운영 전 정확한 사전 안내 - 포스트 활동 진행 시 기자재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 시 찰과상 등 간단한 응급조치가 가능한 경우 자체 구급낭 이용 - 기본 응급처치 후 후송 및 전문 의료인의 처치가 필요할 시 보건담당자 연락 - 긴박한 경우 선조치(119 신고 등) 후 응급조치 과정 및 보고체계 실시 - 후송 필요시 보호자 또는 인솔자와 동반하여 병원 후송 (병원에 사전 통보)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상호 간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 시 안전한 활동 참여 ■ 개별행동을 금하고 팀장의 인솔에 적극 참여 ■ 사전 오리엔테이션에서 교육받은 내용 숙지 ■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 준수 ■ 활동 시 스스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필요시 지도자에게 도움 요청 ■ 친구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주위에 도움 요청(지도자)

〈공동체 활동 관련 안전사고 사례〉

- 참가자들이 줄을 이용해 균형을 맞춰 세운 사다리를 넘어가는 활동을 하던 중 줄을 잡은 상태에서 흔들리는 장난을 치면서 사다리를 넘어가던 참가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좌측 뒤꿈치가 골절됨
- 나무를 이용해 계단을 만들고 다른 참가자가 밟으면서 통과하는 활동 중 참가자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잡고 있던 나무를 놓치면서 좌측 중족골이 골절됨

9) 진로체험활동

진로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직업 및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활동으로 진로심리검사를 비롯하여 일터방문, 직업인 인터뷰 및 초청특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험하는 활동이다. 이 활동에서의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사항 및 안전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 6-19 | 진로체험활동 운영 시 안전관리

구분	내용
위험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시에 대처요령 미흡 ■ 안전에 대한 사전교육 미흡 ■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미확인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및 위생장비의 수량 부족 ■ 동시에 여러 곳에서 진행되는 진로체험활동 ■ 진로체험 현장으로 운송수단을 이용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 ■ 여러 집단이 견학할 경우 집단 간의 시비 발생 ■ 출입문 개폐 시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 개인별 부주의한 행동에 의한 사고 ■ 난간, 창문 등 안전장치 미흡 ■ 사고 시 손해배상 보험의 미가입
안전사고 예방법	*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체험활동 유형별로 표 하단 별도 기재
청소년지도자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보호대상자 확인 및 공유 (무리가 있는 참가자의 경우 프로그램 대체) ■ 프로그램 운영매뉴얼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상호 간 안전규칙 설명 (상호 간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 안전사고에 발생에 대비하여 주의사항 전달 - 청소년에게 익숙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안전교육 실시 ■ 참가 청소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안전교육 ■ 활동 시 사용도구에 대한 위험성 안내 ■ 활동공간에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 점검 ■ 참가 청소년과 활동내용을 고려하여 수용정원 설정 및 확인 ■ 비상대피로 및 비상연락망 안내 ■ 보건실 위치 안내 및 위급상황 시 대처요령 안내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 상호 간 주의를 필요로 하는 활동 시 안전한 활동 참여 ■ 참가자 상호 간 정해진 규칙준수 ■ 비상대피로, 보건실 위치, 비상연락망 등 숙지 ■ 활동 전 스스로의 몸 상태 체크 후 이상 시 지도자에게 도움요청 ■ 친구 간 다툼이 발생할 경우 주위에 도움 요청(지도자) ■ 활동 시 안전에 대하여 항상 인지하고 활동에 참여

표 6-20 | 진로체험활동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법

구분	내용
현장직업 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터 발굴 시 직업체험이 청소년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지 확인 ■ 활동 시 안전에 필요한 장비가 참가 청소년의 수만큼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 ■ 위생과 안전과 관련된 위생모, 위생마스크, 앞치마, 장갑, 장화 등 복장과 관련된 수량 및 지급 확인 ■ 사전에 일터를 방문하여 안전과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 ■ 해당 사업장이 상해 시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고위험군 직업체험활동은 일터 발굴 시 가급적 배제 ■ 청소년들이 체험을 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통해 체험장을 확인하도록 지도 ■ 동일한 시간에 여러 체험장에서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 필요 ■ 여러 체험장의 운영 시 종합상황을 파악하고 조정할 수 있는 본부 운영 ■ 청소년들이 개별로 체험장을 찾아갈 것인지, 지도자의 인솔하에 이동 할 것인지 선택하고, 유형 별 안전계획 수립 필요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일터 멘토들에게 청소년에 대한 지도방법 등 안내(강압적 언어, 성희롱 발언, 신체폭력 등) ■ 학교와 연계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사고 시 보상처리하며, 청소년 수련시설 및 기관에서 진행 시 별도의 청소년활동보험 가입 ■ 활동 과정에서 응급한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해서 인솔자, 지도자, 교사 등의 연락처 제공 및 관계자 등 비상연락망 구축 ■ 요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사전고지 ■ 청소년의 출결사항 등에 대한 파악 및 확인체계 구축
직업실무 체험형 /학과체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단체로 출발할 경우, 학교에서 체험장까지의 이동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학교에서 단체차량으로 이동 시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 ■ 학교 이외의 기관이나 단체 등은 인솔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체험장에서 직업군별 체험을 실시하기 전 안전교육 실시 ■ 체험장의 수용정원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관리 ■ 체험장 및 이동 시 배상책임보험 등 사고 시 처리에 대한 행정적 기준 수립
현장견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단체로 출발할 경우, 학교에서 체험장까지의 이동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학교에서 단체차량으로 이동 시 차량이동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 ■ 견학현장에 도착 후 견학일정에 대한 공지 및 안전교육 실시 ■ 수시로 참가 청소년의 인원파악 실시 ■ 견학현장의 시설물이나 장비 등을 만지거나 동작시키지 않도록 주의 ■ 견학장소에 청소년들이 견학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안내가 전파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 같은 견학장소에 여러 단체가 견학을 경우 집단 간의 시비 등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 견학장소 및 이동 시 배상책임보험 등 사고 시 처리에 대한 행정적 기준 수립

진로체험의 유형4)

구분	주요내용
현장 직업 체험	일터(직업현장)를 방문하여 실제 업무 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의 직업체험 활동을 전체 활동 시간의 50% 이상 수행한 경우
직업 실무 체험	모의 일터에서 직업체험 활동(4시간 이상) 중 실제 업무 체험 및 멘토 인터뷰 등을 전체 활동 시간의 50% 이상 수행한 경우 가급적 공공기관 및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활용
현장 견학	일터(작업장), 직업관련 홍보관, 기업체 등을 방문하여 생산공정 등을 견학하는 경우
학과 체험	특성화고, 대학교(원)을 방문하여 실습, 견학, 강의 등을 통해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학습한 경우. 고입·대입 진학(학교) 설명회는 포함되지 않음
진로 캠프	특정 장소에서 진로심리검사·직업체험·상담·멘토링·특강 등의 종합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6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운영한 경우
직업인초청 활용	각 분야의 직업인을 초청하여 멘토링 강연을 통해 직업과 인생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경우 - 대화형 : 멘토 1인당 학급 단위(40명) 이내 규모의 활동 - 강연형 : 멘토 1인당 학급 단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활동

4) 출처: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1877. 진로체험 유형분류기준. 검색일: 2014.5.27.

| 표 6-21 | 진로체험활동 운영 시 안전 확인 사항

구분	점검사항	확인
사전안내	활동 시 주의사항 및 사고 시 대처사항 안내	
	외부 활동에 참여 시 사전안전 교육 실시	
	버스 등 운송수단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	
	안전사고 후 긴급연락처 및 보건실 등에 대한 안내문 제공	
활동환경	출입문의 개폐 시 손이 끼이거나 부상당할 위험 확인	
	비상시 안내유도 등은 부착 및 작동여부	
	소화기는 지정된 장소에 비치되었는지, 작동은 잘 되는지 확인	
	직업체험의 내용 중 고위험활동이 있는지 확인	
	작업대의 위치와 높이 등이 참여청소년의 연령대에 적합한지 확인	
	위생모, 마스크 등 위생안전과 관련된 장비가 지급되는지 확인	
	현장 견학 시 이동경로에 안전사고 요인 및 보험보장 사항 확인	
활동지도	요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	
	활동내용과 시설의 규모에 적절한 인원이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견학과정에서 다른 집단과 마주칠 경우에 대한 대비요령	
	여러 곳에서 실시되는 진로체험을 위한 중앙본부의 설치	
	활동 시 지도자의 임장지도가 필요한지 확인	
	안전사고 없이 활동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03 위험도가 높은 활동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청소년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법(「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규정한 활동으로 수상활동, 항공활동, 산악활동, 장거리 활동 등의 영역에 여러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모든 청소년활동 운영 시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위험도가 높은 활동’인 경우, 전문지도자의 전문성 수준과 배치기준, 안전 체크리스트 등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활동(「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2호 관련 [별표 7])

구분	프로그램
수상활동	래프팅,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중스쿠터, 레저용 공기부양정,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스킨스쿠버
항공활동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산악활동	암벽타기(자연암벽, 빙벽), 산악스키, 야간등산(4시간 이상의 경우만 해당한다)
장거리걷기 활동	10Km 이상 도보이동
그 밖의 활동	유해성 물질(발화성, 부식성, 독성 또는 환경유해성 등), 하강레포츠, ATV탑승 등 사고위험이 높은 물질·기구·장비 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청소년수련활동

1) 래프팅 활동

고무, 하이팔론, PVC 등의 재질로 제작된 수상레저기구에 여러 명이 탑승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활동을 말한다.

• 활동의 법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근거한 수상레저활동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수상레저사업자의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래프팅가이드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 전문지도자가 소속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전문지도자가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지도자 배치	- 래프팅 보트당 1명 (래프팅 관련 자격증 소지)	

〈래프팅 활동 관련 안전사고 사례〉

- 패들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활동에 사용하던 중 참가자 간 물장난을 하여 서로 찰리거나 베이는 경우
- 활동 중 참가자 간 장난으로 물에 빠져 보트 밑으로 빠지는 경우
※ 보트의 밑으로 빠질 경우 익수자는 재빨리 보트 밖으로 나와야 함

〈래프팅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점검일 :

확인자	책임자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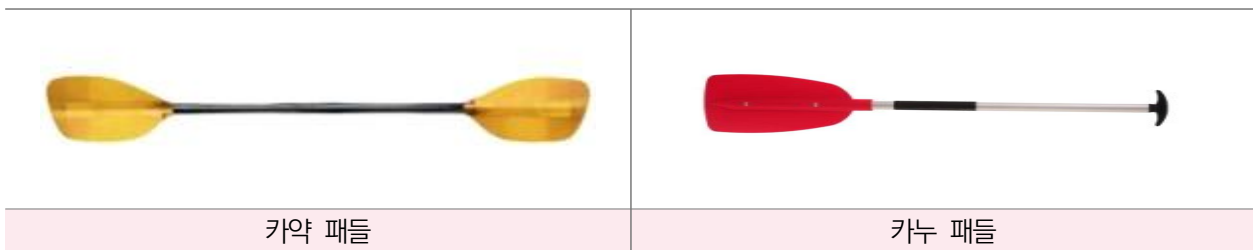
- 래프팅 보트



- PVC, 하이팔론, 천연 및 합성고무 재질로 제작된 보트
- 고무원단을 본드로 접합하여 제작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튜브형태로 선체를 구성
- 가볍고 제작과 수리가 용이함
-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파손, 열이나 자외선에 의한 소재의 변질 우려가 높아 사용 후 세척과 보관이 중요
- 보트, 카약, 카누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 사용됨
- * 카약 : 양패들(양쪽 블레이드) 사용
- * 카누 : 외패들(한쪽 블레이드) 사용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관할관청 관리번호 확인				
외관 파손 및 찢어짐				
선체 공기 누출 여부(비눗물 검사)				
적정 공기압 유지 여부(제작자 매뉴얼 참고)				
공기 주입구 상태(파손 및 공기누출 여부)				
안전 손잡이 및 안전로프 고정상태				
의자 및 등받이 상태				
노걸이 상태(이탈 및 흔들림 없음)				
선수 및 선미 견인고리 상태(이탈 및 흔들림 없음)				
계선로프 상태(부식 및 파단 여부)				
관할단체 등록여부 확인 (내수면 : 해당 지자체에 등록)				
발걸이 상태 이상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물품 보유 여부 - 구명튜브 또는 드로우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튜브 :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기구에는 탑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갖추어야 하며, 구명줄 지름 6mm 이상, 길이 20m 이상이어야 함 • 구명줄 :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에는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예비용 노 : 노를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 하는 수 - 통신 장비 : 래프팅 보트당 1기 				

- 노 (pad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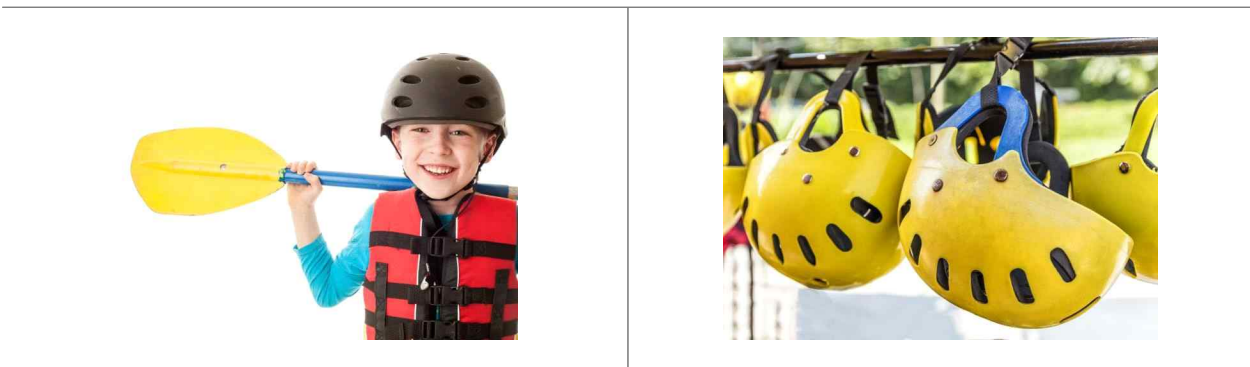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외관 상태 확인(파손, 부식 여부)				
블레이드 부분 파손 여부				
블레이드와 손잡이 결합상태				
노의 목 부분 휘임 여부				
내부 침수 확인				

- 구명조끼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버클, 조임줄, 생명끈 이상 유무				
부력재 이상 유무				
안전인증 제품 여부 ※ KC 마크 등 확인				
구명조끼 외관 이상 유무(변색, 탈색 등)				
구명조끼 부력확인				
재봉선 이상 여부 확인				
자켓 찢김 유무 확인				
참가자 인원수 대비 110% 이상의 수량 확보 확인 (참여 연령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이즈 확보)				

- 헬멧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헬멧 내·외부 파손 여부				
턱끈 및 버클 파손 여부				
청각 확보 여부				
안전인증 제품 여부 ※ KC 마크 등 확인				

- 풋펌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호스 및 펌프 파손 여부				
펌프기능 정상 수행 여부				
어댑터 체결 상태 정상 여부				

- 자동심장충격기(AED)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AED 전원을 켰을 때 안내 멘트가 나오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LED 상태 알람창이 "0"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가 충분한지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매뉴얼을 갖추었는지 확인				
패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 확인				
정기점검표 확인				

• 활동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승선장 접근 용이성 및 상태				
비상시 대피장소 적절성(폭염, 비, 바람, 호우, 급우 등에 대비 가능)				
유사시 응급차량 접근의 용이성				
출발장소와 도착장소의 편의시설 구비 및 위생상태(화장실, 급수시설, 샤워장, 소지품 보관시설 등)				
래프팅 코스 전반적인 지형 파악과 급류 형성지, 장애물 현황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 확인				
관련 법령에 따른 활동장 인가 여부				
우천 시, 우천 직후 많은 수량으로 인한 장애물 유입 현황				
유량 및 유속의 적정성(하천점용허가증 등 관계기관의 허가서 등으로 같음 가능)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래프팅 코스 전반적인 지형 파악과 급류 형성지 장애물 현황
	당일 기상(우천 시 예상 강우량 확인) 및 수온
	참가자 특징 파악 (인원, 요보호자 등)
	래프팅 코스의 현재 유속과 수량
	우천 시, 우천 직후 많은 수량으로 인한 장애물 유입 현황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비상연락망 숙지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응급장비, 래스큐 백 등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숙지
활동 중	수상 상태 및 기상변화
	구명조끼 상태, 헬멧상태 등 확인
	활동 진행 상태 및 참가자 참여 분위기별 대처
	참가자 건강 상태별 대처
	래프팅 보트 공기압 확인
	래프팅 활동 코스 유속 및 수량의 변화 대처
활동 후	참가자 건강상태 및 이상 유무 확인과 조치방법
	활동 종료 후 인원 파악
	참가자 건강 상태별 대처방안

구분	확인내용
	부상자 발생 시 대처방안과 인적사항·사고경위 확인방법
	개인별 활동장비 확인 및 회수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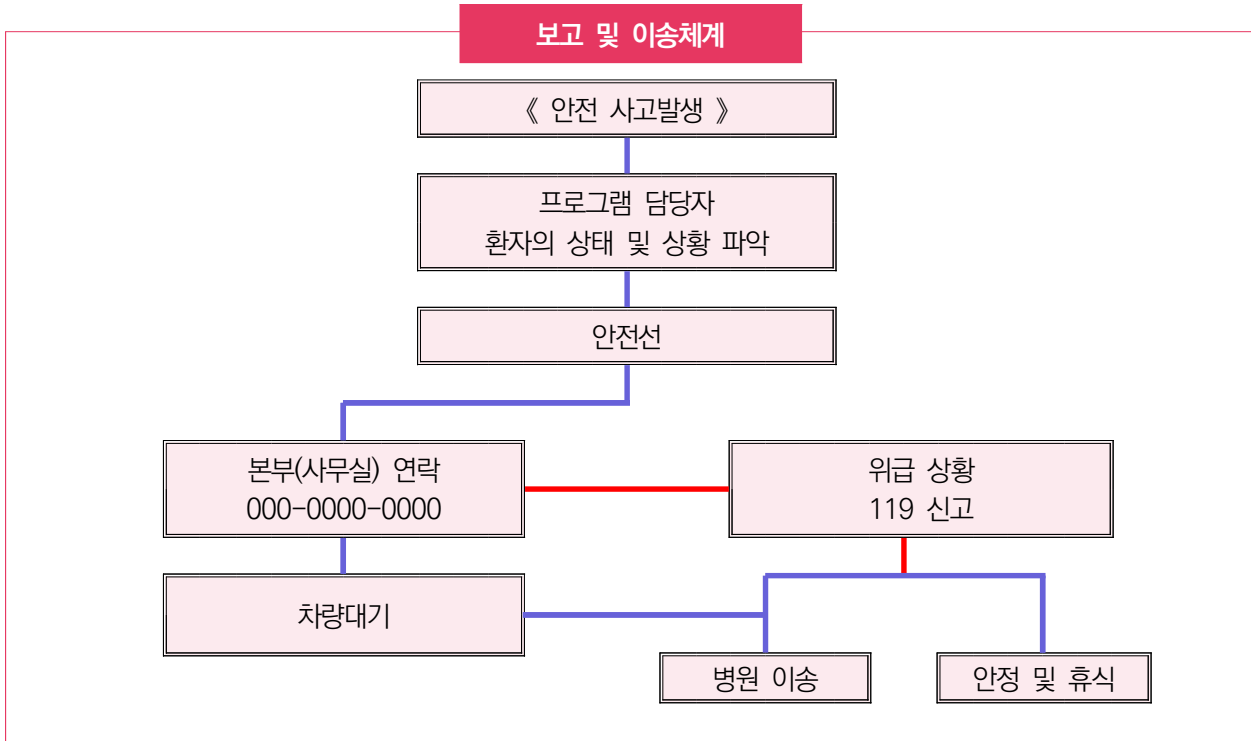
확인내용
자신의 건강상태 파악 및 이상 시 지도자에게 알림
구명조끼 착용 및 이상 유무 확인 방법
패들링 중 충격에 의한 상처발생 시 대처방법
활동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보트 전복, 물에 빠졌을 때 등)

활동 중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급류통과
 - 보트 간의 거리는 30m 이상을 유지
 - 2대의 보트가 동시에 내려가서는 안 됨

- 청소년이 물에 빠져 떠내려감
 - 지도자의 대처
 - 레스큐 백이나 구명환 등의 구조장비를 활용하여 구조
 - 구조가 불가능할 경우 본부 및 주변의 보트에게 도움을 요청
 - 청소년의 대처
 - 물속의 거친 바위 등에 의한 부상우려가 있으므로 다리와 발에 힘을 주지 말아야 함
 - 폭포나 낙차가 심한 급류를 만날 경우 두 팔로 두 다리를 감싸고 구르기 자세를 취하여 통과하도록 함(역류현상 대비)

- 심정지 환자 발생
 - 의식확인 및 119 신고
 - 응급차량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 그림 2-1 | 래프팅 활동의 보고 및 이송체계

2) 고무보트 활동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수상에서 즐기는 활동으로 카누, 카약, 조정, 패들링 노보트 등이 이에 속한다. (단,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2호의 래프팅과는 다름)

- 활동의 법적 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근거한 수상레저활동
- 활동장 구분에 따라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등을 함께 고려하여 운영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래프팅가이드 - 「수상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 인증수련활동 운영기관에 전문지도자가 소속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전문 지도자가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	
지도자 배치	- 해수면(바다)에서 실시할 경우 참가 청소년 10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30%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 소지해야 함 - 내수면(강, 호수, 저수지 등)에서 실시할 경우 참가 청소년 15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중 30%가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자격 소지해야 함	

〈고무보트 활동 관련 안전사고사례〉

- 패들이 파손되어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으나 이를 활동에 사용하던 중 참가자 간 물장난을 하여 서로 찰리거나 베이는 경우
- 활동 중 참가자 간 장난으로 물에 빠져 보트 밑으로 빠지는 경우
 ※보트의 밑으로 빠질 경우 익수자는 재빨리 보트 밖으로 나와야 함

〈 고무보트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FRP 보트



-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의 보트로 견고하고 내구성이 높음
- 카약, 카누, 조정, 드래곤 보트 등 경기를 위한 보트제작에 사용
- 선체가 무겁고 제작과 수리가 어려움
- 접합부위나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워 부상의 위험이 있음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선체 파손 여부				
선체 구조의 변형				
선체 외부의 탈색 여부				
선체 누수 여부				
선체 적합 부위 및 마감처리 부분박리 여부				
모서리 부위 관리상태 (날카롭지 않아야 함)				
선수 및 선미 견인고리 상태 (이탈 및 흔들림 없음)				
관할단체 등록 여부 확인 (내수면 : 해당 지자체, 해수면 : 해양경찰)				
■ 구호물품 보유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튜브 또는 드로우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튜브 :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기구에는 탑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갖추어야 하며, 구명줄 지름 6mm 이상, 길이 20m 이상이어야 함 • 구명줄 : 탑승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에는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예비용 노 : 노를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 				

- 고무보트



- PVC, 하이팔론, 천연 및 합성고무 재질로 제작된 보트
- 고무원단을 본드로 접합하여 제작하고, 공기를 주입하여 튜브형태로 선체를 구성
- 가볍고 제작과 수리가 용이함
-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파손, 열이나 자외선에 의한 소재의 변질 우려가 높아 사용 후 세척과 보관이 중요
- 보트, 카약, 카누 등 다양한 종류로 제작 사용됨
- * 카약 : 양패들(양쪽 블레이드) 사용
- * 카누 : 외패들(한쪽 블레이드) 사용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관할관청 관리번호 확인				
외관 파손 및 찢어짐				
선체 공기누출 여부(비눗물 검사)				
적정 공기압 유지 여부(제작자 매뉴얼 참고)				
공기 주입구 상태(파손 및 공기누출 여부)				
안전손잡이 및 안전로프 고정상태				
의자 및 등받이 상태				
노걸이 상태(이탈 및 흔들림 없음)				
선수 및 선미 견인고리 상태(이탈 및 흔들림 없음)				
계선로프 상태(부식 및 파단 여부)				
관할단체 등록 여부 확인 (내수면 : 해당 지자체에 등록)				
발걸이 상태 이상 유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호물품 보유 여부 - 구명튜브 또는 드로우 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명튜브 :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기구에는 탑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만큼 갖추어야 하며, 구명줄 지름 6mm 이상, 길이 20m 이상이어야 함 • 구명줄 :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기구에는 지름 10mm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예비용 노 : 노를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 하는 수 - 통신 장비 : 래프팅 보트당 1기 				

- 수상구조선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 활동장의 순시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사용
- 활동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탑승정원 3명 이상, 속도가 시속 20노트 이상이어야 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관할관청 등록 여부				
외관 상태(선체 파손 여부)				
선수 선미 계류줄 상태(단,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제외)				
방현재(휠더) 상태				
구조정 깃발부착 및 상태(단,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제외)				
안전손잡이 및 안전로프 고정 상태				
의자 및 등받이 상태				
노걸이 상태(이탈 및 흔들림 없음)				
선수 및 선미 견인고리 상태(이탈 및 흔들림 없음)				
계선로프 상태(부식 및 파단 여부)				
엔진 외관 상태(엔진 및 스크류 이물질)				
배터리 연결 상태				
선저 유입수 유무 확인(단,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제외)				
비상 배수펌프 확인(단, 수상오토바이의 경우 제외)				
자동 정지줄 확인				
조향장치 이상 유무				
조종레버 확인				
각종 계기판 상태				
구호물품 보유 여부 (망원경, 호각, 구조백, 구명부환 또는 일자형 구명튜브, 보트후크)				
■ 비상구조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 1대 이상 -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 2대 이상 -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 노 (paddle)

				
카약 패들	카누 패들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외관 상태 확인(파손, 부식 여부)				
블레이드 부분 파손 여부				
블레이드와 손잡이 결합 상태				
노의 목 부분 휘임 여부				
내부 침수 확인				

- 구명조끼

				
구명조끼	KC 인증마크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버클, 조임줄, 생명끈 이상 유무				
부력재 이상 유무				
안전인증 제품 여부 ※  마크 등 확인				
구명조끼 외관 이상 유무(변색, 탈색 등)				
구명조끼 부력확인				
재봉선 이상 여부 확인				
자켓 찢김 유무 확인				
참가자 인원수 대비 110% 이상의 수량 확보 확인 (참여 연령대를 고려하여 다양한 사이즈 확보)				

- 자동심장충격기(AED)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AED 전원을 켰을 때 안내멘트가 나오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LED 상태 알람창이 "0"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가 충분한지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매뉴얼을 갖추었는지 확인				
패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 확인				
정기점검표 확인				

• 활동장소 점검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승선장 접근 용이성 및 상태				
비상시 대피장소 적절성 (폭염, 비, 바람, 호우, 급우 등에 대비 가능)				
유사시 응급차량 접근의 용이성				
편의시설 구비 및 위생상태 (화장실, 급수시설, 샤워장, 소지품 보관시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활동장 인가 여부				
유량 및 유속의 적정성 (하천점용허가증 등 관계기관의 허가서 등으로 갈음 가능)				
수질의 상태 (악취, 기름띠, 각종 부유물)				
위험지형에 따른 부표, 안내판 설치 등 여부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가능한 통신장비 구비 여부 확인 (영업 구역이 약 3km 이상인 경우)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되지 않았는지 여부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활동장의 위험요소, 장애물, 계류장 시설 등 상황
	당일 기상(우천 시 예상 강우량 확인) 및 수온
	참가자 특징 파악 (인원, 요보호자 등)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비상연락망 숙지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응급장비, 래스큐 백 등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숙지
활동 중	수상 상태 및 기상변화
	구명조끼 상태, 헬멧상태 등 확인
	활동 진행 상태 및 참가자 참여 분위기별 대처
	참가자 건강 상태별 대처
	보트 공기압 확인
	활동 코스 유속 및 수량의 변화 대처
활동 후	참가자 건강상태 및 이상 유무 확인과 조치방법
	활동 종료 후 인원 파악
	참가자 건강 상태별 대처방안
	부상자 발생 시 대처방안과 인적사항·사고경위 확인방법
	개인별 활동장비 확인 및 회수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자신의 건강상태 파악 및 이상 시 지도자에게 알림
구명조끼 착용 및 이상 유무 확인 방법
패들링 중 충격에 의한 상처발생 시 대처방법
활동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보트 전복, 물에 빠졌을 때 등)

활동 중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패들링 중 패들 충격에 의한 출혈
 - 비상구조선으로 이동 후 상처확인
 - 소독 및 상처치료 후 드레싱
 - ※ 출혈이 클 경우 거즈, 붕대 등을 이용하여 직접 압박
 - 안전장소 이동 후 휴식
 - ※ 상태에 따라 병원 후송

- 저체온증
 - 비상구조선으로 이동
 - 우의, 담요 등을 이용해 보온
 - 차량으로 후송, 따뜻한 물로 샤워 후 회복조치
 - ※ 심한 오한과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 후송

- 심정지 환자 발생
 - 의식확인 및 119 신고
 - 응급차량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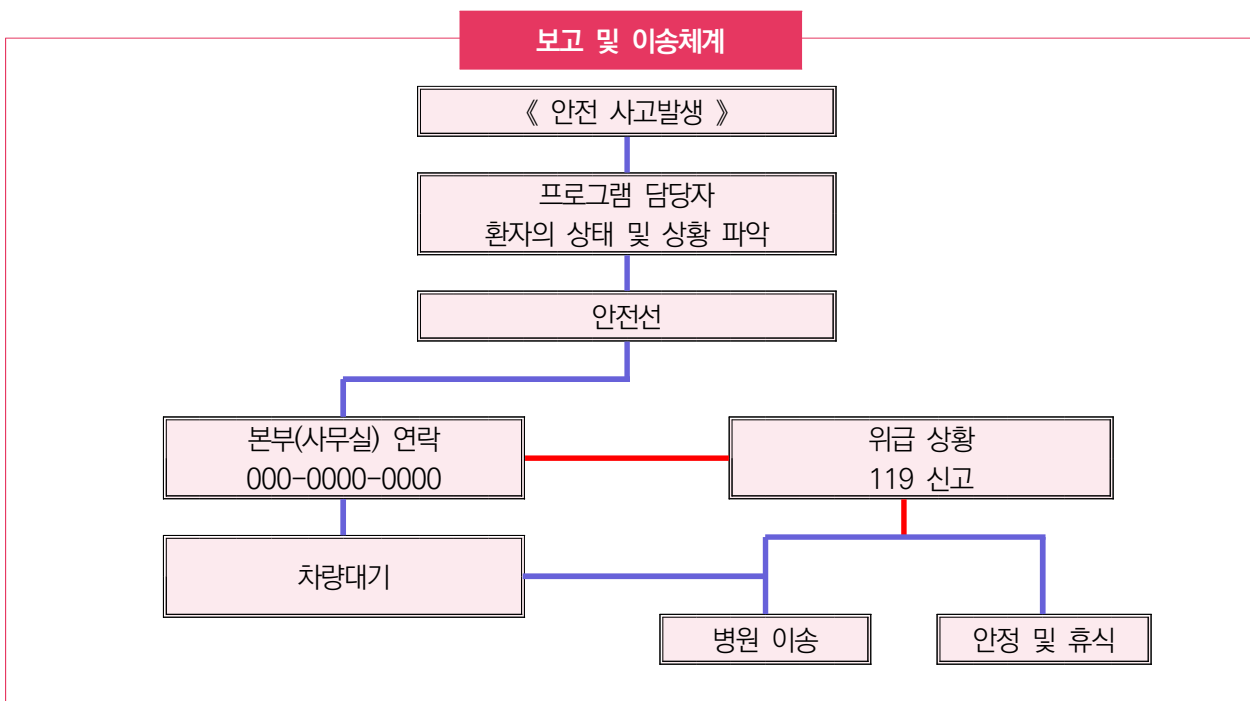


그림 2-2 | 고무보트 활동의 보고 및 이송체계

3) 스킨스쿠버 활동

마스크, 핀, 슈트 등의 스킨 장비 및 자가호흡과 부력조절을 할 수 있는 잠수 장비를 착용하여 수중에서 활동하는 레저스포츠로 스킨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으로 구분된다.



스쿠버다이빙	스킨다이빙
수중에서 독립된 수중자가호흡장치*를 가지고 하는 활동 * SCUBA : Self 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수영복에 발갈퀴와 수경을 착용하고 다이빙을 하거나 수영하는 활동

• 활동의 법적 근거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와 수중레저사업자(등록 대상일 경우)의 의무 준수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쿠버다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인정하는 자격자 • 스킨다이빙 (아래의 자격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 「수상구조법」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지도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청소년 5명당 1명의 전문지도자 배치 	

〈스킨스쿠버 활동 관련 안전사고사례〉

- 개방수역에서 활동 시 급격한 수온 변화로 패닉과 저체온증상 발생
- 스쿠버 활동 중 갑작스러운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가 구조된 사례
※ 청소년이 참여하는 스쿠버 활동은 일정 구역 내에서 진행이 되나, 개방수역 등에서 활동 시 유의 필요

〈스킨스쿠버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공기통(실린더)



많은 양의 공기를 작은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장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공기통을 흔들어 소리 유무로 탱크 밸브 스노클 분리 여부 점검				
공기통의 밸브 오링 이상유무 및 부식상태 점검				
공기통의 공기 냄새 확인 점검 * 일산화탄소분석기 사용 권장				
1년 주기의 육안점검을 통한 외관 이상 유무				
검사주기에 맞춰 검사결과 확인 - 생산 후 10년 : 5년마다 점검 - 10년 경과 후 : 3년마다 점검 ※ 정기적인 점검 내역서(결과표)를 보관하여야 함				

- 부력조절기(BC)



후면 부력형 BC

조끼형 BC

통합 웨이트형 BC

다이버가 수면에 떠 있거나, 바닥에 가라앉거나 중간에 떠 있기 위해 부력조절 하는 장치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공기통에 BC를 결합하여 인플레이터 및 디플레이터 정상작동 점검				

- 호흡기(레귤레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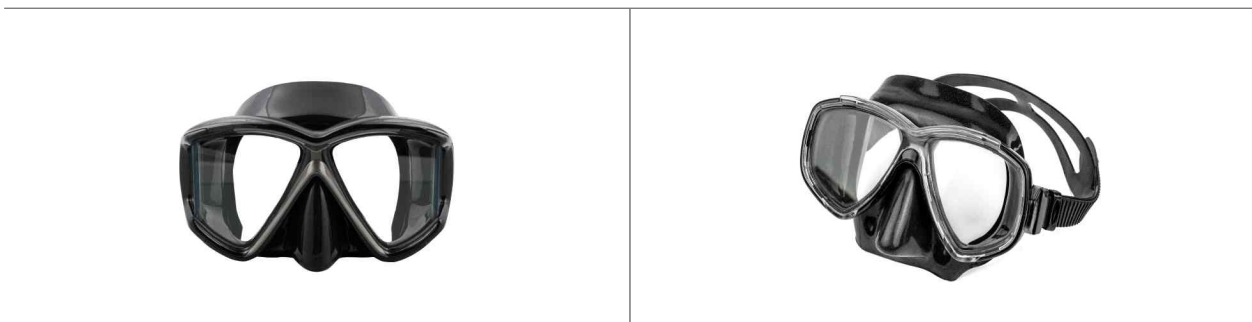


1단계 호흡기	2단계 주 호흡기	보조 호흡기
---------	-----------	--------

탱크의 고압 공기를 다이버에게 호흡할 수 있도록 압력을 낮추어서 공급하는 기계 장치이며, 1단계 호흡기를 거쳐 2단계를 통해 공기압력을 낮춰 다이버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함 (1단계 호흡기에 보조 호흡기 및 계측기를 부착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공기통에 결합하여 장치별 정상작동 점검				
호흡기(레귤레이터) 2단계 마우스피스 오염도 및 파손 점검(위생)				
호흡기(레귤레이터) 1단계 공기 주입 부분 필터 오염도 점검 * 필터 색깔에 따라 오염원인 체크(녹색-곰팡이, 검은색 - 콤프레서 필터 파손, 회색-바닷물 오염)				
공기통에 결합하여 공기잔압 점검 * 잠수풀 150bar, 해양 실습용 200bar				
생산 후 10년까지는 5년마다, 10년 경과 후는 3년마다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확인				

- 수경(마스크)



수중에서 맨눈으로 보면 상이 망막 뒤에 맺히게 되어 흐리게 보이는 것을 수경을 착용하여 물체가 망막에 맺히게 되어 잘 보이게 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사이즈 조절 버클 정상 작동 여부				
렌즈 상태 이상 유무(스크래치 등)				

- 숨대롱(스노쿨)

						
수면에서 숨을 쉬기 위한 에너지의 낭비를 막고 피로를 방지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마우스피스 부분 오염도						
스노쿨의 파손 여부						

- 잠수복(슈트), 신발(부츠), 장갑

						
세미 드라이슈트	잠수신발	잠수장갑				
대류작용으로 빼앗기는 신체의 열을 최소화하고 잠수 활동 중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신체의 피부를 보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찢어지거나 박음질의 이음 등 파손 여부						

- 오리발(핀)

						
수중에서 움직일 때 추진력을 얻기 위해 사용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마모상태 및 장비 이상 여부						
사이즈 조절 버클 정상 작동 여부						

- 수중 전등, 다이빙 컴퓨터



수중 전등

* 수심이 깊어지는 등 주변이 어두워질 경우 주위를 살펴 보기 위해 사용

다이빙 컴퓨터

* 무감압 한계 시간, 수심, 수온 등 여러가지 다이빙 정보 확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배터리 상태				
정상 여부				

- 자동심장충격기(AED)



확인내용

AED 전원을 켰을 때 안내멘트가 나오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LED 상태 알림창이 "0"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가 충분한지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매뉴얼을 갖추었는지 확인
 패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 확인
 정기점검표 확인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AED 전원을 켰을 때 안내멘트가 나오며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LED 상태 알림창이 "0"으로 표시되는지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가 충분한지 확인				
자동심장충격기 매뉴얼을 갖추었는지 확인				
패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 확인				
정기점검표 확인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 잠수풀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수질상태 점검				
잠수풀의 타일 파손 점검				
실내 온도 점검				
물의 수온 점검(섭씨 28도 이상 권장)				
수면 밖 사면에 외부 활동공간 (비상시 수면에서 손으로 잡을 공간)				
잠수풀 수심(5m를 넘지 않음)				
수면에서 바닥까지 이어지는 고정용 사다리 설치 (또는 수심이 발에 닿도록 안전데크 설치)				

- 해양(개방수역) - 비치 다이빙 : 해안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바로 입수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상 상태 및 파도와 바람 상태(다이빙 실시 여부 결정)				
수온의 점검(적정슈트 착용지도)				
수면 부이 및 하강라인 확인 후 입·출수방법 점검				
기타 편의시설 점검 (샤워장·탈의실·화장실)				
활동장 내 의료용 산소 비치 여부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자가 있어야 함)				

- 해양(개방수역) - 보트 다이빙 : 보트에 탑승하여 이동, 장비착용 후 입수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상 상태 및 파도와 바람 상태(다이빙 실시 여부 결정)				
수온의 점검(적정슈트 착용지도)				
수면 부이 및 하강라인 확인 후 입·출수방법 점검				
기타 편의시설 점검 (샤워장·탈의실·화장실)				
다이빙 보트의 출수용 사다리				
다이빙 보트 내 구호물품 보유 여부 (소화기, 구명줄, 비상약품, 구명부환, 무전기, 망원경 등)				
활동장 내 의료용 산소 비치 여부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자가 있어야 함)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 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당일 기상 상태(우천, 풍랑, 강풍 등) 및 수온
	가까운 챔버 위치 및 연락처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비상 연락망 숙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숙지
	응급 장비, 래스큐 백 등 확인
	참가 청소년 점검 (참가인원, 건강 상태 등)
	참가 청소년의 장비 점검 (장비 착용 상태, 마스크 성에 방지)
	참여자 피부 알러지 점검, 직전 6개월 내 수술 여부
	버디 확인, 수신호 확인, 한계설정, 활동 계획, 다이빙 포인트
활동 중	하강 중 압력 평형 성공여 부 수시 점검
	하강 중 스트레스 및 두려움에 대한 점검 (얼굴표정, 눈, 행동 등)
	교육생 공기량 수시 점검
	수온 점검 및 저체온 점검
	장비 점검(하강 후 웨이트 점검 등)
	버디 시스템 실시 점검
활동 후	출수 완료 및 다이빙 종료 후 인원 점검
	몸 상태 점검(저체온과 부비동 출혈 및 감압 관련 증상)
	장비 점검 및 공기 잔량 점검 (공기 소모량 많은 교육생 확인)
	다이빙 종료 후 장비 세척
	다이빙 후 보온 유지 대책
	다이빙 후 24시간 이내 무리한 운동금지
	다이빙 후 최소 12시간 이내 높은 곳(높은 산, 비행기 탑승 등) 이동금지 (무감압 시 제외)

- 지도자 대상 확인 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청소년의 인원과 건강 상태(감기, 코막힘, 알레르기 등) 점검
	심리상태 확인(물 공포증, 두려움 등)
	버디, 장비, 수신호 확인
	이퀄라이징
	활동 일정과 다이빙 포인트 안내
	안전 주의사항과 대처요령

구분	확인내용
활동 중	인원과 컨디션 상황 확인(저체온증 등)
	장비의 정상 착용 여부 확인
	공기 소비율 확인
활동 후	활동 종료 후 인원 및 건강상태 확인
	환자 또는 부상 여부 확인
	장비 확인 및 반납

활동 중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수중에서의 상황 발생

- 패닉(panic) : 극심한 스트레스로 유발되는데 주로 호흡기를 뱉어내고 상승하려고 발버둥침
 - 확인방법 : 다이버가 긴장하여 주위 반응에 무감각하고, 반복된 무의식의 행동과 눈동자의 산만함 등 사전에 세심한 관찰로 발견 가능
 - 대처방법
 - 빨리 접근하여 호흡기를 물리면서 상승하여 수면으로 이동
 - 수면에 도착하여 웨이트를 제거하고 부력을 확보
 - 물에서 즉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 후 응급처치
- 위급상황에 따른 급상승 : 감압병의 증상 발현 관찰, 증상이 발현되지 않더라도 음료(커피 및 탄산음료 제외)를 많이 마시고 100% 산소로 최소 1시간 정도 호흡하며 안정 필요
- 장비얽힘 : 공기통 밸브 또는 오리발
 - 장비를 벗어 얽힘을 풀거나 칼로 잘라야 함
 - * 장비를 벗어놓고 수면으로 탈출도 가능하지만 평소 훈련이 필요

□ 수면에서의 상황 발생

- 지친 다이버나 의식이 없는 다이버 발견 시 뒤로 접근하여 공기통 밸브 부분을 잡고 끌거나, 수평으로 띄워서 발을 어깨에 걸쳐 해변이나 보트로 이동

□ 심정지 환자 발생

- 의식확인 및 119 신고
- 응급차량 도착 전까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

4) 패러글라이딩 활동

별도의 동력장치 없이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활강하는 레포츠로서 바람에 몸을 실어 활공과 체공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 활동의 법적 근거

-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 지침 준수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자	
지도자 배치	- 참가 청소년 1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30%를 전문지도자로 배치 ※ 단, 활동 내용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도자 배치 비율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패러글라이딩 활동 관련 안전사고 사례〉

- 고도를 낮춰 비행 중 전신주, 나무 등과 충돌하는 사고
- 비행 중 난기류로 불시착하여 고압선에 걸리는 사례

〈패러글라이딩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패러글라이딩 날개(캐노피)



날개 윗면과 아랫면에 공기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압력차이(양력)에 의해 사람을 공중에 뜨게 하는 역할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체의 원단 찢어짐이나 재봉 상태 이상 유무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산줄과 라이저




산줄



라이저


날개에 연결된 수십 개 산줄은 비행 중 파일럿의 무게를 지탱해 주며 라이저는 이러한 산줄을 연결고리를 통해 하네스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끈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산줄의 꼬임이나 끊어짐 상태 이상 유무				
라이저의 산줄과 하네스 연결고리 및 재봉상태 이상 유무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하네스



파일럿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패러글라이더에 매달려서 비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장치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어깨, 가슴, 다리 끈 연결 상태 및 각 연결고리 이상 유무				
파일럿 신체에 맞게 조절 가능 여부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 인증 확보 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헬멧



비행 중 불시착이나 사고 시 파일럿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헬멧 내·외부 파손 여부				
파일럿 머리카락에 적합한지 여부				
(턱끈이 있을 경우) 턱끈 및 버클 파손 여부				
시야가림이 있는지 여부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무전기



비행 중 불시착 또는 긴급사항 시 구조 등을 위해 사용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송·수신상태 점검				
배터리 충전 상태 사전확인				
리시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이륙장의 경사 : 약 25도 ~ 30도				
활공코스에 높은 산이나 건물 등의 장애물이 없을 것				
착륙장의 최소면적이 사방 300m 이상 되는지 여부				
착륙 진입 코스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 것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로 등록·신고 여부 확인				
기상 상태에 따른 활동 운영계획 점검 - 우천 : 강수량 5mm 이하 풍향을 고려한 후 비행 가능 - 흐림 : 풍향을 고려한 후 비행가능 - 한파 : 비행금지 - 흑서 : 현장상황에 따라 유동적 대처 - 폭설 : 비행불가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예정된 활동 이외의 활동 금지(즉흥적인 비행체험 제공 등)
활동관련 안전수칙 사전교육 여부
청소년의 활동참여 전·후 건강 상태 반드시 확인
기상여건 등에 따른 프로그램 안전 운영 매뉴얼 숙지
각종 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유사시 구조 및 지원요청을 위한 통신장비(휴대폰 등) 구비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구분	체크리스트
활동 전	참여 청소년의 건강 상태 및 심리상태 파악
	비행 전 스트레칭 여부
	하네스의 가슴, 다리 벨트 등의 착용여부 확인
	헬멧의 턱 끈이 잘 채워졌는지 확인
활동 중	무전기의 송·수신 상태 및 연결상태 확인
	이륙 후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달리기를 멈추고 지도자의 지시에 귀를 기울임
	비행 중 몸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두고 활동하되 지도자의 지시가 아니면 어떤 조작도 하지 않도록 함
활동 후	착륙 전 몸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착지
	착륙 후 장비 정돈 후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 본인의 비행이 종료 후 다음 대기자가 원활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함

5) 행글라이딩 활동

삼각형 날개의 글라이더 장비로 활동하는 항공 스포츠로서 무동력으로 바람의 힘만을 이용하여 하늘을 나는 활동을 말한다.

- 활동의 법적 근거

- 「항공안전법」 제2조 제3호의 초경량비행장치
- 항공레저스포츠 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 지침 준수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비행시간이 180시간 이상인 자	
지도자 배치	- 참가 청소년 1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30%를 전문지도자로 배치 ※ 단, 활동 내용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결정으로 지도자 배치비율은 달리 적용될 수 있음	

〈행글라이딩 활동 관련 안전사고사례〉

- 행글라이딩 중 다른 조종자와 충돌하는 사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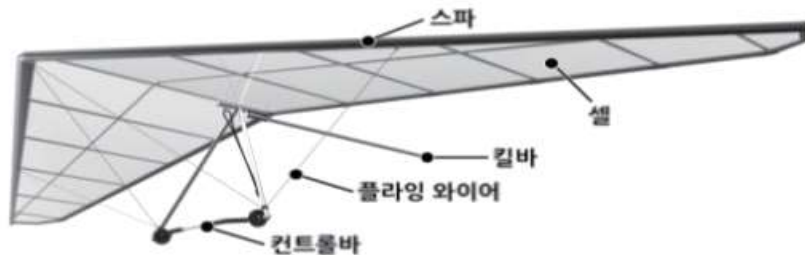
〈행글라이딩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점검일 :


확인자	책임자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날개




크로스바와 용골에 의해서 지탱되며 공기역학의 힘을 이용해 움직이는 수평면으로 나뉘어 윗면과 아랫면에 공기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압력차(양력)에 의해 공중에 뜨게 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체의 원단(셀) 부분 찢어짐이나 재봉 상태 이상 유무 확인				
크로스바, 용골, 킹포스트, 조종간, 각종 와이어 등의 균열 및 나사 조임 상태 이상 유무 확인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하네스




파일럿과 행글라이더를 연결시키고, 편안함과 조종을 쉽게 해주는 기능을 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하네스 크기가 파일럿 신체에 맞는 지 확인				
행글라이더와 연결 시 캐러비너, 스윙라인의 연결상태 확인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헬멧



비행 중 불시착이나 사고 시 파일럿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장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헬멧 내·외부 파손 여부				
파일럿 머리카기에 적합한지 여부				
(턱끈이 있을 경우) 턱끈 및 버클 파손 여부				
시야가림이 있는지 여부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무전기



비행 중 불시착 또는 긴급사항 시 구조 등을 위해 사용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송·수신상태 점검				
배터리 충전 상태 사전확인				
리시버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이륙장의 경사 : 약 25도 ~ 30도				
활공코스에 높은 산이나 건물 등의 장애물이 없을 것				
착륙장의 최소면적이 사방 300m 이상 되는지 여부				
착륙 진입 코스 주변에 장애물이 없을 것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자로 등록·신고 여부 확인				
기상상태에 따른 활동 운영계획 점검 - 우천 : 강수량 5mm 이하 풍향을 고려한 후 비행가능 - 흐림 : 풍향을 고려한 후 비행가능 - 한파 : 비행금지 - 혹서 : 현장상황에 따라 유동적 대처 - 폭설 : 비행불가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예정된 활동 이외의 활동 금지(즉흥적인 비행체험 제공 등)
활동관련 안전수칙 사전교육 여부
청소년의 활동참여 전·후 건강 상태 반드시 확인
기상여건 등에 따른 프로그램 안전 운영매뉴얼 숙지
각종 사고 및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유사시 구조 및 지원요청을 위한 통신장비(휴대폰 등) 구비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구분	체크리스트
활동 전	참가 청소년의 건강 상태 및 심리상태 파악
	비행 전 스트레칭 여부
	하네스의 가슴, 다리 벨트 등의 착용여부 확인
	헬멧의 턱 끈이 잘 채워졌는지 확인
	무전기의 송·수신 상태 및 연결상태 확인
활동 중	이륙 후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달리기를 멈추고 지도자의 지시에 귀를 기울임
	비행 중 몸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을 두고 활동하되 지도자의 지시가 아니면 어떤 조작도 하지 않도록 함
	착륙 전 몸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전방을 바라보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착지
활동 후	착륙 후 장비 정돈 후 정해진 위치에서 대기
	본인의 비행이 종료 후 다음 대기자가 원활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함

6) 클라이밍(자연 암벽, 빙벽) 활동

클라이밍은 자연의 암벽 또는 빙벽을 다양한 등반기술을 활용하여 오르는 활동을 말한다.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 클라이밍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활동 3년 이상 경력자	
지도자 배치	- 참가 청소년 15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30%를 전문지도자로 배치	




〈클라이밍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안전모, 안전벨트, 로프(자일)

		
헬멧	안전벨트	로프(자일)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헬멧	턱끈 및 버클 훼손				
	견고성 및 마모상태 이상 여부 확인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확인				
안전 벨트	충격 하중 부분의 박음질 및 웨빙 상태 여부 ※ 웨빙상태 : 끊어짐, 해짐, 오염 등				
	확보 포인트 상태(변형, 해짐 등)				
	사이즈 조절 버클 상태, 다리 및 장비고리 상태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확인				
로프	등반용 로프 관리 및 확보용 슬링 관리 상태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확인				

- 카라비너, 암벽화, 8자 하강기

		
카라비너	암벽화	8자 하강기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카라비너	잠금 카라비너 사용 여부				
	카라비너 표면 갈라짐, 굽힘, 오염상태 확인				
	게이트 작동 상태				
	수동 및 자동 카라비너의 잠금 및 해제 작동상태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확인				
암벽화	바닥 마모상태 등 이상 여부 확인				
8자 하강기	마모 및 균열상태 확인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확인				

- 암벽장갑, 빙벽용 아이젠, 피켈

		
암벽장갑	빙벽용 아이젠	피켈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암벽장갑	찢어지거나 박음질의 이음 등 파손 여부				
빙벽용 아이젠	마모 및 균열상태 확인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피켈	마모 및 균열상태 확인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상 상황(풍향, 풍속 등) 확인				
활동장(자연암벽장, 자연빙벽장) 접근 및 사용 사전허가 확인				
참가 청소년 대비 활동장 암벽 코스 적합성				
낙석, 낙빙 등 코스안전 확인				
활동장 암벽 코스의 고정장치(하강고리, 확보물, 행거, 슬링) 균열 및 마모 상태 확인				
활동장 암벽 주변 휴식 및 대기 장소 안전 확인				
유사시 응급차량 접근의 용이성 확인				
대기 장소의 안전 위해요소 여부 확인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활동장 접근로 및 위급 시 후송로 교육
	등반장비 준비 및 장비 안전점검
	등반장비 착용법 및 사용법 숙지
	참가자 특징(연령, 경험, 건강상태, 참가자 복장, 소지품 등)
	기상상태 및 날씨별 대처방안 교육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대피시설, 비상연락망 교육
	활동장 특징 및 휴식과 대기장소 교육
	클라이밍 시 유의사항 교육
	참가자 등반 중 발생하는 문제점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활동 중	활동장의 기상변화 지속 확인
	참가자 건강상태 및 이상 유무 지속 확인
	장비상태 지속 확인
활동 후	참가자 건강상태 및 이상 유무
	장비 이상 유무 확인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지도자의 지시사항 준수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여부
	활동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 착용 및 불필요 개인 소지품 소지 여부
	체중에 적합한 장비 착용 및 위급 시 대처요령 숙지
	사고 시 행동요령 숙지
	건강 상태 이상 시 지도자에게 알림
활동 중	출발신호와 완료 신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함
	로프가 꼬이거나 밟지 않도록 교육
	활동 시 행동요령 교육
	- 다른 참가자가 등반중일 때 간섭하지 않음
	- 다른 참가자의 등반 장비를 옮기거나 건드리지 않음
	- 바위틈에 있는 풀이나 썩은 나뭇가지는 잡지 않음
- 로프가 크랙에 끼이거나 암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	
- 활동 중 개인행동 절대 금지	
활동 후	개인 소지품 및 분실물 확인
	건강 상태 확인 후 이상 시 즉시 지도자에게 알림

활동 중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전화(통신)이 안되거나 할 수 없는 경우
 - 골절 시 부목을 사용하여 응급처치
 - 구조요청 신호는 1분에 6회하고 1분간 쉬었다가 다시 6회를 함
 - ※ 호루라기, 랜턴, 불꽃 등으로 할 수 있음
 - 가까이에서 구조대가 구조요청을 접수하여 올 수 있는 가망이 없을 경우 지도자 중 체력, 책임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연락 내용이 기록된 메모지, 식량,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 근처의 대피소, 경찰서, 소방서, 구조대 등을 찾아가도록 함
 - 연락내용은 조난자의 개인신상내용과 사고 발생 장소, 원인, 생사여부, 부상부위 및 정도, 전문 의료진 동행 필요 유무 등을 작성

7) 산악스키 활동

자연의 눈 덮인 산악지형에서 스키를 이용하여 트레킹 및 등반, 활강을 하며 눈 덮인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활동을 말한다. (인공적인 스키장에서 실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 산악스키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활동 3년 이상 경력자	
지도자 배치	- 참가 청소년 15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30%를 전문지도자로 배치	

〈산악스키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점검일 :

확인자	책임자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스키플레이트



일반 스키와 산악스키 플레이트가 다른 점은 뒤틀림(탐과 테일까지의 유연성)이 유연하고, 무게가 가벼움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엣지 확인(스키 길이의 90% 이상이 메탈 소재의 엣지로 덮혀 있어야 하며 엣지의 날은 무뎠는지 않았는지 확인)				
베이스 확인(파인 곳이 없고 표면의 왁싱도 매끄럽게 되어 있는지 확인)				
길이 확인(스키의 최소길이 남자 160cm, 여자 150cm 이상)				
사이드컷 확인(탐-센터-테일의 크기는 최소 80-60-70mm 이상이며, 설질과 활동의 특성에 따라 120-90-110mm 이상의 스키 선택 가능)				
무게 확인(700 ~ 1,400g 범위 안에서 활동내용에 따라 선택)				

- 부츠



장기간 착용에 따라 발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혹한에서 등반을 해야 하므로 두꺼운 양말을 신는 것을 감안하여 반드시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5~10mm 이상 큰 것을 선택하여야 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부츠 내피가 충분히 건조되었는가 확인				
발목고정 스위치 작동 확인				
바닥 창 확인(4mm 이상 깊이의 톱니모양 골이 토우 쪽에 15개 이상, 힐 쪽에 8개 이상이며 바닥전체를 덮어야 함)				
잠금장치 확인(최소 2개 이상의 독립된 잠금장치)				

- 바인딩부츠



스키와 부츠를 결속시켜주는 부품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이탈 강도 확인(사용자의 몸무게, 스키실력에 맞추어 바인딩의 이탈강도 조정)				
토우쪽 바인딩의 잠금장치 확인(스키부츠의 토우부분을 고정하는 잠금장치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잠글 수 있어야 함)				

- 폴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이용자의 신체에 맞는 길이 확인 (키와 등반, 활강 상황에 맞게 폴 길이 조정)				
바스켓 사이즈 확인 (적설량이나 설질에 맞게 다른 사이즈의 바스켓으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함)				
파손 여부 확인				

- 스킨



스키플레이트를 착용한 상태로 오르막 구간 등행을 위해 스키플레이트의 바닥에 부착하는 합성 직물, 바닥에 짧은 털이 한쪽방향으로 촘촘하게 나있어 앞으로 나아갈 때 눈위를 잘 미끄러지게 하지만 눈을 움켜지는 그립력이 있어 경사진 슬로프에서 스키가 뒤로 미끄러지지 않는 기능도 있음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스킨의 길이와 넓이 확인 - 그립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스킨은 플레이트 길이와 표면적의 50% 이상을 덮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함				
스킨의 건조와 관리 - 스킨 사용 시에는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스킨악스를 사용해야 미끄러짐 성능과 충분한 그립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스킨이 젖어 있을 경우 눈이 묻쳐져 달라붙는 스노우볼 현상이 생기고, 스킨을 사용하지 않아 빨리 마모된 스킨으로는 오르막 설면을 올라 갈 수 없음				
바닥 접촉부분의 청결한 관리 - 스킨 부착 시 플레이트 바닥의 물기를 먼저 제거하고, 스킨을 바르게 펴서 부착해야 함. - 스킨 바닥의 접촉부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경우, 스킨은 쉽게 탈착될 수 있으며 기온이 내려갈수록 더욱 사용하기 어렵게 됨				

- 눈사태 구조용 신호기



세계공용 457khz 주파수 사용하여 눈사태에 매몰되거나 실종된 사람을 찾아내는 장비로 DVA, ARVA, 비콘 등으로 불림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건전지 전류량 확인 - 매일 스키 등반을 시작하기 전 확인하고 그날의 전체 운행시간을 커버 할 수 있어야 함				
전파 수신모드 확인 - 신호기가 수신모드에서 적절하게 작동되는지 확인				
전파 발신모드 확인 - 신호기의 발신모드가 적절하게 작동되는지 확인				

- 보온의류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상의 : 짧거나 긴 속옷, 긴팔 보온옷, 통기성 좋은 긴팔 방풍 의류 3겹				
하의 : 보온용 스키 바지, 통기성 좋은 방풍바지 등 2겹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계획한 일정 동안의 기상 상황				
적설량, 코스의 난이도 등 대상 산의 상황 확인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참가 청소년의 장비, 복장 등에 대해 철저히 파악 및 준비 교육
참가 청소년의 상황과 특성, 특히 각 개인의 스키실력 충분히 파악
일반스키와 산악스키의 특성과 사용법
변화하는 기후와 체온에 맞추어 옷을 입는 레이어링 시스템 숙지
참가 청소년의 스키 실력과 숙련도에 따라 대열의 선두, 후미를 조정하고 전체 청소년을 항상 시야에 두도록 함
이동 중에는 대열의 선두와 후미 간에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속도에 신경 쓰고, 선두와 후미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 실시
산악스키 장소와 코스 선정 시 전체 참가 청소년의 평균 이하 실력을 감안
활동 중 상황을 특정한 교육내용 분명하게 전달
특정 구간의 위험 요소는 전체 청소년에게 분명하게 전달
참가 청소년의 원활한 에너지 보충과 수분 섭취를 위해 쉬는 시간 선택
구급함과 의료품 항상 휴대
최소 일몰 두 시간 전 활동을 종료하고 실내로 복귀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지도자의 지시와 조언에 반드시 따라야 함
개인의 스키 실력을 지도자에게 분명하게 알려 코스 및 활동 계획에 반영토록 할 것
준비한 복장과 장비의 미비점 등을 사전에 지도자와 상의하여 대비
교육 시작 전 실내에서 산악스키 장비의 특성과 사용법 숙지
활동 중 야외에서 발생하는 요변 등 모든 개인적인 사항은 지도자와 상의하여 대처, 대열을 무단이탈하여 자신을

확인내용

위험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활동 중 특정 구간에서 지도자가 전달하는 안전 관련 사항은 반드시 따르고 돌발행동을 하지 말 것

레이어링 시스템에 의한 복장을 엄두에 두고 환복의 중요성 숙지
(야외에서는 체온 보호가 가장 중요)

활동 중 체력 저하를 막기 위해 음식물과 수분 섭취를 통한 에너지 보충에 힘써야 함

참가 청소년 간 스키 초급자를 먼저 배려하고 슬선수범하여 자신과 타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함

활동 중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눈사태 매몰 또는 실종

- 사고 발생 시 실종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눈사태 구조용 신호기(비콘)을 수신 모드로 전환
- 비콘 사용법 3단계에 따라 신호 찾기, 방향 찾기, 정밀 찾기 순으로 실종자 위치 확인
- (눈사태 매몰 시) 비콘을 통해 매몰자의 위치가 확인되면, 탐침봉을 꽂고 탐침봉 길이의 1.5배 아래쪽으로부터 눈삽으로 파 들어간 후 마지막으로 손을 사용하여 매몰자 주변의 눈을 걷어내고 눈 밖으로 내움. 즉시 응급조치 시행

8) 야간등산 활동

야간에 이루어지는 산행 활동으로 오후 7시부터 시작하여 4시간 이상 계속 운영되는 활동을 말한다.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 산악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활동 3년 이상 경력자	
지도자 배치	- 참가 청소년 15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30%를 전문지도자로 배치	

〈야간등산 활동 안전점검 내용 및 기준〉

점검일 :

확인자	책임자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헤드랜턴

				
가시거리가 좋은 헤드랜턴	내구성이 좋은 헤드랜턴	장시간 사용 가능 헤드랜턴		
가시거리가 10m 이상 되어야 하고 머리에 잘 맞아야 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헤드랜턴의 광시 거리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외관상 파손 여부 및 조임 끈 등 확인				

- 등산용 칼, 무전기, 호루라기

					
등산용칼	무전기	호루라기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등산용 칼의 외관상 파손 여부 확인					
무전기의 송·수신 및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호루라기의 작동 상태 및 청결 여부 등					

- 등산화, 배낭

					
경등산화	중등산화	등산배낭			
경등산화 : 가벼운 산행, 따뜻한 날씨에 착용					
중등산화 : 계절 관계없이 장거리 산행, 험한 지형에 착용					
배낭 : 20L~35L 당일 등산용, 35~55L 장거리 트레킹용, 55~85L 1박2일 이상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등산화의 바닥 마모상태 등 이상 여부 확인					
신체 사이즈에 맞는 배낭인지와 외관상 파손 여부 등					

- 등산스틱, 장갑

				
등산스틱 : T형 손잡이	특산스틱 : I형 손잡이	등산장갑		
T형 손잡이 : 가벼운 산행, 평지 트레킹을 할 때 사용 I형 손잡이 : 장거리 산행이나 종주 산행 등에 사용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외관상 파손 여부, 신체 사이즈 적합 여부				
장갑 등의 찢어지거나 박음질의 이음 등 파손 여부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등산로 노면에 대한 활동 적합 여부 확인				
낙석위험 여부 확인				
인장력 이상 유무 확인				
나무계단 이상 유무 확인				
이정표나 안내판 파손 유무 확인				
입산 통제구역 파악 유무 확인				
유사시 대피로 확보 유무 확인				
국가지점번호(현 위치 알림판) 설치 유무 확인				
휴식지 및 기타 활동 장소를 확인하였는지 확인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산행코스 지도 교육
	등산로 숙지 및 주변 위험 요소 확인
	인솔방법 등 전반적 이동 방법 교육
	긴급상황(일기 변화 등)에 따른 대피시설 및 임시 하산 코스

구분	확인내용
	안전수칙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환자 발생에 대비한 환자 수송계획 수립
	낙오자 발생 시 임시 하산 계획
	활동 당일 일기예보 확인
활동 중	산행 전과 활동 중 수시로 참가 청소년 건강 상태 확인
	구급약품, 산행지도, 복장, 식수, 취식물 준비상태
	인솔계획(행렬의 선두, 중간, 후미 및 낙오자 인솔대비)에 따른 지도자 배치상황 점검
	기상 상태 확인
활동 후	참가인원 파악 및 참가 청소년 건강상태 확인
	활동 장비 확인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야간산행 주의 사항 교육 -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천천히 이동 - 손에는 가급적 물건을 들지 말아야 함 (스틱 제외) - 내리막길 이동 시 주의 사항 교육 ·자세를 낮추고 발아래를 잘 살펴 디딤 ·굵은 모래나 돌이 있는 길을 내려올 때 미끄러짐 주의
	스트레칭 실시
	복장 확인 - 기온 저하 대비 덧입을 옷 준비 - 여름이나 초가을에는 바르는 모기약 준비 권장
	유사시 대처방안 교육 (다치거나 대열에서 낙오되었을 경우 등)
활동 중	정해진 길로 다니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서는 안됨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만지거나 잡는 행위 금지
	야간산행 중 화기 소지를 금하고 산에서 조리 행위 금지
	음식물 쓰레기는 잘 싸서 다시 가져오도록 함
활동 후	이동속도는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건강상태 확인
	스트레칭 실시

활동 중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 유사시 대처방안
 - 천둥과 번개가 심할 때에는 산골짜기나 산장 안으로 대피
 - 길을 잃었을 경우 원래의 지점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함. 단, 너무 어두워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구조를 기다림
 - 응급상황인 경우 지도와 위치표시판 확인을 통해 인근 산악구조대나 119에 알려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로 침착하게 대응
 - 연락 내용은 조난자의 개인 신상 내용과 사고 발생 장소, 원인, 생사 여부, 부상 부위, 부상 정도, 의사의 필요 유무 등을 작성
 - 조난 시 무전기나 핸드폰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삼각법 등을 활용

- 신고 시 위치 알리는 법
 - 삼각법 : 세 지점에 모닥불을 피워 도움요청
 - 음향 활용 : 큰 소리로 외치기, 물건을 두드려 소리내기
 - 횃불 사용 : 1분간에 10초 간격으로 6회 흔들고, 1분 중지했다가 다시 10초 간격 6회 흔들기
 - 119 신고 시 위치 알리는 법
 - 인근 산악 안내 표지판 번호 이용, 현재 위치 알림
 - 사고 발생 경위 및 부상 정도
 - 환자에게 대화 유도하고 보은 조치를 하면서 구조 기다림
 - 무조건 하산보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것이 좋음

9) 장거리 걷기 활동

지도상 10km 이상의 코스를 특별한 동력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이동하는 활동으로 국토 대장정이나 국토순례 만이 아니라 장거리 등산, 트래킹 등 다양한 형태의 걷기 활동도 포함한다.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활동 3년 이상 경력자	
지도자 배치비율	참가 청소년 15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30%를 전문지도자로 배치	

〈장거리 걷기 활동 관련 안전사고사례〉

- 더운 날 체력 이상의 코스를 이동 중 탈진
- 도로에서 이동 중 지나가는 일반 차량에 의한 접촉사고
- 더위 해소를 위해 신체에 파스 등을 붙였다가 갑작스러운 쇼크 발생

〈장거리 걷기 활동 안전 확인사항-체크리스트〉

점검일 :

확인자	책임자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경광봉, 안전조끼, 호루라기

		
경광봉	안전조끼	호루라기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경광봉	외관 파손 여부 점검				
	경광봉 정상 작동 여부 점검				
	예비 건전지 보유 점검				
안전 조끼	반사판 발광 상태 확인				
	박음질, 파손 여부 확인				
호루 라기	작동 상태 및 청결 여부 등 확인				

- 무전기, 텐트, 기타

	
무전기	텐트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무전기	무전기의 작동 상태 확인				
	배터리 충전 상태 확인				
텐트 (사용시)	텐트의 크기가 참가인원에 적합한지 확인				
	텐트는 방염(防炎) 텐트인지 확인				
기타	용품의 일반상태(청결, 파손 등)				
	참가 청소년 예비 의류 준비상태 확인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 이동로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공통	이동 경로에 장애요인(공사 구간, 위험 요인 등)은 없는지 확인				
	통행에 허가가 필요한 구간은 없는지 확인				
	계절별 코스 이용 가능 여부 확인				
	이동 코스 인접한 의료시설/소방서/경찰서 등의 위치는 파악하였는지 확인				
	휴식지 및 기타 활동 장소를 확인하였는지 확인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상악화(폭우/폭설 등) 시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확인하였는지 확인				
	도보 이동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입산 통제(산불방지, 자연휴식년제 등) 기간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점검				
산	산악지형의 특성(통신두절/탈출로 등)에 따른 비상시 대처방안 강구 확인				
	고립/조난 또는 응급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숙지 여부 확인				
해안	해안지대 특성에 따른 안전 사항(물 때/파고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점검				
	기상악화로 도서지방 고립 시 대처방안 수립 여부				
도로	이동 경로 관할 지역의 경찰서에 에스코트 요청을 하였는지 확인				
	이동 경로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이 있는지 확인				
	건널목 이동 또는 도로 횡단 시 적절한 교통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				

- 휴식지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이동 경로상 적당한 거리에 휴식지가 있는지 확인(그늘 등)				
휴식지에 위험 요인(해충, 공사 현장 등) 유무 확인				
휴식지의 위생 상태는 양호한지 확인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확인				

- 숙박장소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실내·외	이동 경로상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				
	숙박 장소의 위생 상태 확인				
	불법 건축물이나 청소년 이용에 부적절한 시설 유무 확인				
	정기적인 점검 및 관리(소방/전기/가스 등)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 구비 여부				
야외	숙박 장소 주변에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확인				
	취사장, 세면장, 화장실, 샤워실 등의 편의시설 구비 여부				
	기상악화(폭우/폭설 등) 시 긴급 대피장소 유무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이동 경로의 날씨, 온도, 풍향, 풍속 등의 기상 상태는 적절한지 확인
	횡단보도 구간 통과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 통제 시 지도자별 안전 역할 확인
	이동 구간 답사 및 이동 구간 숙지여부 확인
	이동 경로의 교통 및 차량의 소통 상태 안전 유무 확인
	지도자들의 전문성 수준 및 자격요건 배치 인원의 적절성
	응급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실시
	취사 계획 수립 시 음식물 보관과 화기 안전 관리 방법 교육
	참가자 비상 연락망 구축과 건강상태(요보호자) 파악
활동 중	개인별 활동 준비물(의류, 신발, 간식, 물 등)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
	참가자들이 적절한 복장과 안전 장비 착용하였는지 확인
	수분과 음식물을 적절하게 섭취하도록 지도
	상황에 맞게 적절한 휴식이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
	앞 사람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동하도록 지도
	기상 조건을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하게 대응
활동 후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점검
	이동 중 이탈자가 없는지 인원 체크 수시로 확인
	인원 체크 및 건강상태 확인 사용 장비의 수량 및 상태 점검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지도자의 지시 사항 준수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여부
	활동에 적합한 복장과 신발 착용 및 불필요 개인 소지품 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얼굴 및 목 등을 햇빛으로부터 가릴 수 있는 모자 - 자외선 차단 팔/발토시 착용 또는 긴팔/긴바지 착용 - 자외선 차단 기능이 검증된 제품 사용 여부
	몸 상태 점검 및 일사병 등 증상 안내
	건강 상태 이상 시 지도자에게 알림
	도로 이동 시 안전 사항 교육
	활동 중
활동 후	개인 소지품 및 분실물 확인
	건강 상태 확인 후 이상 시 즉시 지도자에게 알림

10) 하강레포츠 활동

양편의 기둥 사이로 와이어로프를 설치하고 참가자의 안전벨트에 연결된 트롤리(trolley)를 와이어로프에 결속하여 빠른 속도를 이용해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활동으로 집라인, 집와이어, 케이블코스터, 집슬라이더, 아라나비, 플라잉폭스, 에어리얼런웨이, 티롤리언크로싱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해당 활동 3년 이상 경력자	
지도자 배치비율	하강레포츠 플랫폼별 1명 이상 배치	

〈하강레포츠 활동 관련 안전사고사례〉

- 제한 하중을 초과하는 탑승자가 활동 중 추락
- 장비 체결이 완전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여 출발과 동시에 탑승자가 추락

〈하강레포츠 활동 안전 확인사항-체크리스트〉

※ 단, 하강레포츠(집라인) 활동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진행한 ‘청소년활동 안전 컨설팅 결과서’로 증빙하여야 함.

확인자	책임자

점검일 :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헬멧



낙하물, 부딪힘,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자기 방호 용구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헬멧 내·외부 표면 상태 (갈라짐, 긁힌 자국, 흠집, 오염 등)				
내부 부착품 상태 (헤드밴드, 웨빙, 내부틀, 박음질, 버클 등)				
고정장치 상태 (내부클립, 버클, 헤드밴드 등)				
사이즈 조절 상태 (머리둘레 조절 및 턱끈 등)				
턱끈 클립 상태 (클립 상태에서 강제로 2~3회 당겨 풀리는지 검사)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 인증 확보 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안전벨트(하네스)




탑승자가 와이어에 매달릴 수 있도록 고정시켜 주며, 탑승자를 추락으로부터 보호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충격 하중 부분의 바텍 및 웨빙 상태 (끊어짐, 해짐, 오염 등) ※ 바텍 : 일자 박음질 방식, 3~4개의 박음질 부분이 있음				
충격 하중 부분 외 바텍 및 웨빙 상태(끊어짐, 해짐, 오염 등)				
확보 포인트 상태 (변형, 긁힌 자국, 해짐 등)				
사이즈 조절 버클 상태 점검				
다리 고리, 장비 고리 상태 점검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카라비너



안전벨트에 렌야드와 트롤리를 연결해 주는 금속 재질의 고리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잠금 카라비너 사용 여부(트리플액션, 더블액션, 스크류 잠금 등)				
카라비너 표면 상태(갈라짐, 긁힌 자국, 흠집, 오염 등)				
카라비너 코, 리벳 핀 상태 점검				
게이트 작동 상태 점검(게이트 개폐 여부 5회 이상 테스트)				
수동(또는 자동) 잠금 카라비너의 잠금 및 해제 작동 상태 점검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 인증 확보 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트롤리



수평 횡단을 위한 장비로 탑승자가 출발지점에서 이동하기 위해 와이어로프에 트롤리를 장착하여 사용 (도르래 내장)
※ 위의 왼쪽 사진 예시처럼 트롤리에 렌야드가 1개로만 확보되면 안됨, 오른쪽 사진 예시와 같이 2중으로 확보되어 있어야 함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트롤리 외부 표면 상태(갈라짐, 긁힌 자국, 흠집, 오염 등)				
도르래 바퀴 표면 상태(갈라짐, 긁힌 자국, 흠집, 오염 등)				
도르래 바퀴 작동 상태(양방향으로 부드럽게 회전되는지)				
도르래 고정 리벳 상태(변형, 흠집, 부식 등)				
트롤리와 카라비너 연결부분 상태(변경, 흠집, 부식 등)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 인증 확보 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랜야드



트롤리에 연결된 카라비너와 탑승자를 연결하기 위한 메인 확보줄이며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음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웨빙 및 로프의 표면 상태 (끊어짐, 해짐, 오염 등)				
웨빙 및 로프의 바텍 상태 (끊어짐, 해짐, 오염 등)				
금속 부분 상태 (변형, 흠집, 부식 등)				
백업(back up) 확보줄 여부 (이중 확보 시 필요)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 인증 확보 장비 여부 ※ 마크확인				

- 응급구조 장비



탑승자가 공중에 정지하는 등 응급상황 시 대처하기 위한 장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인증 확보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 와이어로프(Wire rope)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제품 적절성	와이어로프 시험성적서 보유 여부 (Mill Test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Inspection)				
	아연 용융도금 된 와이어로프 사용 여부				
	최소 51.2kN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설치 적절성	메인 와이어로프 설치 후 백업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				
	이음매, 꼬임, 변형, 부식 등의 손상된 와이어 로프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와이어로프 클립의 간격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와이어로프 직경에 따른 와이어로프 클립 개수가 적절한지 여부				
	와이어로프 클립의 방향이 올바른지 여부				
	와이어로프를 설치할 때 팀블(Thimble) 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메인 와이어로프가 적절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와이어로프 설치 부품(팀블, 클립, 클램프, 턴버클 등)에 균열 또는 마모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와이어로프의 자체 하중 및 장력으로 인하여 기둥 및 가이, 플랫폼 구조물의 변형이 가해졌는지 여부				
교체 주기 적절성	와이어로프 기술사양서에 기재된 공식지름의 7% 이상이 감소되었는지 여부				
	와이어로프 손상 여부				
	하나의 와이어로프에 6개 이상 파손된 철사 가닥 또는 하나의 꼬임에 3개 이상의 파손된 철사 가닥 존재 여부				
	최소 1개월당 1회 이상 와이어로프 소선의 단선 및 기타 변형(킹크 등) 여부를 검사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기둥(Pole) 및 가이 케이블(guy cable), 플랫폼(platform)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기둥	제품 시험성적서(국립과학연구원) 보유 여부				
	목재 기둥의 경우 적합한 방부목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와이어로프를 지탱하는 기둥이 적절하게 매설되었는지 여부				
	목재 기둥의 경우 수직으로 설치되어있으며 부식 또는 부패하거나 심각한 균열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철재 기둥의 경우 볼트 또는 리벳, 용접 등을 이용한 접합부가 안전하게 시공되었으며 방청도장이 되어있는지 여부				
	철재 기둥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의 사용으로 균열 또는 휘어짐 등의 증상이 발생되었는지 여부				
가이 케이블	가이케이블의 개수 및 설치 각도가 적절한지 여부				
	가이케이블이 지면 또는 암벽에 적절한 방식으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적합한 턴버클 사용 여부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플랫폼	주변 환경 여건(습도, 지형, 지반구조 등)에 따라 플랫폼의 자재 및 시공 방식 등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여부				
	승인되지 않은 인원이 플랫폼 시설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제한, 시설 안내에 대한 표식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3m를 초과하는 계단 및 플랫폼 난간부의 경우 적정 높이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키가 작은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동움계단이 안전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도착 플랫폼의 경우 탑승자가 안전하게 도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각도를 지녔는지에 대한 여부				
	2m 이상의 플랫폼에 대기인원 또는 운영지도자의 추락을 방지 하기 위한 안전 빌레이의 설치 및 사용 여부				
	목재 또는 철재 플랫폼 각 부분에 부패 또는 균열, 부식, 기타 안전상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플랫폼의 높이가 1.8m 이상의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 여부				
	추락방지용 안전망 규격의 적정성(내민 길이 3m 이상, 그물코 가로 세로 10cm이하)				

- 브레이크 시스템(brake system)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시설 이용자가 도착 지점에 도착할 때의 속도가 적절하게 감속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시공되었는지 여부				
1차 브레이크의 설치 적정성 및 정상 작동 여부				
2차 브레이크의 설치 여부 및 정상 작동 여부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활동장비 정확한 사용 방법 및 이상 유무 ※ 특히, 트롤리와 안전벨트를 랜야드로 연결한 후 랜야드에 대한 2중 안전장치 확인 숙지 여부 확인
출발 및 도착 지점에서 운영자와 탑승자의 추락방지 확보 방법
체험자가 활강 전 개인 보호장비의 착용상태를 점검하고 도착 지점의 운영 지도자와 소통하는 방법 숙지 여부
탑승자의 제동 및 장비의 해체 방법 교육
도착 지점에 도착하지 못한 탑승자(공중정지 등)를 구조하는 방법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동요령 및 후속 조치 방법 ※ 지면 추락, 랜딩 시 충돌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구분	확인내용
활동 전	건강 상태 점검(디스크 또는 마음 상태 등)
	탑승 제한 신장 및 몸무게 점검
	하강 레포츠 체험 주의 사항, 탑승자세, 위급상황 시 행동요령 숙지
	복장 점검(장신구 제거 여부, 긴머리 고정상태 등)
	신체에 맞는 헬멧 및 안전벨트 착용 상태 확인
활동 중	탑승 플랫폼에서 참가자의 심신상태 등 확인
	기상변화 확인
활동 후	탑승자의 부상 및 충격 여부 확인
	탑승 완료 인원 관리
	탑승자의 분실물 및 소지품 확인
	활동 장비 확인 및 회수

11) ATV 탑승 활동

ATV란 ‘어떤 지형이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이란 말의 영문약어로서, 길이 없는 오프로드(off road)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사륜차를 말한다.

표 6-22 | ATV 탑승 활동의 전문지도자 전문성 수준과 배치

구분	확인내용	확인
지도자 전문성	제2종 이상의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자격 소지자	
지도자 배치비율	참가 청소년 15명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하고 그 중 30%를 전문지도자로 배치	

〈ATV 탑승 활동 관련 안전사고사례〉

- 산악코스 주행 중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내려가는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균형을 잃고 ATV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

〈ATV 탑승 활동 안전 확인사항-체크리스트〉

점검일 :

확인자	책임자

- 활동 장비 종류 및 점검 체크리스트
 - ATV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차량등록 여부 확인				
시동장치(버튼/엑셀 등) 작동상태				
조향장치(핸들) 작동 상태 점검				
브레이크(앞/뒤) 작동 상태				
속도계 작동 상태 점검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후사경(좌/우) 부착 상태 점검				
방향지시등 작동 상태 점검				
바퀴(휠 포함) 및 공기압 상태 점검				

- 헬멧



낙하물, 부딪힘, 추락에 의한 충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자기 보호 용구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내·외부 표면 상태 (갈라짐, 긁힌 자국, 흠집, 오염 등)				
내부 부속품 상태 (헤드밴드, 웨빙, 내부 툴, 박음질, 버클 등)				
고정 장치 상태 (내부 클립, 버클, 헤드밴드 등)				
사이즈 조절 상태 (머리둘레 조절 및 턱끈 등)				
턱끈 클립 상태 (클립 상태에서 강제로 2~3회 당겨 풀리는지 검사)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 인증 확보 장비 여부 ※  마크확인				

- 보호장구(무릎/팔꿈치), 무전기, 기타용품(고글/장갑 등)



보호장구	무전기	고글
------	-----	----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보호 장구	무릎과 팔꿈치 적용 여부 확인				
	착용 장치(찍찍이, 웨빙 등) 상태 점검				
	용품의 일반(청결, 파손 등) 상태 점검				
	KC 또는 CE, 기타 그에 준하는 안전 인증 확보 장비 여부 ※  마크 등 확인				
무전기	무전기의 작동 상태(주파수, 파손 등) 점검				
	배터리 충전 상태 점검				
고글 /장갑	용품의 일반 상태(청결, 파손 등) 상태 점검				

• 활동장소 확인 체크리스트

주행로

구분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공동	주행코스에 장애요인(구덩이, 돌, 낭떠러지 등) 점검				
	계절별 이용 가능 여부 점검				
	외부의 차량과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개방된 장소일 경우 탑승자에게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여부 확인 ※ 개방된 주행로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필요함				
산악 지대	법적으로 주행이 가능한 공간인지 확인				
	산악지형의 특성(통신두절/탈출로 등)에 따른 비상시 대처방안을 강구하였는지 확인				
해안도로/ 백사장 등	해안지대 특성에 따른 안전 사항(물 때/ 파고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 점검				
일반도로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 확인				
	도로 횡단 시 적절한 교통통제 여부 확인				

- 휴식지

확인내용	적합	주의	부적합	해당없음
휴식지에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				
휴식지의 위생 상태 점검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유무 점검				

-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 교육 체크리스트
 - 지도자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활동 전·중 기상 상태 확인 및 활동장소 특징 교육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비상연락망 숙지
참여 청소년 건강 상태 파악
출발 전과 활동 중 상시 활동 장비 상태 확인
주행 중 이탈자가 없는지 인원체크 수시 확인
전체 대열의 선두와 후미에 지도자 반드시 배치

- 청소년 대상 확인내용

확인내용
사고 시 대처방안 및 비상 연락망 숙지
건강 상태 이상 시 반드시 지도자에게 알림
활동 장비 이상 상태 파악 방법 교육
전체 대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함

청소년활동 종합안전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VII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등 활동 시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의 안전관리

01.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지진 발생 시 조치 사항
02.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낙뢰 발생 시 조치 사항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등 활동 시 재난 및 비상상황에서의 안전관리

01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지진 발생 시 조치 사항

1) 지진 발생 시 일반적인 행동 요령

- 지진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 7-1 | 지진의 개념, 특징, 행동 요령

구분	내용
지진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내부 및 지각에서 축적된 에너지의 방출이 지진파의 형태로 지표면에 충격을 주어 지구면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지진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등을 포함하는 유라시아판의 동쪽 가장자리 내륙에 위치하고 있어 환태평양 지진대의 주변 나라보다 지진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 현대과학기술로는 예보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점검과 훈련이 상시적으로 요구되는 재난임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발생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동안 테이블 등으로 들어가 몸을 피하고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함 • 지진이 멈춘 후 여진에 대비하면서 부상자 구호, 건물 안전 진단, 피해상황 파악, 가스 및 전기 차단 등 추가 위험 방지조치를 실시함 • 무작정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거리로 나가야 할 경우 떨어진 전선이나 붕괴 위험이 우려되는 건물, 축대, 교량, 도로 등 지진에 따른 피해에 주의하여 이동함. • 대피 시 행동 요령

2) 활동 유형별 지진 발생 시 조치 사항

- 활동 유형별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표 7-2 】 지진 발생시 활동유형별 조치사항





구분	내용
하강레포츠 (집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강레포츠 활동장의 경우 대부분 야외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현 위치에서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대기 후 대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진 발생시 지도자는 큰 소리로 재난 상황을 알리고 머리를 보호하도록 지시한다. • 출발 데크의 지도자는 출발을 앞둔 체험자와 함께 안전모 착용 상태에서 출발장 바닥에 엎드려 대기하고, 1차 흔들림이 끝나면 재빨리 체험자와 동행하여 출발 대기장으로 이동한다. 안전모가 주변에 없는 경우 머리를 감싸고 이동한다. • 출발 대기장에 모여 있는 청소년들은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로(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머리를 감싸고) 현 위치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하고 흔들림이 완전히 멈춘 후 지정된 대피경로를 따라 청소년들을 인솔하여 대피한다. • 체험 중인 청소년이 있는 경우 착지 데크의 지도자는 체험자의 착지가 완료될 때까지 엎드려 대기한다. 청소년이 도착하면 카라비나를 재빨리 해체하여 와이어에서 분리한 후 바닥에 엎드렸다가 흔들림이 멈추면 함께 대기장으로 이동한다. • 착지 후 대기장에 모여 있는 청소년의 경우 출발 대기장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현 위치에서 머리를 감싸고 대기하고 흔들림이 완전히 멈춘 후 대피경로를 따라 대피한다.
클라이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이밍은 산악 지역에서 자연의 암벽, 빙벽을 오르는 야외 활동뿐 아니라 실내 인공암벽을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 • 실내 체험활동으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지도자는 재난상황을 큰 소리로 알리고 참가자들이 당황하여 무작정 뛰어나가지 않도록 안정시킨다. • 체험 대기 인력을 관리하는 지도자는 체험을 위해 대기 중인 청소년들과 체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방석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 활동장 벽면 유리가 많은 경우 유리 파편을 피할 수 있는 곳(건물 중앙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한다. • 클라이밍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는 체험 중인 청소년이 있는 경우 안전한 하강을 유도하고 빠르게 장비를 해체하여 피난을 돕는다. • 체험 중인 청소년의 피난 이후 지진 이후 건물이 뒤틀려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피 동선에 위치한 출입문을 사전 개방하고 대피경로를 확보해 둔다. • 야외에서 클라이밍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경우 인공시설물인 경우 현위치에서 대기, 자연시설물인 경우 낙석 등에 대비한 빠른 대피를 원칙으로 한다. • 인공시설물에서 활동하는 경우 체험 대기인력을 관리하는 지도자는 체험을 위해 대기 중인 청소년들과 체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방석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 자연시설물에서 활동하는 경우 체험 대기인력을 관리하는 지도자는 체험을 위해 대기 중인 청소년들과 체험을 마친 청소년들을 인솔하여 낙석 등 낙하물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이때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 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가방이나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며)에서 이동하도록 한다. • 클라이밍을 직접 지도하는 지도자는 체험 중인 청소년이 있는 경우 안전한 하강을 유도하고 빠르게 장비를 해체하고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산악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 1차 흔들림이 멈추면 낙석이나 산사태 또는 절개지 붕괴 등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해안지역에 있는 인공시설물에서 활동하는 경우 해일에 대비하여 내륙지로 대피한다.

02 하강레포츠, 클라이밍 활동 중 낙뢰 발생 시 조치 사항

1) 낙뢰 발생 시 일반적인 행동 요령

- 낙뢰의 개념 및 특징 그리고 낙뢰 발생 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 7-3 | 낙뢰의 개념, 특징, 행동 요령

구분	내용	
낙뢰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뇌 방전의 일종으로 뇌운 내의 전하가 지상(대지) 위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낙뢰'라고 하며, 뇌 방전 동안 발생하는 매우 밝은 불빛을 '번개'라고 함. ※뇌운: 전하가 분리되어 있는 '번개구름' 	
낙뢰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철인 7~8월로, 대기가 불안정하고 구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 일반적으로 낙뢰사고는 산악지역보다는 평지에서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 같은 장소에 2회씩 그리고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반복됨 • 산골짜기나 강줄기를 따라 이동하는 성질이 있음 	
행동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에서 낙뢰가 발생하면 산 정상부나 암벽 위에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저지대로 이동하고, 낙뢰가 떨어지기 쉬운 키 큰 나무 밑으로 대피하지 않음 • 이동 시 등산스틱, 골프채, 낚시대, 우산, 농기기 등 금속성 물건을 몸에서 떨어뜨린 후 몸을 낮추고, 건물, 계곡, 동굴 등으로 대피 • 전기 전도체가 되는 시설이나 물건에 접근을 피함 • 대피 시 행동요령 	
		
	<p>산 위 암벽이나 키 큰 나무 밑은 위험하므로 낮은 자세로 안전한 곳으로 빨리 대피함</p>	<p>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같이 긴 물건은 몸에서 멀리함</p>
		
<p>평지에서는 몸을 낮게 하고 물기가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p>	<p>골프 등 야외 활동 시 장비를 몸에서 떨어뜨리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p>	

2) 활동 유형별 낙뢰 발생 시 조치 사항

- 활동 유형별 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7-4 | 낙뢰 발생 시 활동 유형별 조치 사항

구분	내용
하강레포츠 (집라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강레포츠 활동장의 경우 대부분 야외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낙뢰 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에 활동 전 기상을 수시로 확인하고 인근 지역에 낙뢰가 발생할 경우 빨리 활동을 중지하고 실내로 이동한다. • 낙뢰 사고가 우려되어 활동을 중지하고 대피하는 경우 우선 하네스, 카라비나 등 장비를 모두 해체하도록 지시한다. • 출발 데크의 지도자는 출발을 앞둔 체험자의 장비 해체를 돕고 출발 대기자를 인솔하여 출발 대기장의 인원과 함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착지 데크의 지도자는 착지 후 대기장에 모인 청소년을 인솔하여 지정된 대피경로를 따라 실내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 이 때 체험 중인 청소년이 있는 경우 체험자의 착지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하고 청소년이 도착하면 카라비나를 재빨리 해체하여 와이어에서 분리한 후 대기장의 청소년과 합류하여 이동한다. • 이동 시 가능한 자세를 낮춰 이동하고 대피할 수 있는 실내 장소로 빠른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체험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하며 대피 시 다른 사람들과 5~10m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클라이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라이밍은 산악 지역에서 자연의 암벽 또는 빙벽을 다양한 등반기술을 활용하여 오르는 야외 활동뿐 아니라 인공암벽을 이용한 실내 체험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상황에 맞는 대처가 필요함 • 실내 체험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낙뢰 사고에 대한 위험이 높지 않고 비교적 안전하지만, 금속 재질로 활동장의 설비가 설치된 경우가 많아 낙뢰발생 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근 지역 낙뢰 발생 시 활동을 중지하고 대기한다. • 실내 대피 시 참여자들이 전기기구, 천정, 벽 등에서 1m 이상 떨어지도록 안내하고 지도자는 대피 장소 내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아 전기화재를 예방한다. 천등과 번개가 잦을 때에는 전기계량기의 전원을 아예 차단한다. • 실외 체험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우천시 원칙적으로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실내로 이동한다. •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구름이 몰려오거나 천둥소리가 들리는 경우에도 활동을 중지하고 실내로 대피한다.



참고문헌

1. 자료집

- 가사노가오루(2016). 재난에서 살아남기, 김계자·최종길·편용우 옮김. 서울:이상미디어.
- 김성기(2013). 똑똑한 등산. 서울:하서.
- 김신정(2001). 학령전기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아동간호학회지, 7(1), 118-140.
- 김영한, 최은실, 김윤정(2009). 아동청소년의 안전실태와 대응방안 연구-물리적 위해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14).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매뉴얼(SOP).
- 소방방재청(편)(2010). 위기탈출119. 서울:매일경제신문사.
- 여성가족부(2023).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4). 청소년수련활동 안전 종합매뉴얼.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청소년활동안전센터(2017). 청소년수련활동 종합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2021).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인증규정(2021. 7. 21. 개정).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매뉴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7).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매뉴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8). 청소년수련활동 종합매뉴얼 활동안전관리(생활권수련시설)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19).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안전고려활동 체크리스트.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청소년활동시설 활동안전분야 컨설팅 참고자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1). 청소년활동 종합 안전 매뉴얼 재난안전관리편.
- 한혜경(1997). 아동안전실태와 정책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 행정안전부(2021). 지진국민행동요령.

2. 관련 사이트

과천시 블로그. https://m.blog.naver.com/gccity_blog/222407578120. 2023. 11. 27.

국가법령정보센터(2021). <https://www.law.go.kr>.

파이낸셜 뉴스(2019). 경기도, 성남 음악연습실 화재 재발방지책 마련, 2019. 10. 28. <https://www.fnnews.com/news/201910281305554816>.

1. 수련시설의 안전기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7. 2.>

수련시설의 안전기준(제10조 제2항 관련)

1.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피가 편리한 숙소를 배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솔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부상자·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비상연락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안전사고·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후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5.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防壁)·울타리·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6. 자연체험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안전모·안전띠·구명대 등 필요한 개인보호장구를 갖추고, 이를 이용자에게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세부적인 점검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8.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시설의 이용방법, 유의사항, 비상시의 대피경로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1. 해당 시설이용 및 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용자(인솔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2. 태풍·홍수·해일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13. 해당 수련시설 안에 법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에서 정한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집회시설 및 숙박·집회시설과 이어진 건축물에는 샌드위치 판넬 등 연소 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2.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수련시설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청소년수련활동 운영

- 가. 청소년수련거리별로 추구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이 명시되어야 한다.
- 나. 청소년수련거리는 청소년지도사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다.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에 있어서는 청소년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참작하여야 하며, 청소년수련거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라. 수련시설은 법 제35조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생활지도

- 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3시 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청소년의 남녀혼숙을 금하여야 한다.
- 다.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음주·흡연행위를 금하여야 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하고, 음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음주자 등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 마. 집단급식소 등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의 배양을 위하여 자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바.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폭행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고 타인으로부터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가.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나. 숙박실별로 해당 숙박실의 숙박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 다. 시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라. 해당 수련시설의 시설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여서는 안 된다.
- 마. 수련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당한 경비 외의 부당한 수수료 또는 금품을 제공받거나 수련시설이용자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바. 해당 수련시설에 법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시설이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그 법령에서 정한 위생기준, 관리·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사단법인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유스호스텔의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종사자 교육

-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록의 유지관리 등

다음의 장부·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가. 일일 청소년수련활동실시 현황부
 - 나. 청소년수련활동참여자 명단(유스호스텔의 경우는 숙박실 이용자 명단을 포함한다)
 - 다. 청소년지도사 및 직원명부
 - 라. 시설물안전점검 기록대장
 - 마. 현금출납부 및 그 밖의 경리관계 장부·서류
 - 바. 등록관계 서류
 - 사.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기록대장
-

만든 사람들

연구·집필진

책임연구원 진은설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공동연구원 박정배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시설안전관리편] 시설분야 집필진

이정석 (국토안전관리원)

허윤택 (한국소방안전원)

김성현 (한국전기안전공사)

황규목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시필 (한국식품안전협회)

김재우 (승강기안전공단)

감수진

김호순 (前대원대학교)

공성철 (국토안전관리원)

한청배 (한국소방안전원)

하영호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배재영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정숙 (한국식품안전협회)

김성진 (㈜다오코리아)

최성조 (국민안전역량협회)

홍종덕 (소방청)

박혜선 (중앙응급처치교육원)

청소년활동 종합 안전 매뉴얼

활동안전관리편

인 쇄 : 2023년 12월

발 행 : 2023년 12월

발 행 인 : 손연기

발 행 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03752)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4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T e l : 02-330-2800

기획·편집 : 행복무지개마을(1644-5803)

